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2024. 9.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3) 통합투자세액공제

2024.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홍용기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

2024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심층평가 개요

-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세특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조기 극복, 그리고 경제 활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음
 - 동 제도는 9개의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임
 - 본고는 동 제도의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분야에 대해 일괄 평가를 수행함
 -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운용성과를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일몰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2년 기준 조세지출규모가 2조 1,997억원으로 의 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됨
 - (타당성) 제도 도입 및 운영의 당위성, 지원 대상 및 방식설정의 적절성, 기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원정책과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
 - (효과성) 기업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이용 및 기타 법인세 납세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2.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 (제도 특징)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하여 일원화하였으며, 대상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무형자산으로 확대함

<표 1>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주요 연혁

연도	내용
2020.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신설(아래 항목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1(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5(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6(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21. 12. 28.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일몰기한 설정(2024년)
2022. 12. 31.	○ 공제율 상향
2023. 04. 11.	○ 2023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여 공제율 상향
2024. 01. 03.	○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까지 1년 연장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공제율 및 대상시설 변화)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대상시설 및 감면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일반 투자보다 기본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투자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또한 2023년, 2024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여 추가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이 적용됨

<표 2>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①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기본공제율

기본공제율	2021년·2022년			2023년·2024년(예정)		
	일반	중견	중소	일반	중견	중소
기업규모						
일반적 자산	1%	3%	10%	3%	7%	12%
신성장 사업화시설	3%	5%	12%	6%	10%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	8%	16%	15%	15%	25%

②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초과 투자금액×추가공제율

추가공제율	2021년·2022년		2023년·2024년(예정)	
	일반적 자산·신성장 사업화시설	3%		1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4%		10%	

주: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은 ① R&D 설비(1·3·7) ② 생산성 향상 시설(1·5·10) ③ 안전 설비(1·5·10) ④ 에너지절약 시설(1·3·7) ⑤ 환경보전 시설(3·5·10) ⑥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3·5·10) ⑦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최대 3) ⑧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1·3·6) ⑨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5·7·10)

□ (제도 활용현황) 제도 도입 이후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꾸준히 감면규모가 늘어났으며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22년 기준으로 기업이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임

<표 3>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전망)	2024(전망)
소득세	217	491	810	1,036	1,914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46	54,919
계	6,226	13,460	21,997	20,782	56,832

주: 1. 조세지출의 연도별 실적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2. 2023~2024년 전망은 조세감면액에 경제지표 및 이전 연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금액임
 3. 2021 신고분부터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합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해외사례

□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사업용 유·무형자산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어 대상자산의 폭 및 공제율 측면에서 비교적 적극적 조세지원을 운영 중임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에 폭넓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고, 폭넓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가속상각 혹은 소득공제의 사례는 존재함
 - 중소기업 주요 업종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는 일본이 예외적 사례이나, 이 경우에도 대상 기업이 자본금 3억엔 이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협소함
- 최근 대부분의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투자에 한정하여 강한 혜택을 주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적격 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은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액의 현금환급(direct pay) 규정을 적용하는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함
 - 캐나다는 청정기술 및 전기에 대해 15~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대만 역시 미래 혁신 R&D 투자액의 최대 25%를 공제함

4. 타당성 평가

- (정부지원의 적정성)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개입의 적절성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음
- 또한 기업투자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로 인한 혁신의 공공재적 성격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결정되는 기업투자의 수준이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작을 수 있어,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은 타당함
 - 보다 직접적인 측면에서 기업투자의 활성화는 기업의 설비자산에 대한 취득·운용을 통해 생산·고용을 유발하고, 이는 세수의 증가와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정책수단의 적절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수단으로서 재정지원에 비해 조세지원이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수혜자의 특성, 보조대상 및 수준, 행정비용 및 부작용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조세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
- (제도설계의 적절성)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와 고용 증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기업투자 활성화의 지원은 전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목표로 평가할 수 있음
 -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을 대다수의 비교대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함
 - 제도의 적용대상을 일부 배제업종·지역·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으로 폭넓게 규정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제도의 대상자산을 일반자산 및 신성장 사업화·국가전략기술 사업화자산으로 구분해서 지원수준을 차등화한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공헌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운영의 적절성) 「조특법」상 제한 및 사후관리의 범위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방안은 조세지원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세법상 조세지원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타 제도와의 중복성)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의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은 확인할 수 없으며, 첨단기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들의 경우에도 매우 선별적인 분야에 대해 시행되어 과도한 중복지원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음
 - 조세지원 내에서는 「조특법」상 제한 및 사후관리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효과성 평가

가. 국세청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한 분석

- 효과성 평가를 위해 동 제도가 기업투자 증진과 기업경영성과 개선에 미친 영향을 국세청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2015~2022 신고연도에 해당하는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기타 납세 및 재무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한 총 9,030개 기업 전수(처치군)에 대한 미시자료와 데이터 기간 중 동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총 13,102개 기업(대조군)을 이용

- (기업투자 양적 증대효과) 기업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반응하여 관련 기업투자 활동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남
 - 통합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더 크게 증대시킨 산업에서 총자산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더 큰 값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자산의 분류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된 결과, 일반자산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반응하여 기업이 유의미하게 투자를 증진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미시자료를 활용해 간접적인 분석을 진행함
 -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행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본고에서 활용 가능한 미시납세자료상에 기업들이 해당 제도에 노출된 기간이 너무 짧아,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음

-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효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이 기업의 수익성에 약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대상자산분류에 따라 세부적 분석을 시행했을 때 이러한 경향이 강건하게 관측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자산분류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제도의 효과를 추정했을 때 총자산 대비 당기순손익으로 추정된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약한 긍정적 효과가 추정됨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했을 때에는 효과성에 대한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해석상의 유의사항) 본 절에서 활용한 국세청 미시자료와 주어진 미시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분석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의 도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미시자료는 제도의 도입 이후 2개 신고연도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에는 자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음
 - 또한 해당 2개 신고연도 기간 중 기업들은 기존의 특정시설 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새로 도입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군(群)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전면적 전환 이후에 대한 정보를 관측할 수 없었음
 - 미시자료에는 기업들이 동 제도의 자산분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현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차등적인 효과는 간접적인 방법론을 통해 추정하였음

나. 설문자료를 이용한 분석

- 국세청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조세특례의 실질적 효과와 그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 제도의 수혜대상 기업들에게 상세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 담당자 대면조사를 통해 총 268개 기업에 대해 조사를 수행함
-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결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성은 인정되나, 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와 지역제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의 우선순위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러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타를 제외한 투자 요인의 중요도 측면에서 조세지원은 7순위 수준이며, 대략 0.7%의 기업이 1순위로 중요하다고 선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관련된 여러 조세·재정정책 중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 강화를 가장 중요한 지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49.3%, 1순위)
- 이는 동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상황에서 투자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기존 대비 0.51~0.75배 수준의 투자)
-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들이 세액공제의 환급과 이월공제 혜택의 경제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지만, 환급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 시 효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제도와 환급 및 양도가 가능할 때 세액공제 혜택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느끼는 기업은 35.6% 수준으로 이는 현행 이월공제 기간 내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충분한 혜택을 수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적 차이에 대해 느끼는 수준도 0~5% 이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해당 제도 변화 시 투자를 증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과반수(87.2%)로 나타나 환급 및 양도 가능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파악됨
- 지역제한 완화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해당 변화가 투자 증대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고용영향평가

- 고용영향평가에서는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해 동 제도가 기업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함
 - 분석을 위해 국세청 제공 법인세 신고자료와 소득세 신고자료를 연결하여 이용
 - 자료의 분석 방식 및 표본은 앞선 효과성 분석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며, 기업의 고용 성장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음
-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신성장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 자산의 세부분류에 따라 자료를 분리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
 - 단, 동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발현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에 대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수행된 분석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7.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본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 본 특례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일몰연장을 제안함
 - 해외 주요국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특정 첨단기술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최근 도입하고 운영해오고 있어, 현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 수준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원 수준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됨
 - 단, 전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폭넓은 세액공제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수준은 그 대상 및 공제율에 있어 적극적인 편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서의 조세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타당성 분석 결과,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원대상 및 방식의 적정성도 대체로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시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 결과, 본 제도에 의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관측되었으며,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가 추정됨
 - 단,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음
 - 설문조사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도 본 제도가 기업의 투자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동 제도는 자산분류(일반자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공제종류(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따라 공제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서는 2023년 사업연도분부터 구분이 가능하여 자료가 누적된 후 효과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의 세분화된 분석은 직접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접자료를 통해서 수행하였으며, 본 제도의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성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자료가 보완된 후 효과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기술분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경우 제도의 세부 분류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점을 참조할 필요
 - 동 제도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종전과 비교하여 투자를 늘렸을 경우 추가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의 미시납세자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분리하여 이용내역을 수집하고 있지 않음
 - 추가공제의 제공이 기업에게 투자를 늘릴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통해 진행이 어려움
- 위와 같은 한계와 더불어, 현재 제도의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한 자료만이 이용 가능하였고, 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적용 후 지연기간을 가지고 나타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추가적인 구축 이후 제도의 효과를 재평가할 필요
- 본 연구는 미시자료와 설문조사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추정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약 2~3년의 한정적인 자료만을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음을 정책적 판단 시 감안할 필요
 - 투자결정 및 투자가 경영성파로 이어지는 경로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결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행태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제도 도입 이후 2년간의 투자분에 대해 기업들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군(群)과 동 제도 사이에서 선택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혼재되어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해외 경쟁국가들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수준과 유사하게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유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원의 축소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준비할 필요
- 동 제도의 정책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및 지나치게 비대화되지 않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현재의 높은 공제율을 고려할 때 특정 자산/기술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도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고기간과 제외방식을 미리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대상자산의 폭 및 공제율의 크기 면에서 강한 혜택을 제공하는 편임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액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할 필요
- 주요국 중 모든 사업용 유·무형자산에 준하는 대상자산에 대한 폭넓은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폭넓은 지원이 효율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

목 차

I. 서론	21
II.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5
1. 제도 개요	27
2. 제도 연혁 및 변천 과정	28
가. 통합투자세액공제	28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이전	30
3. 제도 내용 및 운영 현황 분석	36
가. 통합투자세액공제	36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44
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46
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48
마. 조세감면 현황	51
III. 해외 사례 분석	61
1. 미국	63
가. 개요	63
나. 조세지원제도	64
2. 일본	79
가. 개요	79
나. 조세지원제도	81
3. 영국	90
가. 개요	90
나. 조세지원제도	91
4. 캐나다	94
가. 개요	94

나. 조세지원제도	94
5. 대만	99
가. 개요	99
나. 조세지원제도	100
6. 중국	102
가. 개요	102
나. 조세지원제도	102
IV. 타당성 평가	117
1. 개요	119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120
가. 정부개입의 적절성	120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122
3.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124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124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126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129
라.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134
4. 소결	135
V. 효과성 평가	137
1. 미시납세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	139
가. 분석자료 및 이용현황	139
나. 기업투자에 대한 효과성 평가	152
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	162
라. 소결	164
2.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	166
가. 개요	166
나. 표본기업 일반 현황	171
다. 기업 투자 요인	173

라.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178
마. 제도의 통합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181
바. 제도 개선 방안	183
사. 소결	188
VI. 고용영향평가	191
1. 분석자료 및 현황	193
2. 고용영향평가 분석전략 및 결과	197
3. 설문조사를 활용한 고용영향평가	199
4. 소결	201
VII.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03
1. 종합평가	205
2. 정책제언	205
참고문헌	208

표 목 차

<표 II-1>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포함된 기존 조세지출 항목	27
<표 II-2>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연혁	29
<표 II-3>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및 자산 예시	37
<표 II-4>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38
<표 II-5>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공제율	39
<표 II-6>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변화	40
<표 II-7> 2023~2024년 한시적 세액공제율 변화(현행)	40
<표 II-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적용 배제	42
<표 II-9>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 연혁(2010년 이전)	44
<표 II-10> 연도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5
<표 II-11>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변화	47
<표 II-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48
<표 II-1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변화	49
<표 II-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공제율(현행)	50
<표 II-15>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규모	51
<표 II-16> 연도별-조세지출 항목별 감면 규모(2011~2024년)	52
<표 II-17> 세액공제별 공제 적용 기업의 수 및 수혜 금액 비중(2022 신고 연도) ...	54
<표 II-18> 세액공제별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 현황(2022 신고 연도)	55
<표 II-19> 지역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현황	57
<표 II-20> 수입금액 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현황	58
<표 II-21> 업종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현황	59
<표 III-1>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주요 내용	64
<표 III-2> 신재생에너지 관련 PTC 및 ITC	67
<표 III-3> 직접 지급이 가능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현황	69
<표 III-4>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	72

<표 III-5> IRA 예산 추산(2022~2031년간 비용 및 절감액)	75
<표 III-6> IRA 주요 내용 요약	76
<표 III-7> 일본의 설비투자 관련 법인세액 조세지출 현황	80
<표 III-8> 일본의 주요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내용 요약	81
<표 III-9>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 적용 가능 요건	83
<표 III-10>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 적용자산별 내용	83
<표 III-11> 중소기업 기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84
<표 III-12>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공제액	88
<표 III-13> 지원 대상 설비	89
<표 III-14> 영국의 자본공제제도	91
<표 III-15> 영국의 법인세율(현행)	92
<표 III-16> 연간투자공제의 공제 한도 추이	93
<표 III-17> 청정수소생산을 위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구조	96
<표 III-18> 대만 산업혁신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00
<표 III-19> 반도체 생산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내용	108
<표 III-20> 국가별 주요 투자 관련 지원제도 비교	109
<표 III-21> 국가별 현금지급 관련 주요 내용 비교	115
<표 IV-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기준	122
<표 IV-2>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금액	127
<표 IV-3>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128
<표 IV-4> 환급가능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IRC)	133
<표 IV-5> 클린수소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134
<표 V-1>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연도별 관측치	142
<표 V-2> 동 제도 사용기업의 업종별 분포	143
<표 V-3> 동 제도 미사용기업의 업종별 분포	143
<표 V-4> 동 제도 사용기업 및 미사용기업의 지역별 분포	144
<표 V-5> 연도별 수입금액 기초통계	145
<표 V-6> 연도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기초통계	146

<표 V-7> 연도별 과세표준 기초통계	147
<표 V-8> 연도별 산출세액 기초통계	148
<표 V-9> 연도별 총자산 기초통계	149
<표 V-10> 연도별 총자본 기초통계	150
<표 V-11> 연도별 업력 기초통계	151
<표 V-12>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액 기초통계	152
<표 V-13>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사용률 상위 산업	154
<표 V-14>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효과(2015~2022년)	156
<표 V-15>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효과(2015~2022년) ..	159
<표 V-16>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효과(2015~2022년)	161
<표 V-1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 효과(2015~2022년)	162
<표 V-18>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 효과(2015~2022년) ..	163
<표 V-19>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 효과(2015~2022년)	164
<표 V-20> 설문조사 대상	169
<표 V-21> 설문 질문의 구성 예시	170
<표 V-22> 기업 유형	172
<표 V-23> 기업투자 결정요인(1순위)	175
<표 V-24> 기업투자 결정요인(1~5순위)	176
<표 V-25>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	179
<표 V-26> 2022~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별 투자금액 변화배수	180
<표 V-2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시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의 감소 여부	182
<표 V-28>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시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의 감소 비율	182
<표 V-29> 현행제도(이월공제)가 세액공제의 일시적 지급(환급)보다 얼마나 더 작은지에 대한 인식	183
<표 V-30> 통합투자세액공제액 환급·양도가 시행될 경우 인식	184
<표 V-31> 수도권 지역요건 완화 필요성 인식	185
<표 V-32>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금액 증가 여부	186
<표 V-33>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 수준	187

<표 VI-1> 연도별 기업 고용인원 기초통계	194
<표 VI-2> 연도별 기업 고용인원 기초통계(중소기업)	195
<표 VI-3> 연도별 기업 고용인원 기초통계(일반기업)	196
<표 VI-4>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영향(2015~2022년)	197
<표 VI-5>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영향(2015~2022년)	198
<표 VI-6>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영향(2015~2022년)	199
<표 VI-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절세액을 이용한 추가적 고용지출 여부	200
<표 VI-8>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절세액의 추가적 고용지출 비율	200

그림 목 차

[그림 IV-1]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기업투자 수준	122
[그림 V-1] 투자시기 결정요인	177
[그림 V-2] 투자위치 결정요인	178
[그림 V-3] 2023년 공제율 상향이 2024년에도 유지될 경우의 사업용 유형자산별 투자금액 변동	181

I. 서론



I. 서론

- 본 연구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함
 - 본 조세특례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기업투자의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조기 극복, 그리고 경제 활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음
 - 동 제도는 9개의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신설된 조세특례임
 - 본고는 동 제도의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일반자산 분야에 대해 일괄 평가를 수행함
 - 신성장 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각 분야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지원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운용성과를 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일몰연장 필요성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2년 기준 조세지출규모가 2조 1,997억원으로 의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됨
 - (타당성) 제도 도입 및 운영의 당위성, 지원 대상 및 방식설정의 적절성, 기타 기업의 투자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원정책과의 유사·중복성을 중심으로 제도의 타당성을 분석
 - (효과성) 기업들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이용 및 기타 법인세 납세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미시자료에 기반하여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도 개요 및 현황)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 및 동 제도로 통합전환된 기존 제도

들의 개요, 변천 및 현황을 파악함

- (해외 사례) 제Ⅲ장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투자세액공제 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현황을 소개하고 동 제도에 갖는 시사점을 논함
- (타당성 분석) 제Ⅳ장에서는 동 제도 관련 정부지원의 적정성, 지원방법의 적정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함
- (효과성 분석) 제Ⅴ장에서는 동 제도의 정책목표 달성도를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와 상용 기업재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
- (제도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제언) 제Ⅵ장에서는 선행된 분석에 기초하여 동 제도에 대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제도 운용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

Ⅱ.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II.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 심층평가 대상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함
- 2021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분부터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단순화함
 - 조세지출 항목을 통합하여 시설투자 간 중복지원 배제 조항에 적용되지 않도록 설계됨
 - 통합 이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25조·제25조의4·제25조의5·제25조의7이 중복지원 배제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으로 인해 하나만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제도 통합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됨
- 공제 대상도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기업 친화적으로 변경함
 -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도 업종 특성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공제를 허용해 줌
- 다음의 <표 II-1>에 나열된 기존의 조세지출 항목을 통합함

<표 II -1>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포함된 기존 조세지출 항목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①1(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①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①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①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①5(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①6(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 제도 연혁 및 변천 과정

가. 통합투자세액공제

- 2020년 12월 29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으로 통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신설함
 -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
 - 세제 지원 대상 자산을 열거된 특정시설 중심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확대함
 - 단, 토지 및 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 제외
 - 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의 경우 일반 투자보다 기본공제율을 더 높게 적용하도록 개정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021년 12월 28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함

- 2022년 12월 31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에서 6%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함

- 2023년 4월 1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2023년 투자분에 한해 공제율을 상향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함

- 국가전략기술 범위의 경우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을 추가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기존 일반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일반기업 15%,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 조정함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투자한 금액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모든 기업 규모와 기술 범주에 대한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기존에 적용한 투자 시설별 3% 또는 4%에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로 상향함
- 2024년 1월 3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통해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까지 1년 연장함

<표 II -2>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 연혁

연도	내용
2020. 1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신설(아래 항목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특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1(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5(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①6(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수혜내용: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투자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 (모든 기업 3%) - 추가공제액 한도: 기본공제액의 200%
2021. 12.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공제율 적용 - 일몰기한 설정(2024년) - 기본공제율: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그 밖의 경우 6% - 추가공제율: 4%

<표 II -2>의 계속

연도	내용
2022.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상향(일반 투자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중견기업 3% → (개정) 중견기업 5% ○ 공제율 상향(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중견기업 5% → (개정) 중견기업 6% ○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기업 6% → (개정) 대기업 8%
2023.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에 한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여 공제율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투자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 대기업 6% - 추가공제율 10% ○ 공제율 상향(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중견기업: (기존) 8% → (개정) 15% - 중소기업: (기존) 16% → (개정) 25%
2024.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통해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까지 1년 연장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이전

1)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¹⁾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990년에 도입함

- 정책대상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정책 대상의 경우 2015년부터 신규 상장 중소기업과 신규 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함
 -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증권시장에 최초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 4년간 해당 투자 금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함
-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²⁾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

1) 이상엽 외(2018)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2)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3조①에 열거된 자산을 의미하며 이 중 유희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함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대상으로 함

-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³⁾
 - 2015년 이전에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3%의 공제율을 적용, 2015년부터 중소 및 중견기업, 신규 상장을 구분하여 공제함
 - 2019년부터 위기 지역을 추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및 규제자유특구도 추가하여 공제율을 적용함
 - 중견기업은 성장관리권역⁴⁾ 또는 자연보전권역⁵⁾ 내에 투자하는 경우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 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한 경우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공제율을 적용함
 - 2015년에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 금액에 대한 4%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투자하는 경우⁶⁾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공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3% 공제함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⁷⁾⁸⁾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1975년에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대상 자산은 연구 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직업훈련용 시설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을 받는 자산을 대상으로 함

3)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4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

6)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

7) 김빛마로 외(2018)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함

8) 2018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9, 2020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특정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2020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통합투자세액 공제체도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이후 당해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 당해 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제한 금액에 적용하는 추가 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 적용

3)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에너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1978년 도입한 제도임
 - 대상 자산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공제율은 2020년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
 - 중소기업: 2017~2018년 6% → 2019~2020년 7%
 - 중견기업: 2017~2018년 3% → 2019~2020년 3%
 - 대기업: 2017~2018년 1% → 2019~2020년 1%

4) 환경 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⁹⁾

- 환경 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경 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을 감축 하여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투자 유도를 목적으로 1975년 도입한 제도임
 - 2007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으로 이관되어 신설됨

9) 김빛마로 외(2018), pp. 32~34.

- 대상 자산으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 방지 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등 총 13가지 부분으로 구분됨
- 공제율은 2013년까지는 3~10%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공제를 적용함
 - 2013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함
 - 2014년부터 기존에 공통으로 적용해 왔던 공제율을 일반기업 3%, 중견기업 5%로 인하함
 -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일반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하함

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¹⁰⁾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생산적 복지 실현 및 근로자 복지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한 제도임
- 대상 자산은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총 6가지로 구분됨
 - 2010년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2014년 사내 부속 의료기관 등이 적용 대상에 추가됨
- 공제율은 최초 도입 시 10%였으나, 이후 3%에서 10% 범위 내에서 변동함
 - 공제율 10% 적용
 - ① 취득 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 ②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 중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
 -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 적용

10) 김빛마로 외(2018), pp. 41~43.

- 그 외의 해당 시설에는 공제율 7% 적용

6)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¹¹⁾

-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산업 전반에 공통적 영향을 미치는 안전 설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1982년 세액공제 또는 가속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 1997년 이후부터 가속감가상각방법을 배제하였고, 2003년 기존 특정설비 투자 세액공제를 환경 및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 2007년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함
- 적용 대상 자산은 도입 초기 4가지로 분류하였으나,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소방시설,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위탁 기업체가 수탁 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등 크게 10가지 기능 분야로 구분함
- 세액공제율의 경우 2015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차등하여 적용함
 - 2001년부터 기존 5% 세율을 3%로 인하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산업 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기술 유출 방지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7%로 인상함
 - 2015년부터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기술 유출 방지시설 10%)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기술 유출 방지시설의 경우는 1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7)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¹²⁾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제도임
 - 2014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공제율을 3%에서 5%로 인상하였

11) 김빛마로 외(2018), pp. 25~28.

12) 김빛마로 외(2019) 및 각 연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성함

으며, 2017년 12월 19일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로 공제율을 개정함

○ 2020년에는 투자 유인 증대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함

- 일반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

□ 공제 대상 자산은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2014년 개정에서는 공정 및 자동화 시설 중 무제한 인터넷 주소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를 추가함

○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고객관리 시스템 설비, 물류 관리정보 시스템 설비, 지식관리시스템 설비가 삭제되고 신성장 산업 설비가 추가됨

8)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¹³⁾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품질 확보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2007년 말 도입한 제도임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¹⁴⁾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품질이 우수한 의 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¹⁵⁾에 대해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7% 공제율을 적용, 2014년부터 기업 규모 별로 차등화하기 시작함

○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정책 대상 구분 없이 7%로 동일

○ 2014년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일반기업 3%, 중견 기업 5%, 중소기업 7% 공제율 적용

○ 2016년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13) 김우현·윤성주·홍우형(2019), 『2019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9.

14)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을 의미

9)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¹⁶⁾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사업화,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G망 구축 등을 위해 2018년 도입한 제도임
-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망 구축의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외 투자로 한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
 - 공제율은 기본 공제 2%에 추가 공제 1%(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1/5)를 적용
- 2018년 12월 제도 신설 이후 2019년 말에는 공제 범위를 기존 기지국 장비 매입가액에서 공사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확대함

3. 제도 내용 및 운영 현황 분석

- 2020년 12월 29일,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함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

가. 통합투자세액공제

1) 적용 대상

-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16) 김동준·김동영·홍인기·임상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KDI, 2020. 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¹⁷⁾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2) 공제 대상 자산(「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분류하면 다음의 <표 II-3>과 같으며, 유형자산 이외에 무형자산도 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됨

<표 II -3>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및 자산 예시

구 분	구조 또는 자산 예시
연구·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시험용 시계·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에너지절약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시설 ○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 중수도 관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직업훈련시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시설(지정직업훈련시설)
환경 보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득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17) 소비성 서비스업 세부 범위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4를 신설하여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구체화함

<표 II -3>의 계속

구분		구조 또는 자산 예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 종업원용 기숙사·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 ○ 부속 의료기관 ○ 직장어린이집
안전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예방·소방시설
공제대상 제외 자산의 예외 적용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도소매 및 물류업	○ 창고 등 물류시설
	관광숙박업	○ 건축물 및 부속 시설물 등
	건설업	○ 굴착기, 지게차 등 기계 장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2023. 4.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공제 대상 제외 자산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중 다음의 <표 II-4>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건물,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이 있음

<표 II -4>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건축물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4) 공제율

- 공제 혜택은 당해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적용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

<표 II -5>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전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7%	3%	1%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0%	5%	1%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3%	1%
환경 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	5%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3%	1%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	7%	5%
연구 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7%	3%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¹⁾	3%	수도권 1% 비수도권 2%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10%	5%	3%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최대 3% (2% + 추가공제 1%) 추가공제: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 × 1/5		

주: 1) 중소기업의 경우 위기지역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10%, 규제자유특구는 5%, 신규 상장 4%를 적용, 중견기업의 경우 위기지역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5%, 규제자유특구는 3%, 신규 상장 4%를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표 II -6>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변화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2024
일반	중소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0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2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중견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3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7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일반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3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신성장 · 원천 기술	중소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2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8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중견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5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0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일반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3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6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국가 전략 기술	중소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6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4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25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중견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8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4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5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일반기업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6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4		

주: 1. 연도는 투자 연도를 기준으로 함

2.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

3. 2023~2024년은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 세액공제율임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 김빛마로 외(2023), p. 59.

<표 II -7> 2023~2024년 한시적 세액공제율 변화(현행)

(단위: %)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8 → 15	8 → 15	16 → 25	4 → 10

주: 1. 연도는 투자 연도를 기준으로 함

2.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은 2024년 투자분까지 적용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¹⁸⁾ 내 투자는 제외하지만 중소기업의 대체투자, 산업단지 내 증설 투자 등은 공제를 허용함

-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¹⁹⁾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 설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²⁰⁾에 규정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증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함
 - 동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증설 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사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동법 시행령 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²¹⁾이 증가되는 투자
 - 단,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규칙 제53조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전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함

1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함

19)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0-1에서 규정하고 있음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 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을 말함

21) 공장 부지 면적 또는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말함. 단,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이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 면적은 제외(중소벤처기업부·한국세무사회,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p. 264.)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 (조세 감면 적용 자산) 디지털 방송 장비,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 장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 연구·시험용 및 직업훈련용 시설,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근로자 복지증진, 안전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등의 경우에는 공제 가능

〈표 II -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적용 배제

구분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1989년 12월 31일 이전	1990년 1월 1일 이후	
대체투자	공제 가능	공제 불가	공제 가능
증설투자	공제 불가	공제 불가	공제 불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공제 가능	공제 불가	공제 가능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 투자	공제 가능	공제 가능	공제 가능

자료: 저자 작성

6) 투자 금액 산출 방법 및 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당기분 기본공제와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함
- 세액공제액은 아래의 산식과 공제율에 의해 산출됨²²⁾
 - 당기분 기본공제(Ⓐ)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일반 투자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1%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6%, 대기업 3%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15%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추가공제율(모든 기업 3%, 국가전략기술 4%), 추가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배로 함

22) 2023~2024년 한시적 공제율이 아닌 2022년 12월 말 개정된 세율임

직전3년 평균 투자액 =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3} \times \frac{\text{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12}$$

- 2023~2024년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당기분 기본공제율은 동일하며, 그 외 시설투자는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함
 - 일반 투자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7%, 대기업 3%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기업 18%, 중견기업 10%, 대기업 6%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대기업 15%

- 사후관리기간은 최대 5년이며, 공제 대상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 및 종합유원시설업 시설: 5년
 -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3~4년(투자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 이후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그 외 사업용자산: 2년

7) 이월 공제 및 중복 적용 배제 등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이월 공제가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복 적용을 배제함
 - 즉, 동일 투자 자산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
 - 동 제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및 농특세 과세 대상에 해당

- 또한,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불가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R&D 세액공제

나. 임시투자세액공제²³⁾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68년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됨
 - 제조업, 광업, 수산업, 건설업 등 일부 산업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적용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대됨
 - 공제율의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되기 전까지 6~10% 범위 내에서 확대 또는 축소를 반복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제2차 석유파동 당시 기업 투자 제고를 목적으로 최초 시행되었으며, 외환위기·닷컴버블·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투자를 지원한 바 있음

<표 II -9>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 연혁(2010년 이전)

구분	1982년	1997~2000년	2001~2004년	2009년
도입 시기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닷컴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공제율	6%, 10%(국산)	7~10%	10~15%	3%, 10%(비수도권) * 투자증가분 10%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4. 11.), p. 7.

- 2011년에는 지역별·기업 규모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등 적용하기 시작함
 -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투자하는 경우 5%의 공제율 적용
 - 대기업의 수도권 밖의 투자에 대해서는 5%, 수도권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는 4%의 공제율 적용
 - 대기업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2011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23) 김우철 외(2008) 및 김빛마로 외(2023), pp. 69~71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세액공제 간 중복 적용을 허용

- 두 제도의 대상 자산은 동일하며 1%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1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종료됨

<표 II -10> 연도별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단위: %)

연도	공제율
2000년	7
2001년	10
2002년	10
2003년	상반기: 10, 하반기: 15
2004년	15
2005년	10
2006년	7
2007년	7
2008년	7
2009년	당기분: 과밀억제권역 3, 과밀억제권역 밖 10 증가분: (당해연도 투자금액-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10
2010년	과밀억제권역 밖 7
2011년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밖 5 대기업: 수도권 밖 5, 수도권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 4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김빛마로 외(2023), pp. 71~72.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 촉진 목적으로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였으며, 최근 2024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당기분 기본 공제율은 동일하며 그 외 시설투자는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함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까지 1년 연장할 경우 내년에 세수가 추가로 약 1조 4,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²⁴⁾

○ 동 수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감면액의 20%)를 고려한 값임

24) <http://www.kd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04>

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²⁵⁾

1) 개요

- 2016년 말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하고 시설투자비 세액공제를 신설함
- (정책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 14개 분야의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 거주자 및 내국 법인이 해당함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대상 기술별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사업화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적용함

2) 대상 자산 범위

-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²⁶⁾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구체적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시설을 말함
- 2021년 이후 과세연도부터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반도체 및 탄소저감, 신재생 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155개로 확대함
- 2022년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기존 155개 시설에서 탄소중립기술 등 신규 시설이 포함되어 181개 시설로 확대됨(<표 II-11> 참조)
 - 2024년 이후 14개 분야 181개에서 방위산업을 신설하여 185개 시설로 개정함

25) 김빛마로 외(2018) 내용을 참조함

26)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에 따르면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 및 인정신청서 접수 및 검토 업무,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인정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인정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II -11>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변화

구분	2021년 3월 16일	2022년 3월 18일	2023년 6월 7일		2023년 8월 29일	2024년 3월 22일 개정	
시설 수	155개	181개	185개		181개	185개	
주요 변경 내용	반도체 및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관련 시설을 추가	탄소중립기술 41개 시설 통합 및 신설	지능정보 (1개)	지능형 콜드체인 모 니터링 기술	바이오 및 화합물의약품 관련 4개 시설 삭제	에너지 및 환경(신규 3개, 확대 1개)	(신규)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관련 시설, 대형원전 제 조기술 관련 시설, 혁신 제조 공법 기술 관련 시설 (확대)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시설 →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등 추가
			에너지 및 환경(2개)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 및 검증, 제조기술		방위산업 (신규 3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 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융복합소재(1개)	극세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바이오헬스 (확대 2개)	혁신형 신약 / 개량신약 제조 시설 → 원료 개발·제조시설 추가
			탄소중립(8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 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신규 1개, 확대 1개)	(신규) 암모니아 발전시설 (확대)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시설 → 항공유 생산시설 추가

주: 1. 시설 수는 각 개정 시기별 대상 기술 수를 말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을 토대로 저자 작성

3) 공제율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5% 공제율을 적용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되었으며 통합 이후 당해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대기업 3%
 - 당해 연도 투자액에서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제한 금액에 적용하는 추가공제율은 모든 기업에 3% 적용

<표 II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단위: %)

구분	2017~2018년	2019~2020년	2021~2022년	2023~2024년(한시적)
중소기업	10	10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2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8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중견기업	7	7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5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10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일반기업	5	5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3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3	① 기본공제: 당해연도 지출액×6 ② 추가공제: 투자 증가분×10

주: 1. 2021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

2. 투자 증가분은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의미하며 추가공제액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00%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 사업화시설 인정을 신청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1) 개요

-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해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시설을 병행하여 생산할 경우 사후관리 특례를 적용함

2) 대상 시설 범위

□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도 포함²⁷⁾

□ 2023년 8월 29일, 반도체 20개, 이차전지 9개, 백신 3개, 디스플레이 5개, 수소 6개, 미래형 이동 수단 3개, 바이오의약품 4개 총 50개로 시설을 확대함

○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규정하고 있음

□ 2024년 3월 22일부터는 첨단 전략산업 설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7개 분야 총 54개 시설로 신설 또는 확대함

<표 II -1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변화

(단위: 개)

시설 구분	2022년 3월 18일(신설)	2023년 3월 20일	2023년 6월 9일	2023년 8월 29일	2024년 3월 22일
반도체	19	20	20	20	20
이차전지	9	9	9	9	9
백신	3	3	3	3	3
디스플레이	-	5	5	5	6
수소	-	-	6	6	9
미래형 이동수단	-	-	3	3	3
바이오의약품	-	-	-	4	4
합계	31	37	46	50	54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토대로 저자 작성

27) 2022년 3월 18일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별표 6의2)

3) 공제율 및 이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함
 - (기본공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5%(중소기업 25%)에 상당하는 금액
 - (추가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4%를 추가공제함
 -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추가공제함
 - 단,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

〈표 II -14〉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공제율(현행)

(단위: %)

기업 구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중소기업	25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4% (임시투자세액공제: 10%)
중견기업	15	
대기업	15	

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 추가공제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10%를 한시적으로 적용함

자료: 저자 작성

-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함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인정을 신청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마. 조세감면 현황

- 평가 대상 조세특례 제도의 연도별 조세지출액(합산)은 2022년 실적 기준 2조 1,997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8,537억원(63.4%) 증가한 수치임
- 2023년 전망치는 소득세 1,036억원, 법인세 1조 9,746억원, 총 2조 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5억원(△5.5%)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II -15〉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소득세	217	491	810	1,036	1,914
법인세	6,009	12,969	21,187	19,746	54,919
계	6,226	13,460	21,997	20,782	56,832

- 주: 1. 조세지출의 연도별 실적은 국세청에서 제출한 조세감면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2. 2023년 전망 규모는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에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
 3. 2024년 전망 규모는 조세감면 실적에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등 경제지표 및 세목별 탄성치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4. 2021 신고분부터 기존 투자세액공제제도가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었으며, 2020년의 통합 투자세액공제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합한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II -16> 연도별-조세지출 항목별 감면 규모(2011~2024년)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통합투자세액공제	소득세	-	-	-	-	-	-	-	-	-	217	491	810	1,036	1,914
	법인세	-	-	-	-	-	-	-	-	-	6,009	12,969	21,187	19,746	54,919
	소계	-	-	-	-	-	-	-	-	-	6,226	13,459	21,997	20,782	56,832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특법§5)	소득세	6	7	30	40	51	72	87	117	136	-	-	-	-	-
	법인세	109	126	202	276	332	411	496	530	790	-	-	-	-	-
	소계	115	133	232	316	383	483	583	647	926	-	-	-	-	-
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구. 조특법§25①1)	소득세	2	4	7	7	6	8	5	17	9	-	-	-	-	-
	법인세	1,063	1,548	1,593	2,005	1,503	1,453	1,525	1,254	317	-	-	-	-	-
	소계	1,065	1,552	1,600	2,012	1,509	1,461	1,530	1,271	326	-	-	-	-	-
에너지절약시설 (구. 조특법§25①2)	소득세	2	1	3	5	7	8	7	9	15	-	-	-	-	-
	법인세	3,825	2,813	2,261	2,099	1,186	2,191	2,223	1,029	987	-	-	-	-	-
	소계	3,827	2814	2,264	2,104	1,193	2,199	2,230	1,038	1,002	-	-	-	-	-
환경보전시설 (구. 조특법§25①3)	소득세	0	1	1	1	1	1	3	1	1	-	-	-	-	-
	법인세	671	369	733	606	679	443	483	755	655	-	-	-	-	-
	소계	671	370	734	607	680	444	486	756	656	-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구. 조특법§25①4)	소득세	0	0.39	1	1	0.81	0.17	1	0.4	0.2	-	-	-	-	-
	법인세	135	152	182	196	246	339	174	251	196	-	-	-	-	-
	소계	135	152.39	183	197	246.81	339.17	175	251.4	196.2	-	-	-	-	-

<표 II -16>의 계속

(단위: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망)	2024 (전망)
안전시설 (구. 조특법§25①5)	소득세	0	0.02	0.17	0.03	0.1	0.27	0.05	2	0.4	-	-	-	-	-
	법인세	47	46	149	104	115	174	139	279	215	-	-	-	-	-
	소계	47	46.02	149.17	104.03	115.1	174.27	139.05	281	215.4	-	-	-	-	-
생산성향상시설 (구. 조특법§25①6)	소득세	1	3	3	6	8	12	14	16	24	-	-	-	-	-
	법인세	600	616	871	777	1,779	4,861	3,782	11,398	5,596	-	-	-	-	-
	소계	601	619	874	783	1,787	4,873	3,796	11,414	5,620	-	-	-	-	-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구. 조특법§25의4)	소득세	0	-	0.01	0.01	-	-	0	0.01	-	-	-	-	-	-
	법인세	96	62	136	184	136	160	219	173	256	-	-	-	-	-
	소계	96	62	136.01	184.01	136	160	219	173.01	256	-	-	-	-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구. 조특법§25의5)	소득세	-	-	-	-	-	-	0	0.1	-	-	-	-	-	-
	법인세	-	-	-	-	-	-	0	0	-	-	-	-	-	-
	소계	-	-	-	-	-	-	0	0.1	-	-	-	-	-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구. 조특법§25의7)	소득세	-	-	-	-	-	-	-	-	-	-	-	-	-	-
	법인세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총 계	소득세	11	16.41	45.18	60.04	73.91	101.44	117.05	162.51	185.6	217	491	810	1,036	1,914
	법인세	6,546	5,732	6,127	6,247	5,976	10,032	9,041	15,669	9,012	6,009	12,969	21,187	19,746	54,919
	합계	6,557	5,748.41	6,172.18	6,307	6,049.91	10,133.44	9,158.05	15,831.51	9,197.6	6,226	13,459	21,997	20,782	56,832

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 신고연도부터 적용되었는데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존 특정목적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2022년 신고연도 활용기업 수 및 수혜금액 비중) 국세통계연보상 2022년 신고연도의 기업에 대한 모든 세액공제제도 활용기업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II-17>과 같음

-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도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로 나타남
 - 통합투자세액공제 활용기업 수 비중은 4.14%, 수혜 금액 비중은 9.17%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활용기업 수 비중은 1.24%, 수혜 금액 비중은 0.79%
- 일반기업의 경우 활용도 비중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환경 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순으로 나타남
 - 통합투자세액공제 활용기업 수 비중은 8.93%, 수혜 금액 비중은 12.38%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활용기업 수 비중은 2.56%, 수혜 금액 비중은 3.41%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활용기업 수 비중은 1.13%, 수혜 금액 비중은 0.60%

<표 II -17> 세액공제별 공제 적용 기업의 수 및 수혜 금액 비중(2022 신고 연도)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활용도(기업 수 비중)			활용도(수혜 금액 비중)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2022년 기준 세액공제 활용기업	159,256	14,138	173,394	3,600,043	9,966,210	13,566,253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1,975 (1.24)	83 (0.59)	2,058 (1.19)	28,458 (0.79)	8,421 (0.08)	36,879 (0.27)
통합투자세액공제	6,590 (4.14)	1,263 (8.93)	7,853 (4.53)	330,242 (9.17)	1,233,843 (12.38)	1,564,085 (11.53)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44 (0.03)	124 (0.88)	168 (0.10)	509 (0.01)	2,699 (0.03)	3,208 (0.02)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705 (0.44)	130 (0.92)	835 (0.48)	6,289 (0.17)	23,417 (0.23)	29,706 (0.22)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164 (0.10)	160 (1.13)	324 (0.19)	10,064 (0.28)	59,666 (0.60)	69,730 (0.51)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32 (0.02)	55 (0.39)	87 (0.05)	868 (0.02)	5,511 (0.06)	6,379 (0.0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40 (0.03)	113 (0.80)	153 (0.09)	2,857 (0.08)	10,915 (0.11)	13,772 (0.10)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463 (0.29)	362 (2.56)	825 (0.48)	21,172 (0.59)	340,268 (3.41)	361,440 (2.66)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7 (0.00)	23 (0.16)	30 (0.02)	2,445 (0.07)	11,169 (0.11)	13,614 (0.10)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2 (0.00)	-	2 (0.00)	11 (0.00)	-	11 (0.00)

주: () 안은 2022년 기준 세액공제 활용기업 대비 비중을 말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8-3-2 세액공제 신고 현황

□ (기업 규모별 제도 활용 현황) 세액공제별로 기업 규모에 따른 제도 활용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II-18>과 같음

- 수혜 금액 기준으로 일반법인 비중이 가장 높은 제도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94%),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세액공제(88%),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86%) 순으로 나타남

<표 II -18> 세액공제별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 현황(2022 신고 연도)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일반기업 비중	
	기업수 (A)	금액 (B)	기업수 (C)	금액 (D)	기업수 (C/(A+C))	금액 (D/(B+D))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1,975	28,458	83	8,421	0.04	0.23
통합투자세액공제	6,590	330,242	1,263	1,233,843	0.16	0.79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44	509	124	2,699	0.74	0.88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705	6,289	130	23,417	0.16	0.79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164	10,064	160	59,666	0.49	0.86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32	868	55	5,511	0.63	0.86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40	2,857	113	10,915	0.74	0.79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463	21,172	362	340,268	0.44	0.9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7	2,445	23	11,169	0.77	0.82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2	11	-	-	0.0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2, 8-3-2 세액공제 신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지역별 감면 규모) 2021년부터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의 약 80%가 수도권 기업(서울, 인천,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표 II-19> 참조)

- 2021~2022년 2개년간 감면액은 총 1조 9,337억원으로 이 중 약 80%인 1조 5,480억원이 수도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감
-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1조 1,615억원)가 60.1%로 가장 많이 받음
 - 그 뒤로 서울(17.3%), 충남(3.8%), 경남(2.6%) 순임

- 반면 강원, 대전, 세종, 광주, 전남, 제주의 경우 혜택 비중이 전체 중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수입금액 규모별) 2021년부터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을 수입금액 규모별로 보면 다음의 <표 II-20>과 같음

- 중소기업의 경우 1,000억원 이하가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그 뒤로 500억원 이하(18.7%), 200억원 이하(14.8%) 순임
- 일반기업의 경우 5,000억원 초과가 전체 중 88.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21년부터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을 업종별로 보면 다음의 <표 II-21>과 같음

- 중소기업의 경우 제조업이 7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운수·창고·통신업이 4.6% 수준으로 나타남
- 일반기업의 경우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순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비중이 93.0%로 중소기업보다 훨씬 더 많게 나타남

<표 II -19> 지역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개년 합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서울	152	13,993	171	130,286	349	22,296	307	168,455	501	36,289	478	298,741
인천	209	8,418	27	3,579	399	19,749	54	19,682	608	28,167	81	23,261
경기	1,539	72,268	161	19,572	2,830	133,207	298	936,513	4,369	205,475	459	956,085
강원	65	1,876	12	546	129	4,544	21	4,335	194	6,420	33	4,881
대전	45	2,288	9	582	103	6,693	21	3,671	148	8,981	30	4,253
충북	150	10,603	38	3,513	278	21,483	76	10,884	428	32,086	114	14,397
충남	182	15,807	52	6,312	351	24,008	102	26,484	533	39,815	154	32,796
세종	13	1,692	6	344	39	2,967	11	675	52	4,659	17	1,019
광주	77	2,996	9	322	196	7,112	15	1,128	273	10,108	24	1,450
전북	88	2,449	16	3,374	160	6,152	38	8,950	248	8,601	54	12,324
전남	111	3,433	12	1,064	250	5,969	27	2,772	361	9,402	39	3,836
대구	72	5,917	11	3,743	188	12,781	33	4,321	260	18,698	44	8,064
경북	171	7,408	37	7,406	411	18,782	70	14,870	582	26,190	107	22,276
부산	134	6,988	34	3,413	286	13,410	57	6,505	420	20,398	91	9,918
울산	38	2,050	24	9,827	88	6,564	43	13,704	126	8,614	67	23,531
경남	235	11,722	41	5,220	492	23,155	88	10,683	727	34,877	129	15,903
제주	35	556	0	0	41	1,371	2	212	76	1,927	2	212
합계	3,316	170,463	660	199,105	6,590	330,242	1,263	1,233,843	9,906	500,705	1,923	1,432,948

자료: 『국세통계연보』, 8-3-20.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표 II -20> 수입금액 규모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개년 합계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일반기업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10억 이하	338	601	0	0	708	1,840	0	6	1,046	2,441	0	6
20억 이하	328	1,555	1	0	666	2,918	0	156	994	4,473	1	156
50억 이하	550	6,390	4	28	1,187	11,877	0	79	1,737	18,267	4	107
100억 이하	503	10,642	6	38	1,052	23,575	20	195	1,555	34,217	26	233
200억 이하	596	24,713	30	346	1,179	49,318	47	942	1,775	74,031	77	1,288
300억 이하	354	27,142	29	747	593	39,243	47	1,932	947	66,385	76	2,679
500억 이하	292	33,582	41	2,271	601	60,182	85	6,165	893	93,764	126	8,436
1,000억 이하	298	44,822	101	6,710	473	81,214	168	12,254	771	126,036	269	18,964
5,000억 이하	55	17,863	307	46,088	128	51,434	566	84,829	183	69,297	873	130,917
5,000억 초과	2	3,151	141	142,877	3	8,640	320	1,127,284	5	11,791	461	1,270,161
합계	3,316	170,463	660	199,105	6,590	330,242	1,263	1,233,843	9,906	500,705	1,923	1,432,948

자료: 『국세통계연보』, 8-3-20.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표 II -21> 업종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개년 합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법인수	공제액
농림어업	33	562	9	285	71	2,047	16	307	104	2,609	25	592
광업	7	333	1	73	13	891	3	56	20	1,224	4	129
제조업	2,411	137,199	474	163,185	4,642	261,278	934	1,169,267	7,053	398,477	1,408	1,332,452
전기·가스·수도업	67	655	31	10,542	172	2,895	53	17,079	239	3,550	84	27,621
건설업	119	1,794	11	3,780	283	3,648	12	656	402	5,442	23	4,436
도매업	263	6,503	51	5,064	543	13,065	81	8,112	806	19,568	132	13,176
소매업	35	273	8	518	66	4,314	17	2,084	101	4,587	25	2,602
음식숙박업	5	10	2	33	30	270	11	1,686	35	280	13	1,719
운수·창고·통신업	170	8,142	31	11,168	347	15,140	40	19,666	517	23,282	71	30,834
금융보험업	0	0	4	49	0	0	7	148	0	0	11	197
부동산업	5	12	0	0	13	252	3	646	18	264	3	646
서비스업	177	13,911	27	3,552	360	24,704	64	10,960	537	38,615	91	4,512
보건업	24	1,070	11	857	50	1,739	22	3,177	74	2,809	33	4,034
기타업종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3,316	170,463	660	199,105	6,590	330,242	1,263	1,233,843	9,906	500,705	1,923	1,432,948

자료: 『국세통계연보』, 8-3-20.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Ⅲ. 해외 사례 분석



Ⅲ. 해외 사례 분석

1. 미국²⁸⁾

가. 개요

- 미국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대부분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있으며,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도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는 2022년 8월에 미국 정부가 도입한 2개 입법과 관련이 있는데,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임
 -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 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CHIPS 법안(The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의 Section 48D 조항이 발효²⁹⁾
 - 또한,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을 제정³⁰⁾
 -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 감소 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

- IRC section 38에서는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로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하여 고용 등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 항목 38가지를 제시하고 있음³¹⁾, ³²⁾

28) 김빛마로 외, 2018, pp. 50~62 내용을 참고하여 최근 내용으로 수정 및 업데이트함

29) PWC, 2022, p. 2.

30) <https://codes.findlaw.com/us/title-26-internal-revenue-code/26-usc-sect-46/>, 검색일자: 2024. 3. 8.

31)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38>, 검색일자: 2024. 2. 23.

- 이 중 IRC section 46(Amount of credit)에서 대표적인 특정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항목을 6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①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
 - ② 에너지 투자세액공제(energy credit)
 - ③ 첨단 석탄설비 투자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coal project credit) 및 특정 석탄가스화 설비투자 세액공제(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
 - ④ 첨단 에너지 설비투자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 ⑤ 첨단 제조 투자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 ⑥ 청정 전기 투자 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
- 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납세자가 감가상각 가능한 재산, 추정 내용 연수가 3년 이상(해당 재산이 사용되는 시점 기준), 유형자산(건물 및 그 구조적 구성 요소 제외)을 대상으로 함

나. 조세지원제도

- 미국의 경우 일반 소득세법 등에서 조세감면 및 가속상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1) CHIPS and Science Act(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

-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는 반도체 분야 및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2,481억달러 예산을 투입하는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II-1>과 같음

<표 III-1> 미국 CHIPS and Science Act 주요 내용

		(단위: 억달러)
구분	주요 내용	금액
CHIPS Act of 2022에 따른 지원	○ CHIPS for America Fund -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촉진 인센티브, 배정 금액 중 20억달러까지 대출 및 대출 보증 비용으로 사용 가능	390
	○ CHIPS for America Defense Fund - 군수 및 정보용 반도체 생산시설 지원	20

32) U.S. Code § 38(b)의 (34), (39), (40) 삭제

<표 III-1>의 계속

(단위: 억달러)

구분	주요 내용	금액
CHIPS Act of 2022에 따른 지원	○ CHIPS for America 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 - 정보통신기술 안보 및 반도체 공급망 관련 국제협력 지원	5
	○ CHIPS for America Workforce and Education Fund - 반도체 인력 양성 지원	2
	○ Department of Commerce Research and Development - 상무성 산하 반도체 및 전자공합 관련 연구개발(국립 반도체기술센터 설립과 첨단 패키징 제조 등 프로그램 지원)	110
	○ 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 - 정보통신청, 국립표준기술원 및 국토안보부 등에 대한 공공무선통신망 기술혁신 지원	15
2022년 반도체 법에 따른 펀드 및 연구개발 지원 소계		542
Investment Tax Credit (투자세액공제)	○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 Facilitating American Built Semiconductors Act에 의거,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의 25%를 세액공제	240
Research & innovation 연구 및 혁신	○ 미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국립과학재단(NSF), 상무성 소관 미국 전역에 걸친 20개 권역별 기술 허브 구축, 국립표준기술원(NIST),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의 각종 연구개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1,699
CHIPS & Science Act of 2022에 따른 총 책정액		2,481

자료: Congress.gov,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Public law No. 117-167; 김준동 외(2023), p. 31.

-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및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시
 - ① 2022년 반도체 법(CHIPS Act of 2022)에 따른 지원 ②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③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에 대한 지원(Research & innovation) 등 세 가지로 구분됨
- 2022년 8월 9일, CHIPS 법안(The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의 Section 48D 조항이 발효되어,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 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함³³⁾

33) PWC, 2022, p. 2.

- 동 법안은 2021년 6월 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³⁴⁾ 중 반도체 관련 조항임
 - USICA는 인공지능, 반도체, 생명공학, 신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 및 상업화, 교육 분야에 대해 5년간 최소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
- (적격 투자비용 및 대상) 적격 투자액의 경우 건물의 재건축 비용은 미포함하며, 특정 증축 비용만 포함함
 - 적격 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① 상각 가능한 자산
 - ② 납세자가 취득, 건축 및 증축한 자산
 - ③ 반도체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 (투자 기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이 시작되는 시설 중 2022년 12월 3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함
 - 2023년 1월 1일 이전 투자분의 경우는 2022년 8월 9일 이후 지출한 적격자산의 건설 및 증축 비용만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2)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H.R.5376 -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가) 개요

- 2022년 8월 16일,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보호,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이 제정됨³⁵⁾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Build Back Better Act의 축소판으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국민의 생활 어려움을 덜어주고, 청정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소득 증가 등을 통해서 미국경제의 재건을 목표로 함³⁶⁾

34)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CHIPS and USA Telecom Act,’ ‘Endless Frontier Act, Strategic Competition Act,’ ‘Securing America’s Future Act,’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Trade Act 2021’의 법안으로 구성

35) 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ReadPage.do?CTS_SEQ=50203&AST_SEQ=315&ETC=1, 검색일자: 2024. 2. 23.

36) 김준동 외, 2023, p. 33.

-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환경오염 감소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함
 - 이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항목을 신설하는 등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함
 - 분야별로 보면 발전, 탄소격리, 연료, 가정용 에너지 설비, 건물 에너지 효율,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저장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포함
 - 조세 부문에서는 3년간 연평균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5% 최저법인세율을 부과하는 대체 최저법인세를 시행,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하여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IRA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종류는 생산세액공제(PTC)와 투자세액공제(ITC)로 구분함
- 생산세액공제: 배터리, 태양광 등 제품 생산 시 kWh, W 등 일정 단위마다 제공하는 세액공제
 - 투자세액공제: 배터리, 태양광 등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지으면 30%까지 세액공제
 - IRA 세액공제는 공제세액의 직접 환급(Direct Pay)과 미사용 세액공제의 양도(Transferability)를 허용

<표 III-2> 신재생에너지 관련 PTC 및 ITC

구분	PTC(Production Tax Credit)	ITC(Investment Tax Credit)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Wh당 1.5센트(임금 및 견습 조건 미충족 시 0.3센트)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하며 인플레이션 조정을 적용해줌 ○ 2022년 임금 및 견습 조건 충족 시 2.6센트¹⁾ (임금 및 견습 조건 미충족 시 0.5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금액의 30% (임금 및 견습 조건 미충족 시 6%) 세액공제 혜택 제공
세액공제 우대조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배적 임금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 노동자, 정비사, 계약자, 하청업체에 노동부 장관이 결정한 우세한 요율로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시설의 건설, 변경, 수리 기간 및 그 후 PTC는 10년, ITC는 5년 동안 지급되어야 함 2. 견습 조건을 충족해야 함 견습생은 자격을 갖춘 시설의 건설, 변경, 수리 작업을 위한 노동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행해야 함(2022년까지 10%, 2023년 12.5%, 2024년부터 15%) 	

〈표 III-2〉의 계속

구분	PTC(Production Tax Credit)	ITC(Investment Tax Credit)
미국 부품 요구	○ 미국에서 생산되는 철강, 철, 제조부품이 일정 비중을 넘을 때 10%의 보너스 세액공제 적용(해상풍력은 다른 산업 대비 유리한 비율을 적용)	
에너지 커뮤니티	○ 재개발 부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과 관련된 특정 고용 비율을 충족하는 지역, 폐광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10%의 보너스 세액공제	
저소득층 지역		○ 저소득 지역, 부족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대해 10% 보너스 세액공제 ○ 자격을 갖춘 5MW 이하인 저소득층 주거용 건물의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20% 보너스 세액공제 혜택 적용

주: 1) 1.5센트, 0.3센트에 2022년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금액
 자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신재생에너지-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찾는 투자 기회」, 2022. 10. 13.; 기획재정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11., p. 33. 재인용

나) 직접 지급³⁷⁾³⁸⁾

- IRA에서는 정부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공제 세액의 직접 환급(Elective Pay 또는 Direct-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를 일반기업에 일부 허용하도록 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을 개정함³⁹⁾
 - IRA Section 13801. Elective Payment for Energy Property and Electricity Produced from Certain Renewable Resources, etc.의 Code Sec.6417. Elective Payment of Applicable Credits에 규정
 - IRA에는 다음의 <표 III-3>과 같이 직접 지급이 가능한 12개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포함
 - 적격 법인으로는 비영리단체, 주 및 지방정부, 정부 기관, 원주민 부족 및 기업, 에너지 회사 관련 기술개발자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⁴⁰⁾
 - 과세대상 기업의 경우 IRC section 45Q, 45V, 45X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 선택 (선택적 지불)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37)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elective-pay-and-transferability-frequently-asked-questions-elective-pay#q15>, 검색일자: 2024. 4. 22.

38) <https://www.novoco.com/notes-from-novogradac/irs-proposed-guidance-transferability-direct-pay-mechanisms-clean-energy-credits-opens-new-financing>, 검색일자: 2024. 4. 22.

39) 26 USC 6417. Elective payment of applicable credits, 6418. Transfer of certain credits.

40) for tax-exempt organizations; states; political subdivisions;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Indian Tribal governments; Alaska Native Corporations; and rural electricity co-ops.

- 양도의 경우에는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능함
- 아래의 공제 항목별 설명은 IRA guidebook을 참고하여 작성함⁴¹⁾

<표 III-3> 직접 지급이 가능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현황

구분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IRC Sec.30C)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IRC Sec.45)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IRC Sec.45Q)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 세액공제(IRC Sec.45U)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IRC Sec.45V)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IRC Sec.45W)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IRC Sec.45X)
청정전기 생산 세액공제(IRC Sec.45Y)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IRC Sec.45Z)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IRC Sec.48)
대체에너지 투자 세액공제(IRC Sec.48C)
청정전기 투자 세액공제(IRC Sec.48E)

주: 1. 양도의 경우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가능

2. 과세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직접 지급 선택이 가능

자료: <https://iratracker.org/programs/ira-section-13801-elective-payment-for-energy-property-and-electricity-produced-from-certain-renewable-resources-etc/>, 검색일자: 2024. 5. 7.

- ① (대체연료 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저소득층 및 농촌 지역의 대체연료 차량 연료 및 충전 등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으로 대체연료에는 전기, 에탄올, 천연가스, 수소, 바이오디젤 등이 포함됨(IRA 13404조)
 - (기본공제) 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의 6%(100,000달러 한도), 개인은 30%(1,000달러 한도)
 - 적정 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30% 공제 가능
- ②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s)) 재생 가능 에너지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IRA 13101조)

41) The White House, "Building a clean energy economy: a guidebook to the inflation reduction act's investments in clean energy and climate action," 2023. 1.

- (적용 대상)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광, 매립 및 쓰레기, 수력 발전, 해양 및 수력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등
 - (기본공제) 0.3센트/kWh이며,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
 - 적정 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기본공제율의 5배로 공제
- ③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Credit for Carbon Oxide Sequestration)) 미국 내에서 허용된 최종 사용과 결합된 이산화탄소 격리에 대한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는 탄소포집 및 격리,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을 위한 주입 또는 활용(utilization)에 기반한 생산세액공제를 말함(IRA 13104조)^{42), 43)}
- (기본공제액) 포집 및 격리된 이산화탄소는 톤당 17달러이며 석유회수증진(EOR)을 위해 주입되거나 활용된 이산화탄소는 톤당 12달러
 - 직접대기포집(direct air capture: DAC) 시설의 경우 포집 및 격리된 이산화탄소는 톤당 36달러 공제, 석유회수증진을 위해 주입되거나 활용된 이산화탄소는 톤당 26달러를 공제함
 - 또한, 적정 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기본공제율의 5배로 공제가 가능하게 됨
 - (적용 대상) 직접대기포집(DAC)의 경우 1,000톤,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75%를 포집 가능한 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시설의 경우 18,750톤, 기타 시설의 경우 12,500톤의 이산화탄소 처리량 기준 이상인 미국 내 시설을 대상으로 함
 - 다만, 해당 시설이 2033년 1월 1일 이전 가동되어야 함
 - 직접 지급 적격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기업의 경우 직접 지급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가능함
- ④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세액공제(Zero-Emission Nuclear Power Production Credit)) IRA에서 신설한 공제 조항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후 생산 및 판매된 전기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으로 2032년까지 10년간 적용되는 공제를 말함(IRA 13105조)
- (적용 대상) IRC 45J 항목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공제율) 0.3센트/kWh이며, 2024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
 - 해당 시설에서 개조나 수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5센트/kWh로 증가
- ⑤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Credit)) 미국의 수소 생산업

42) 정훈·김동구, 2023, p. 18.

4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5Q>

체를 대상으로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에서 청정수소 생산에 대한 세금공제를 말하며, 2023년 12월 22일,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지침을 발표함(IRA 13204조)⁴⁴⁾, ⁴⁵⁾

- 미국 내 적격생산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적격청정수소⁴⁶⁾ 1kg당 최대 3달러를 적용
 - (기본공제액) 적용비율(applicable percentage)에 \$0.6/kg을 곱한 값으로, 적용비율은 수명주기 온실가스에 따라 20%에서 100%를 적용
 - 적정 임금 및 등록전습생 요건을 만족할 경우 기본공제율의 5배로 공제가 가능하게 됨
 - (적용 기간)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된 수소에 대해 공제 가능, 2033년 1월 1일 이전에 가동된 시설에 한해서는 최초 10년간 공제 가능
 - 단, 액화수소에 대한 기존 소비세 공제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
 - 제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정수소 세액공제 시행 지침을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생산시설의 공사를 시작할 경우 해당 시설은 사용가능한 세액공제의 5배 공제가 가능함
 - 직접 지급 적격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기업의 경우 직접 지급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가능함
- ⑥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Credit for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적격 상업용 청정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말함(IRA 제13403조)
- (적용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2033년 이전 취득 차량을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기본공제) 차량 구매가의 15%(비내연기관 차량은 30%)와 비교 가능한 내연기관차량의 가격을 초과하는 구매 가격 차액 중에서 더 작은 금액
 - (공제 한도) 1만 4천파운드 미만 차량의 경우 7,500달러, 그 외 청정 자동차는 4만달러 한도
 - 양도 불가능
- ⑦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태양 및 풍력

44) <https://www.whitehouse.gov/cleanenergy/clean-energy-updates/2023/12/22/treasury-sets-out-proposed-rules-for-transformative-clean-hydrogen-incentives/>, 검색일자: 2024. 2. 24.

4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5V>

46) 적격청정수소란 수소 1kg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이하인 공정에서 생산된 수소를 말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명주기 온실가스 배출량(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에 따라 측정함

에너지 부품, 에너지 저장, 관련 핵심 광물 분야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부품별로 상이한 세액공제를 적용함(IRA 13502조)⁴⁷⁾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 및 판매된 부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핵심 광물 분야를 제외하고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할 예정⁴⁸⁾
- 또한 대체에너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자산에 대해서는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청구가 불가함
- 직접 지급 적격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기업의 경우 직접 지급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5년간 가능함

<표 III-4>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주요 조항

구분	공제 내용
태양광	(셀) \$0.04/W (폴리실리콘) \$3/kg (웨이퍼) \$12/m ² (모듈) \$0.07/W 등
풍력	(블레이드) \$0.02/W (나셀) \$0.05/W (타워) \$0.03/W 등
인버터	(중앙형) \$0.0025/W (유틸리티) \$0.015/W (상업용) \$0.02/W (주택용형) \$0.065/W 등
배터리	(셀) \$35/kWh (모듈) \$10/kWh(배터리 셀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45/kWh)
핵심 광물	생산비용의 10%

자료: The White House(2023), p. 3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12. 15.) 재인용

- ⑧ (청정 전기 생산 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청정 전기 생산에 대해 기술중립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기존의 생산세액공제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함(IRA 제13701조)
 - (적용 대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0 이하인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및 적격 에너지저장 기술
 - (기본 공제) 0.3센트/kWh로 2024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
- ⑨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Clean Fuel Production Credit))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를 포함한 청정 운송 연료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함(IRA 13704조)
 - (적용 대상) 미국 내 등록된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며, mmBTU당 50kg CO₂e 미만을 청정연료로 간주

47) 2023년 12월 14일에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시행 규정안을 발표함

48) 2030년 75%, 2031년 50%, 2032년 25%, 2032년 12월 31일 이후는 0% 적용 예정

- (기본공제) 비항공 연료의 경우 \$0.20/갤런, 항공 연료의 경우 \$0.35/갤런에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emissions factor)를 곱한 값을 공제하며, 2024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될 예정
- ⑩ (에너지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for Energy Property))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던 기존의 투자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간 연장하고 적용 대상과 혜택도 확대함(IRA 13102조)⁴⁹⁾
- (적용 대상)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규모 풍력, 에너지저장장치, 바이오가스, 마이크로그리드 통제기, 열병합발전 등을 대상으로 함
 - IRA에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여 5kWh 이상 용량의 독립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바이오가스, 마이크로그리드 통제기(20MW 이하), 소규모 프로젝트용 상호연결자산(5MW 이하)을 포함
 - (세액공제율)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최초 10년간은 기본공제율을 6%로 하며, 2033년에는 5.2%, 2034년에는 4.4%로 조정됨
 - 적정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32년까지 30%, 2033년에 26%, 2034년에 2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⑪ (대체 에너지 투자세액공제(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적격 첨단 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말함(IRA 13501조)⁵⁰⁾
- IRA에 따라 신규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공제 할당이 가능
 - (기본공제) 납세자의 적격 투자액의 6%이며, 적정 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까지 공제 가능함
 - (적용 대상) 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연료전지, 소형 터빈, 전기 및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 사용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재생에너지 배전관, 재생연료 정제설비, 에너지 저장 경량화 기술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자동차,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여타 에너지 장치 등의 구입 및 설치 등에 대한 투자액을 대상으로 함⁵¹⁾

49)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 및 정훈·김동구, 2023, p. 13.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중 IRA(법률 제13102조)에 해당하는 Investment Tax Credit for Energy Property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50)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C>, 검색일자: 2024. 2. 26.

51) 김빛마로 외, 2018, p. 57.

⑫ (청정 전기 투자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Investment Tax Credit)) 청정 전기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기술 중립적 세액공제 제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0 이하인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및 적격 에너지저장 기술을 대상으로 적용함 (IRA 13702조)

- (기본공제) 적격 투자의 6%로 적정 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 충족 시 30% 적용
- 철강 및 제조 제품에 대한 미국산 제품 비율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0%p 증가
-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 최대 10%p 증가
- 2032년 또는 미국의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 배출량 대비 25% 이하인 시점 중 더 늦은 시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

□ (IRA 세출세입계획) 2022~2031년까지 총 4,990억달러 지출과 7,380억달러 수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2,380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감축이 예상된다⁵²⁾

-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자금 조달에 해당하는 세입 내역 중 3,910억달러가 할당됨
- (예산 확보 계획) 최저 법인세 15% 도입 등을 통해 10년간 약 7,38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하여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헬스 케어 등에 대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적자 축소를 도모하고자 함
 - 2022년 이후 내국법인이 자사주 매입 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과세하여 예산 확보
 - 2022년 12월 3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15%의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여 예산 확보
 - 2026년부터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를 통해 처방약 가격 개정에 따라 예산 확보
 - IRS의 세무 집행 강화를 통해 예산 확보 등
- (지출 계획)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ACA) 보조금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이에 대해 640억달러(CBO 추산액 기준) 지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910억달러(CBO 추산액 기준) 지출 등이 포함

52) <https://www.crfb.org/blogs/cbo-scores-ira-238-billion-deficit-reduction>

<표 III -5> IRA 예산 추산(2022~2031년간 비용 및 절감액)

(단위: 십억달러)

구분		원안 (2022. 7. 28.)	수정안 (2022. 9. 7.)	
지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청정 전기 세액공제	161	161
		대기 오염, 유해 물질, 운송 및 인프라	40	40
		개인 대상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	37	37
		청정 제조 세액공제	37	37
		청정 연료 및 차량 세액공제	36	36
		농촌 개발 및 임업 관련	35	35
		건물 효율성, 전기화, 송전, DOE 보조금 및 대출	27	27
		기타 에너지 및 기후 지출	14	18
	총합계	386	391	
	헬스케어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3년 연장	64	64
		저소득층 보조금, 백신 등	34	44
		총합계	98	108
	총지출 합계		485	499
수입	15% 최저 법인세	313	222	
	처방약 가격 책정 개혁	322	281	
	국세청(IRS) 과세집행 강화	124	101	
	1% 자사주 매입(Buyback) 수수료 부과(소비세 부과)	-	74	
	초과 영업손실 소멸시효 2년 연장	-	53	
	Closure of Carried Interest Loophole	13	-	
	기타 수수료(메탄, 슈퍼펀드, 기타 등)	18	7	
	총수입 합계	790	738	
총재정적자 감축		305	238	

주: 지출 항목 중 애리조나 지역 가뭄 대응 지원(약 50억달러) 내용은 제외
 자료: <https://www.crfb.org/blogs/cbo-scores-ira-238-billion-deficit-reduction>, 검색일자: 2024. 5. 2.

□ (IRA 주요 내용) IRA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III-6>과 같음

<표 III-6> IRA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지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안보 및 미국 생산 지원) 태양광 패널·풍력터빈·배터리 및 중요 광물 가공의 온쇼어링에 대한 생산세액공제(\$300억), 전기차·풍력터빈·태양전지판 등 청정 기술 제조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00억), 신규 청정 에너지 차량 제조시설 건설 대출(\$200억) 및 기존 시설 재정비 보조금(\$20억) 등 ○ (경제 탈탄소화) 청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대출(\$300억), 지역 사회 청정기술 지원(\$270억), 청정 전력원/에너지 저장/청정연료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및 보조금 등 ○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절감) 가정용 열펌프·태양광·전기 HVAC 등 소비자 세액공제, 미국산 전기·대체에너지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 (지역사회 및 환경정의 투자) 대기오염·기후변화 관련 지역사회 활동 지원, 지역 간 교통 불평등 개선, 항구 대기오염 절감 보조금, 교통버스·쓰레기 수거 차량 등 대형 청정에너지 차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A 지원 확대안 시행 기간 연장) 미국구제계획법(America Rescue Plan, ARP)에 따라 한시적으로 확대된 ACA 보험료 보조금의 수혜 대상 및 지원규모를 '25년까지 연장 적용 - 2021년 3월 ARP 통과에 따라 ACA 보험료 공제율 및 소득 기준 등이 '22년말까지 완료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2년 ACA 가입자는 역대 최대치인 1,450만명으로 증가(전년 대비 +250만명) ○ (기타 보건 지출) 메디케어 환자에 대한 특정 백신 무료 제공, 저소득층 보조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리조나 지역 가뭄 대응 지원(\$50억)
재원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연평균 \$10억 이상의 이익을 창출한 기업은 재무이익 대비 최소 15%를 납부하도록 하는 대체 최저 법인세율(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부과 - 미국 기준법인세율은 21%이나 기업들이 각종 공제제도 및 조세 허점을 이용해 15% 미만의 세금을 내고 있어, 대체최저세율 적용 세액이 더 클 경우 대체최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 - 약 150~200여개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며 50%는 제조 기업일 것으로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료보험(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 협상 허용, 메디케어 환자 처방약 본인부담액을 연간 \$2,000로 상한, 메디케어 의약품 가격 인상의 물가 연동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 집행(tax enforcement) 강화, 납세 서비스 개선, 운영 지원 및 시스템 현대화 등 과세 집행 강화 - 연간 과세소득 \$40만 미만 가구 및 중소기업 과세에 대해서는 미사용 - 10년간 \$800억을 투입하여 총 \$2,040억의 세수 창출 효과 기대 (CBO 추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사주 매입(buyback) 시 매입액의 1%를 소비세로 부과

자료: Senate Democrats, CRFB; 국제금융센터(2022. 8.), p. 3.

3) IRC section 46(Amount of credit)

- 내국세법에서 규정된 특정 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 항목 중 IRA에서 제외된 항목에 대해서만 아래에 기술함

가)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IRC Sec.47)^{53), 54)}

- 내국세법(IRC) Sec 47에 따른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일반적으로 역사 보존 또는 역사적인 건물에 대한 적격재건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함
 - 이 공제는 역사적인 건물을 재건하기 위한 적격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함

- (적용 대상) 산업 및 상업 건물에 한하며, 사업 또는 투자용 건물로서 거주용 임대 건물은 제외함
 - 재건비용은 리노베이션, 보수, 복원과 관련된 비용을 말하며, 증축이나 신규 신축 비용은 제외

나) 첨단 석탄설비 및 특정 석탄가스화 설비투자 세액공제(IRC Sec.48A, 48B)

- 석탄 관련 청정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 석탄설비 및 특정 석탄가스화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임

- (첨단 석탄 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 유형에 따라 30%, 20%, 15%의 공제율을 적용함⁵⁵⁾
 - 첨단 석탄 설비를 활용하는 사업: 12.5억달러 한도 내 투자금액의 30% 공제
 - 석탄 가스화 복합사업: 8억달러 한도 내 투자금액의 20%
 - 기타 첨단 석탄발전기술 사업: 5억달러 한도 내 투자금액의 15%

5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7>, 검색일자: 2024. 2. 26.

54)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rehabilitation-credit>, 검색일자: 2024. 2. 26.

55)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A>, 검색일자: 2024. 2. 26.

- (특정 석탄가스화 설비 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함⁵⁶⁾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75% 감축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가스화 사업: 2.5억 달러 한도 내 30% 공제
 - 기타 가스화 사업: 3.5억달러 한도 내 20% 공제

□ (중복적용 배제) 위 두 가지 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함

다) 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IRC Sec.48D)⁵⁷⁾

□ 첨단 제조 시설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 적격 투자액의 2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함

□ (적용 대상)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관련된 투자를 대상으로 함

- 적격 자산은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자산, 납세자가 건설, 재건 또는 건립한 자산, 첨단 제조 시설 운영 등을 말하며, 사무실, 행정서비스 또는 제조와 관련이 없는 건물은 제외함

4) 특정 소규모 투자에 대한 비용공제(IRC Sec.179)⁵⁸⁾

□ 특정 유형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특정 목적 시설 외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해 특별비용공제(Expensing of certain small investment)가 있음

- (적용 대상) 사업 수행 등을 위해 구입한 자산으로 기계장치, 실제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유형자산, 사무용 가구 및 설비, 건물부속설비 등이 있음
- (비용처리금액) 최대 100만달러 한도이며, 연간 투자금액이 25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투자금액만큼 비용처리 한도가 줄어들음
 - 연간 투자금액이 350만달러 이상일 경우 비용처리가 불가능

56)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B>, 검색일자: 2024. 2. 26.

5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8D>, 검색일자: 2024. 2. 26.

58)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179>, 검색일자: 2024. 5. 30.

2. 일본⁵⁹⁾

가. 개요

- 일본은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조세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특정설비로 공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는 기본적인 정책 대상을 규정한 것이며, 법률과 제도에 따라 범위가 상이
 -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및 기타 업종의 경우 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300인 이하의 정규직 직원을 가진 사업자 및 개인, 도매업의 경우 자본금 1억엔 이하 또는 100인 이하의 정규직 직원을 가진 사업자 및 개인 이 중소기업자에 해당
 - 2018년 도입된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을 통해 생산성 관련 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함
 -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의 일부 제도에서도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의 형태로 생산성 관련 설비투자에 혜택을 부여함
 -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 중소기업 기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 일본의 법인세 특별조치는 세율 특례, 세액공제, 특별감가상각 등이 있으며, 최근 현황은 다음의 <표 III-7>과 같음⁶⁰⁾
 - 적용액의 종류는 법인세 특별조치 종류에 따라 상이하며, 법인세율 특례의 경우 소득 금액 대상, 세액공제는 세액공제액, 특별상각에 대해서는 특별상각한 도액, 준비금은 적립액 중 손금산입액을 말함
 -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의 경우 총 19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특별 감가상각은 30개가량이 운용 중에 있음

59) 김빛마로 외, 2018, pp. 110~135 및 김빛마로 외, 2019, pp. 51~58 내용을 요약 및 업데이트함

60) 일본 재무성, 2024.

- 현재 운용 중인 세액공제 제도 중 시험연구를 실시한 경우 특별공제가 2022년 기준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별 감가상각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제도가 2022년 기준 5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표 III-7> 일본의 설비투자 관련 법인세액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엔,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시험연구를 실시한 경우 특별공제	5,053	70.9	6,527	69.2	7,636	57.5
일반 시험연구비액 관련 세액공제	4,737	66.5	6,120	64.9	7,255	54.6
중소기업 기술 기반 강화 세제	208	2.9	256	2.7	241	1.8
특별시험연구비액 관련 세액공제	108	1.5	151	1.6	141	1.1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 상각	1,999	24.6	1,934	23.3	1,814	21.7
중소기업자 등이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공제	163	2.3	186	2.0	189	1.4
오키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지역에서 공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공제	6	0.1	5	0.1	1	0.0
지역경제촉진구역내 특정 사업용 기계 취득한 경우 특별공제	83	1.2	91	1.0	86	0.6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	4,742	58.3	4,885	58.9	5,005	59.8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공제	96	1.3	115	1.2	120	0.9
중략						
총조세지출						
법인세율특례	39,525		42,937		44,357	
세액공제	7,128		9,437		13,289	
특별감가상각	8,134		8,299		8,369	
준비금(예비비)	6,708		5,506		6,575	

주: 비율은 각 연도별 세액공제, 특별감가상각 대비 제도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일본 재무성, 『租税特別措置の適用實態調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書』, 2024. 2. 6.을 토대로 재작성함

나. 조세지원제도⁶¹⁾

- 일본의 특정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은 「조세특별조치법」 제3장 법인세법의 특례에 규정⁶²⁾하고 있으며, 투자지원에 대해 세액공제와 특례감가상각 중 선택을 허용하며, 일부 자산의 경우 개별 특별상각을 적용함

〈표 III-8〉 일본의 주요 설비투자 관련 조세지원 제도 내용 요약

제도	지원방식	내용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7% (법인세액의 20% 한도)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30 ²⁾
오키나와 특정지역 내 산업용 기계 취득시 특별공제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15%(건물 및 부속설비 5%) (법인세액의 20% 한도)
국가전략특구 내 특정 기계장치 등 취득 시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14%(건물 및 부속설비 7%) (법인세액의 20% 한도)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45%(건물 및 부속설비 23%)
국제전략종합특구 내 특정기계장치 취득 시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¹⁾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10%(건물 및 부속설비 5%)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34%(건물 및 부속설비 17%)
지방경제건인사업촉진구역 내 특정 사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 특별상각 또는 특별공제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5%(건물 및 부속설비 2%) (법인세액의 20% 한도)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40%(건물 및 부속설비 20%)
DX 투자 촉진 세제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3% 또는 5%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30%
탄소 중립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3% 또는 5%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50%

주: 1) 202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세액공제는 취득가액의 8%(건물 등 4%), 특별상각은 30%(건물 등 15%)로 인하

2) 최초연도에 한해 기준 취득원가의 30%를 특별상각함

자료: 김빛마로 외(2018), pp. 133~134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최근 개정 내용으로 업데이트함

61) 본 소절에서는 설비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제도만 살펴봄

62)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2AC0000000026> (검색일자: 2024.2.16.)

1)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및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中小企業經營強化税制)⁶³⁾

가) 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⁶⁴⁾

- 2016년 7월 1일 시행된 「중소기업경영강화법」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인재육성 및 재무관리, 설비투자 등에 대해 기재한 경영능력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한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소매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인된 경영혁신지원기관에 의해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받은 기업이 경영개선설비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경영혁신지원기관은 「중소기업경영강화법」 제21조 제2항의 공인경영혁신지원기관 및 이에 준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을 지칭함
 - 상공회의소, 상공회, 도도부현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등과 같은 법인 및 전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는 국가 인증 금융기관,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함
- (정책대상 및 자산) 청색신고법인⁶⁵⁾이면서 관리능력향상계획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중 자본금 3,000만엔 이하 법인에 한정함
 - 주로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대상이며, 풍속업 및 오락업, 건설업 및 제조업은 제외함
 - 적용 자산 중 특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는 「중소기업경영강화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경영능력 향상에 현저히 기여하는 설비(생산성 향상설비, 수익성 제고 설비, 디지털화설비, 경영자원집약설비)를 말함

63) 2021년(令和3年) 6월부터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으로 이관,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은 지자체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첨단설비를 취득한 경우 고정자산의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https://www.town.kahoku.yamagata.jp/soshiki/shoko/tiikisangyou/3276/658.html>, 검색일자: 2024. 2. 16.)

64) <https://shinnihon-keiei.com/特別償却-税額控除/> 및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3

65) 납세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는 일정 수준의 기장을 행하고 그 기록에 따라 정확히 신고하는 방식을 말함. 청색신고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의 계산 등에 대해 유리한 혜택(결손금 이월, 결손시 환급, 자산 일괄 경비 계상, 특별상각 및 특별공제)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경영강화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영능력향상계획에 규정된 것은 제외

<표 III-9>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 적용 가능 요건

구분	내용
법인	중소기업 등
조건	① 관리 능력 향상 계획 인증 취득 ② 특정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 구입 등(생산성 향상 설비·수익성 제고 설비·디지털화 설비·경영 자원 집약 설비)
적격 자산	기계 및 장비, 도구, 기구 및 비품, 건축 보조 장비 및 생산 설비 등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등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것
특별 감가상각	취득 비용× 100%(즉시 감가상각)
세액공제	취득 가격×7%(자본금 3,000만엔 이하의 특정 중소기업은 10%) * 법인세의 20%

자료: <https://shinnihon-keiei.com/特別償却-税額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34.htm>
검색일자: 2024. 2. 21.

<표 III-10>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 적용자산별 내용

구분	생산성 향상 설비	수익성 제고 설비	디지털화 설비	경영 자원 집약 설비
적용 요건	종전 대비 평균 1% 이상 생산성 향상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5% 이상인 투자계획 관련 시설	시각화, 원격제어 또는 자동 제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	부동산, 플랜트 및 장비 회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 계획 관련 장비
대상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설비(1,600,000엔 이상) ○ 공구(300,000엔 이상) ○ 비품 및 비품(300,000엔 이상) ○ 건축 부대 설비(600,000엔 이상) ○ 소프트웨어(700,000엔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관련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등(사무용 기구, 비품 및 분점·기숙사 등에 관련된 건물 부속 설비, 복리 후생 시설 관련 설비 제외) ○ 일본 국내 투자 설비(중고 자산, 대출 자산 등 제외) 			

자료: <https://shinnihon-keiei.com/特別償却-税額控除/>;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34.htm>
검색일자: 2024. 2. 21.

- (지원 내용) 대상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 30%의 특별상각 또는 법인세액 20%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7% 공제가 가능함

- 특별상각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초과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함

나) 중소기업 기계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⁶⁶⁾

- 동 제도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및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며, 7%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감가상각 선택을 허용하고 있음
- (정책 대상)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업,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청색 신고대상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세액공제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00만엔 이하 법인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하인 개인사업자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함
 - 특별감가상각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함
- (대상 자산) 동 특례에서 적용 가능한 자산은 제작 후 사업용으로 제공된 적 없는 신제품으로, 지정기간 내 취득 또는 제작하여 지정 사업용으로 제공한 것을 대상으로 함(<표 Ⅲ-11> 참조)
- (지원 내용) 자본금 3,000만엔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가액의 30% 특별상각 또는 7%의 세액공제 중 선택을 허용함
 - 자본금 3,000만엔~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감가상각만 적용
 - 또한,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의 합계가 당해 연도 법인세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표 Ⅲ-11> 중소기업 기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

구분	내용
대상 업종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전기업, 물 산업, 오락산업 (영화업은 포함), 성(性) 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 사업자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

66) 이상엽 외, 2018, pp. 50~56.

<표 III-11>의 계속

구분		내용
대상 설비	기계 및 장비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격 160만엔 이상
	측정 공구 및 검사공구	1대 또는 1기의 취득가격 120만엔 이상
	소프트웨어	하나의 소프트웨어 취득가격이 70만엔 이상
	화물 자동차	차량 총중량 3.5t 이상
	내항 선박	전체(취득가액의 75% 대상)
조치 내용	개인사업자 및 자본금 3,000만엔 이하 중소기업	특별상각 30%
		세액공제 7%
	자본금 3,000만엔 초과 중소기업	특별상각 30%
		세액공제 없음

자료: 이상엽 외(2018), p. 52. 및 「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6

2) 특정 지역 관련 특별공제⁶⁷⁾

- 「조세특별조치법」에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오키나와의 특정지구, 국가전략종합특구, 국제전략종합특구 및 관서문화학술연구지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규정이 제정됨
- 동 제도에 따라 청색신고 대상자가 특정 지역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기계 등 설비투자를 취득하여 지정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또는 특별감가상각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적용 대상 및 자산) 청색신고 대상 법인이 국가전략특구의 특정 사업의 실시 주체로 인정구역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대상으로 함⁶⁸⁾
 - 특정 지역은 아래와 같음
 - ① 「오키나와진흥특별조치법」에 따라 관광지형성 촉진지역, 정보통신 진흥지역, 산업고도화 사업혁신 촉진지역, 국제물류집적 지역, 경제금융활성화 특별지구 및 특정 지역(「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9)
 - ② 국가전략특구⁶⁹⁾ 또는 국제전략종합특구⁷⁰⁾(「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10 및 11)

67)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9~11, 제44조

68) 김빛마로 외, 2018, p. 130.

- 지방거점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 승인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 투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조세특별조치법』 제42의 11의2 및 3)

□ (지원 내용) 특정 지역별로 세액공제 금액이 상이함

- 『오кина와진흥특별조치법』 지정 지역
 - 법인세액 20%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15% 세액공제 적용
 - 청색신고 대상자가 20억엔 내 설비자산 취득 시 해당 설비 취득가액의 15%, 건물 및 부속설비의 경우 5% 세액공제 적용
- 국가전략특구 내 청색신고 법인이 인정구역계획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의 45% 특별감가상각(건물 등 23%) 또는 14%(건물 등 7%) 세액공제 적용⁷¹⁾
 -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외 특정 기계 및 설비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0%(건물 등 25%) 특별감가상각 또는 15%(건물 등 8%) 세액공제를 적용
- 국제전략종합특구 내에서 특정 기계 장치 등을 취득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는 특별감가상각의 경우 취득가액의 34%(건물 등은 17%), 세액공제는 10%(건물 등은 5%) 적용
 -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 외 특정 기계 및 장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40%(건물 등 20%) 특별감가상각 또는 12%(건물 등 6%) 세액공제를 적용
 - 2024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특정 기계 및 장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30%(건물 등 15%) 또는 8%(건물 등 4%) 세액공제를 적용⁷²⁾
- 청색신고법인으로서 『지역경제건인사업 촉진에 의한 지역성장발전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건인 대상 기업인 경우 특정 사업용 자산 취득가액⁷³⁾의 40%(건물 등 20%) 특별감가상각, 취득가액의 6%(건물 등 2%)의 세액공제를 적용^{74), 75)}

69) 기업의 투자와 인재채용, 국가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특정 지역과 분야에 한정하여 규제 완화와 세제상 우대조치 등 시행되는 특구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됨(김빛마로 외, 2018, p. 130.)

70)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총리의 인정을 받은 중점과제는 법률의 개정이 없이 즉시 특례를 적용하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산업 거점 정비를 위해 2011년 제정된 『종합특구법』에 의해 지정됨

71) 『조세특별조치법』 제42조의 10

72) 일본 재무성, 2023, p. 59.

73) 특정 업무용 기계류의 취득 비용 합계가 80억엔 이하여야 함

3)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투자 촉진 세제⁷⁶⁾

- DX 투자 촉진 세제는 2021년 8월,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대응 및 사업 적응⁷⁷⁾을 도모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DX 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지원 대상 및 자산) 동 제도는 인정 사업적응계획 요건을 충족하고 디지털 및 기업변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⁷⁸⁾
 - 디지털 요건: ①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데이터 또는 사업자가 센서 등을 이용하여 새로 취득한 데이터와 기존 내부 데이터를 합쳐서 연계할 것 ②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할 것 ③ 정보처리추진기구로부터 DX 인증을 받을 것
 - 기업변혁 요건: ① 상품 제조원가를 8.8% 이상 절감할 것 ② 생산성 향상 및 매출액 증가 목표를 정할 것 ③ 투자 총액이 매출액 대비 0.1% 이상일 것
 - 대상 설비: 소프트웨어, 이연자산,⁷⁹⁾ 적용 요건을 갖춘 기계장치 및 기구 비품

- (지원 내용)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율은 3%를 적용하며, 다른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⁸⁰⁾
 - 설비 투자 금액은 국내 매출액의 0.1% 이상이어야 하며, 1개사당 300억엔을 설비 투자 총액 상한으로 함
 - 세액공제 한도금액은 대상 설비 취득가액 합계액이 500억엔 이하인 경우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와 합산하여 당기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함⁸¹⁾

74)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436.htm>, 검색일자: 2024. 2. 16.)

75) 일본 재무성, 2023, p. 49.

76) 산업기술정책단, 2023.

77) 일본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대응, DX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업의 외부 환경 변화를 사업 적응으로 정의함

78) 전병목 외, 2021, pp. 92~93 내용을 정리함

79)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 관련된 초기 비용을 말함

80) 일본 경제산업성, 2023, p. 20.

81) 상동, p. 35.

4)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⁸²⁾

□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부터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지정한 5개 전략 분야에 대해 생산·판매량에 비례하여 10년간 법인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함⁸³⁾

- (대상 분야) ① 전기차(EV·FCV·PHEV)·이차전지 ② 그린철강 ③ 그린화학 ④ 지속가능한 항공기 연료(SAF), ⑤ 반도체
- (공제율 및 이월 기한) 2026년 회계연도까지 인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10년간 법인세의 최대 40% 공제(반도체 분야는 최대 20% 공제), 이월은 최대 4년 가능(반도체 분야는 최대 3년)

<표 III-12>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공제액

대상 분야		공제액	
전기차 등	EV·FCV	40만엔/대	
	경EV·PHEV	20만엔/대	
그린철강		2만엔/톤	
그린화학		5만엔/톤	
지속가능한 항공기 연료(SAF)		30엔/리터	
반도체	마이크로컨트롤러(MCU)	28~45nm	1.6만엔/매
		45~65nm	1.3만엔/매
		65~90nm	1.1만엔/매
		90nm 이상	7천엔/매
	아날로그(파워 반도체 등)	파워(Si)	6천엔/매
		파워(SiC, GaN)	2.9만엔/매
		이미지센서	1.8만엔/매
		기타	4천엔/매

주: 1. 반도체는 200mm 웨이퍼 환산 단위당 공제액 기준

2. 경쟁력 강화가 예상되는 시점부터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생산 개시일부터 8년째 75%, 9년째 50%, 10년째 25% 인하)

자료: 경제산업성, 「令和6年度(2024年度) 經濟産業關係 税制改正について」, 2024. 2., p. 4.

82) 일본 경제산업성, 「令和6年度(2024年度) 經濟産業關係 税制改正について」, 2023. 12.

83)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税制改正(案)のポイント」, 2024. 2., p. 6.

5)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촉진 세제^{84), 85)}

- 탄소 중립을 위한 투자 촉진 세제는 2021년 8월 2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과제하에 관련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을 적용하는 제도임
 - 중소기업자가 생산공정 효율화 등 설비의 취득 등을 할 경우 특별상각 및 세액공제를 지원함
- (지원 대상 및 자산) 청색신고법인으로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1조의 16 제1항에 규정된 인정 에너지 이용 환경 부하 저감 사업 적용 사업자인 법인을 대상으로 함
 - 지원 설비로는 탈탄소화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 생산공정 등 탈탄소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설비로 구분함

<표 III-13> 지원 대상 설비

구분	대상 설비
탈탄소화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기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 파워반도체 소자 또는 해당 소재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기판 ○ 전기자동차(EV)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용 리튬이온축전지 ○ 고정용 리튬이온축전지(충·방전 사이클 7,300회 이상을 충족) ○ 연료전지(발전효율 50% 이상 또는 종합효율 97% 이상 또는 연료가 순수소여야 함) ○ 해양풍력발전설비 주요 전용 부품(1기당 정격출력 9MW 이상 충족)의 주요 전용 부품(nacell, 발전기, 증 속기, 베어링, 타워, 기초)
생산공정 등 탈탄소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설비(기계장치, 기구 비품, 건물부속설비, 구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소 등 탄소배출량 1단위당 부가가치액 목표 향상 수치가 3년 이내 7% 또는 10% 이상 ○ 설비 도입을 통해 사업소 탄소 생산성(부가가치액/에너지 기원 CO₂ 배출량)이 1% 이상 향상되어야 함

자료: 전병목 외(2021), p. 95. 및 일본 경제산업성(2020)

- (지원 내용) 에너지 이용 및 환경 부하 저감 사업 적용 계획에 기재된 다음의 탄소 생산성 향상 비율 구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제공⁸⁶⁾

84) 일본 재무성, 2023, pp. 57~58.

85) 전병목 외, 2021, pp. 95~96.

86) 일본 경제산업성, 2020.

- (세액공제) 탈탄소화 효과가 큰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일괄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생산공정 등의 탈탄소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설비에 대해서는 기본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
 - 탄소생산성 향상도가 10% 이상인 경우 10% 적용
 - (특별상각) 생산공정효율화 등 설비의 취득가액 합계액이 500억엔 이하인 경우 생산공정효율화 등 설비 취득가액 × 50%
 - 생산공정효율화 등 설비 취득가액 합계액이 500억엔을 초과한 경우 500억엔 × (생산공정효율화 등 설비 등 취득가액 / 생산공정효율화 등 설비 취득가액 합계액) × 50%
 - 대상 자산인 생산공정효율화 등 설비 범위에 2024년부터 철도용 차량을 추가, 수요 개척 상품 생산 설비 및 생산공정효율화 등 설비 중 시장에 유통되는 조명 설비 및 공조설비를 제외
- 세액공제 한도 금액은 DX 투자촉진세제 세액공제액과 합산하여 당기 법인세액의 20%, 특별상각 한도액은 취득가액 합계액에 따라 다름⁸⁷⁾

3. 영국⁸⁸⁾

가. 개요

- 영국은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보다는 주로 자본적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공제하는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방식으로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자본공제법(The Capital Allowances Act)」에 근거하여 특별상각제도 및 초년도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설비투자에 대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음
 -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는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AIA), 표준공제(write-down allowance)를 적용

87)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925.htm>, 검색일자: 2024. 2. 19.

88) 김빛마로 외, 2018, pp. 85~94 및 김빛마로 외, 2019, pp. 43~45를 토대로 작성함

- 영국의 「자본공제법(Capital Allowances Act 2001)」은 자산그룹별로 공제를 분류하고 공제율을 차등 적용함⁸⁹⁾
 - 오직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일관된 자본공제를 적용
 - 동법에서 규정하는 적격 지출은 플랜트 및 기계류, 천연자원 채취 목적에 따라 발생한 지출, 연구개발 관련 지출, 미개발 지구 내 사업장 개조비용 등으로 분류되어 있음

〈표 III-14〉 영국의 자본공제제도

구분		대상자산 및 상각률
표준공제 (Write-down Allow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설비 및 기계: 18% ○ 건물 내장시설, 태양 전지판, 건물에 추가한 단열재, 장기 내용연수 설비 등: 6% ○ 그 외 자산군(capital asset pool)별로 6% 또는 18% 적용
특별 상각	초년도공제 (First-year Allowa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자산 등: 100%
	연간투자공제 (Annual Investment Allow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 및 기계설비: 100% ○ 연간 공제한도 존재: 100만파운드(2019년 이후 투자분)

자료: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 검색일자: 2024. 2. 19.

나. 조세지원제도

1)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⁹⁰⁾

- 초년도 공제의 경우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 장려를 목적으로 자산 구매 시 당해 100%를 세전 수익에서 즉시 상각해주는 제도를 말함
 - 연간투자공제 외 추가로 초년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투자공제 한도액에 가산되지 않음
 - 현재 영국의 법인세율은 기본 세율 25%(중소기업 19%)
 - 회사 수익이 50,000파운드 초과 250,000파운드 미만인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한계 구제(Marginal Relief)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89)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2/notes/division/2/1>, 검색일자: 2024. 2. 19.

90)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first-year-allowances>, 검색일자: 2024. 2. 20.

- 과세이익에 기본세율 25%를 곱한 값에 수익 상한액(250,000파운드)에서 과세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한계구제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납부
- 예: 과세이익이 150,000파운드인 경우 $(3/200) \times (250,000\text{파운드} - 150,000\text{파운드}) = 1,500\text{파운드}$
 $\text{과세이익}(150,000\text{파운드}) \times \text{법인세율}(25\%) = 37,500\text{파운드}$
 $37,500\text{파운드} - 1,500\text{파운드} = \text{법인세 납부액}(36,000\text{파운드})$

<표 III-15> 영국의 법인세율(현행)

구분	세율
소이익률(Small profits rate) (수익 50,000파운드 이하)	19%
기본 세율(Main rate) (수익 250,000파운드 초과)	25%
한계구제비율	3/200

자료: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

- (적용 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대상 지출은 전기차 및 CO₂ 배출량이 없는 자동차,⁹¹⁾ 친환경 플랜트 및 기계장비, 바이오 가스 및 수소 충전 장비, 친환경 물품 차량 등으로 구분하여 자산 구매 지출액의 100%를 공제

2) 연간투자공제(AIA)⁹²⁾

- 연간투자공제는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사업목적용 플랜트 및 기계·장치류를 대상으로 회사의 규모나 형태와 상관없이 법정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0%를 소득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다만 1인 단독 사업자는 업무 투입 비율에 한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08년 법인세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세제 간소화 목적으로 연간투자공제가 도입됨
 - 연간투자공제 도입 이전에는 중소기업 지출에 대해 40~50% 공제를 적용하였음

91)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153>, 검색일자: 2024. 2. 20.

92)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 검색일자: 2024. 2. 20.

- (적용 대상) 플랜트 및 기계류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품목, 수리를 제외한 건물 개조 등을 대상으로 함
 - 업무용 차량, 사업 목적 외 소유 품목, 사업체에 제공된 품목의 경우 연간투자 공제 청구가 불가함

- 연간투자공제 한도의 경우 2008년 5만파운드로 도입한 이후 정책적 목적에 따라 변동되어 왔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공제 한도는 100만파운드임

〈표 III-16〉 연간투자공제의 공제 한도 추이

(단위: 파운드)

개인 사업자	법인(Limited company)	공제한도
2008. 4. 6~2010. 4. 5	2008. 4. 1~2010. 3. 31	50,000
2010. 4. 6~2012. 4. 5	2010. 4. 1~2012. 3. 31	100,000
2012. 4. 6~2012. 12. 31	2012. 4. 1~2012. 12. 31	25,000
2013. 1. 1~2014. 4. 5	2013. 1. 1~2014. 3. 31	250,000
2014. 4. 6~2015. 12. 31	2014. 4. 1~2015. 12. 31	500,000
2016. 1. 1~2018. 12. 31	2016. 1. 1~2018. 12. 31	200,000
2019. 1. 1~	2019. 1. 1~	1,000,000

자료: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 검색일자: 2024. 2. 22.

3) 표준공제(Write-down Allowance)⁹³⁾

- 표준공제는 연간투자공제를 적용한 후 미상각 잔액에 대해 자산 품목별로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공제를 부여하는 제도임
 - 표준공제는 일반 투자에 대한 공제로서 자본공제법상 모든 자산그룹별 공제 항목에 적용이 가능함
 - 일반적인 사업용 유형자산인 설비 및 기계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18%이며, 투자의 특성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함
 - 건물 내장시설, 장기내용연수 자산, 건물에 추가한 단열재, 태양 전지판, 자동차 구입 시기에 따라 CO₂ 배출량이 일정 임계치를 초과할 경우 6%를 적용
 -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경우 당해 지출액의 100%를 소득공제

93) <https://www.gov.uk/work-out-capital-allowances/rates-and-pools>, 검색일자: 2024. 2. 22.

4. 캐나다⁹⁴⁾

가. 개요

- 캐나다는 Income Tax Act Part 1에서 소득세 감면 내용이 있으며, 이 중 subsection 127(5)에 근거하여 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음⁹⁵⁾
 - 투자세액공제는 크게 자산에 대한 투자와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지출로 구분
 - 투자: 적격자산, 적격자원자산
 - 비용지출: SE&RD에 관한 적격지출, 광물탐사비, 견습생을 위한 지출 등
- 또한 캐나다 재무부에서는 연방정부 조세지출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항목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투자와 관련된 항목은 천연자원, 연구개발, 환경, 가족 및 가정 등이 있음
 - 다음 소절에서는 2023년 연방정부 조세지출보고서상 지출 목록 중 본 심층평가 제도와 유사한 제도에 대해 기술함

나. 조세지원제도

1) 청정에너지 및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캐나다는 2022년 및 2023년 예산안을 통해 미국의 IRA 법안에 대응한 청정 기술의 개발 및 투자 지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신설 및 확대함
 -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청정기술제조투자세액공제, 청정수소투자세액공제 등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15%를 환급 가능(refundable tax credit)하도록 규정⁹⁶⁾

9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services/publications/federal-tax-expenditures/2023/part-3.html> 및 김빛마로 외, 2019, pp. 45~51.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95)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I-3.3/page-104.html#docCont>, 검색일자: 2024. 2. 22.

96) To support and accelerate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in Canada Budget 2023 proposes to introduce a 15 percent refundable tax credit for eligible investments in: ① Non-emitting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s, ② Abated natural gas-fired electricity generation, ③ Stationary electricity storage systems that do not use fossil fuels in operation, ④ Equipment for transmission of electricity between provinces and territories.(A Made-In-Canada Plan: Affordable Energy, Good Jobs, and a Growing Clean Economy, 2023. 3. 28, p. 79.)

가)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 청정 전기 생산을 위한 투자 지원 및 가속화를 목표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유틸리티, 원주민 공동체 등이 에너지 저장시스템, 송전장비 등에 투자한 자본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도입함⁹⁷⁾⁹⁸⁾
- (적용 대상 자산)
 - 풍력, 집중 태양광, 태양광 발전, 수력(대규모 포함), 파도, 조력, 원자력(대규모 및 소형 모듈식 원자로 포함)
 -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식 전기 저장 시스템 배터리, 펌핑 수력 발전 저장 장치 및 압축 공기 저장
 - 전기 전송을 위한 장비
- 다만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충족되지 못할 경우 공제율은 10%로 인하됨

나) 청정기술제조 투자 세액공제

- 청정 기술을 제조하고 중요 광물을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의 투자비용에 대해 30% 세액공제함
- (적용 대상 자산) 핵심 청정 기술을 제조하거나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 청정 기술 공급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 체인(예: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구리 등)
 - 재생 가능 또는 원자력 에너지 장비 제조
 - 핵연료 및 중수의 처리 또는 재활용
 - 전기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 친환경 차량 제조 등

다) 청정기술 제조업체 지원 및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투자 세액공제

- 캐나다는 2021년 예산안을 통해 무공해 청정 기술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 소득 세율을

97) <https://www.budget.canada.ca/2023/report-rapport/chap3-en.html>, 검색일자: 2024. 2. 20.

98) IBFD, 2023.

절반으로 인하함

-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4.5%, 기타 기업의 경우 7.5%가 적용
- 2029년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을 3년 연장해 2032년까지 세율 인하 혜택을 지속하기로 함

라) 청정수소투자 세액공제(클린수소투자 세액공제)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 가을 경제보고서(2022 Fall Economic Statement)를 통해 청정 수소 에너지 생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환급 가능한 투자 세액공제를 발표함
-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의 15~40%를 지원하며 노동 요건 충족 및 수소 운송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인센티브 혜택 자격이 부여됨⁹⁹⁾

<표 III-17> 청정수소생산을 위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구조

탄소집약도	세액공제율
0.75kg 미만	40%
0.75kg 초과 2.0kg 미만	25%
2.0kg 초과 4.0kg 미만	15%
4.0kg 초과	해당 없음

주: 프로젝트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예상 수명 주기 배출량을 반영한 수치임(생산된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600, 검색일자: 2024. 2. 20.

2) 기업 광물 탐사 및 개발 세액공제¹⁰⁰⁾

- 기업 광물 탐사 및 개발 세액공제 제도는 다이아몬드, 비금속, 귀금속, 정제를 통해 비금속이나 귀금속이 되는 산업용 광물의 채굴과 관련하여 탐사 및 생산 전 광산

99)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600, 검색일자: 2024. 2. 20.

100) <https://www.canada.ca/en/departement-finance/services/publications/federal-tax-expenditures/2023/part-4.html#Corporate-Mineral-Exploration-and-Develop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4. 2. 20.

개발을 위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지출과 관련하여 탐사 및 투자 비용의 4%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동 제도는 2003년 5%로 도입한 이후 2004년 7%, 2005년 10%의 세액공제 인상이 있었음
- 2012년 예산안을 통해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였으며, 탐사 지출의 경우 2013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5%로 인하되었으며, 2013년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을 폐지함
- 사전 제작 개발 지출의 경우 2014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2015년에 4%로 인하,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용을 폐지함

3)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투자세액공제^{101), 102)}

□ 캐나다 연방정부는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¹⁰³⁾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 지출과 연구 개발 자산에 대해 조세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연방정부 차원에서 SR&ED 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주정부에서도 지역별에 따라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함
- 동 조세지원 제도는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한 비용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있음

□ SR&ED 조세지원의 경우 손금산입(deduction)과 SR&ED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로 구분함

- SR&E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1944년 도입, 현재 세액공제 기본 구조는 1983~1985년에 마련됨
- SR&ED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1961년에 도입되었으나 2012년 예산안을 통해 폐지되어 2013년 이후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함

101)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services/publications/federal-tax-expenditures/2023/part-7.html#Scientific-Research-and-Experimental-Development-Investment-Tax-Credit>, 검색일자: 2024. 2. 21.

102) 김빛마로 외, 2018, pp. 73~77.

103) SR&ED에 대한 정의 및 포함된 활동은 Income Tax Act Subsection 248(1)에 규정됨

- 2012년 예산안에서는 일반 세액공제 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 기준에서 자본 지출을 제외함

- (적용 대상 및 자산) 적격 SR&ED를 하는 소규모 민간기업(CCPC), 일반법인, 개인과 신탁,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¹⁰⁴⁾
 - SR&ED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기초연구(Basic research)와 응용연구(Applied research): 구체적인 실행가능 이전에 과학적 지식의 진보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
 - 연구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의 재료, 제품, 장치, 공정 과정을 개선하고자 기술적으로 진보하기 위한 활동
 -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설계, 운영연구, 수학적 분석,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료수집 활동으로 캐나다에서 납세자가 직접 혹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수행한 활동을 포함
 - 단, 과학적·기술적 진전의 활동이 아닌 단순 조사, 연구와 구체적 실행이 가능한 단계의 활동은 제외함
 - SR&E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본적 지출은 SR&ED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 설비,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일정한 기준(전통법 또는 Traditional method)에 따라 판단함

- 연방정부의 SR&ED 투자세액공제는 일반 공제율 15%와 적격 CCPC에 대한 35%의 공제율이 적용됨
 - 과학 연구 및 실험개발 적격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적격지출에 임금, 자재, 간접비 등도 포함
 - 소규모 민간 기업의 경우 매년 첫 300만달러의 적격지출에 대해 3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 전년도 과세대상 자본금이 1,0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민간 기업의 경우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에 대해 첫 300만달러까지 100% 환급이 가능, 300만달러 초과하는 비용은 40% 환급 가능

104) 김빛마로 외, 2018, p. 76.

4) 가속상각제도

- 캐나다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¹⁰⁵⁾
 - 친환경에너지 생산설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액화천연가스 장치, 기계설비, 채굴장비, 선박 등 대상 자산별로 가속상각률에 차등을 두고 있음
 - 일반적인 기계 설비 투자에 대해 일반 상각률 30% 또는 일정 기간에 취득한 기계 설비는 50% 가속상각률을 적용함

5) 기타

- 이 외에도 2007년에 도입한 어린이 보육시설 관련 설비 투자 기업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대서양 캐나다(Atlantic Canada) 지역에서 취득한 시설에 대해 5% 또는 10%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일몰되거나 폐지된 제도도 있음

5. 대만¹⁰⁶⁾

가. 개요

- 대만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은 산업혁신법(Statute for Industrial Innovation, SII)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에 대만에 투자하는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 동 법령은 2010년 신설된 이후 2019년 말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5G통신 기술을 대상에 포함하여 2029년 말까지 10년 연장하였음
- 대만의 투자 인센티브는 세금 공제 및 비과세 공제가 있음¹⁰⁷⁾
 - 세금 공제의 경우 3가지 유형으로 구분

105) 이상엽 외, 2018, p. 49.

106) 김우철 외, 2008, pp. 66-69.

107) https://investtaiwan.nat.gov.tw/showPage?lang=eng&search=1031001&_gl=1*vcwfpd*_gcl_au*MTUzNTI4Nz M5Ny4xNzA5MDEwODM5, 검색일자: 2024. 2. 21.

- R&D 투자 세액 공제
 - 기술과 교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for stock obtained in exchange for technology) 세금은 취득 가격 또는 양도 가격(둘 중 더 낮은 가격)을 기준
 -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직원 보상(for stock-based employee compensation)의 경우 세금은 취득 가격 또는 이전 가격(둘 중 더 낮은 가격)을 기준
- 비과세 공제의 경우 주로 연구 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보조금과 첨단 기술에 공동 투자하는 외국 기업 및 대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음

나. 조세지원제도

1) 대만 반도체법(Chips Act)

- 2023년 1월 7일, 대만 입법원은 「산업혁신규정 개정안(產業創新條例修正草案)」을 발표하였고,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임¹⁰⁸⁾
- (지원 내용) 국내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R&D 투자액의 25%, 설비투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함
 - 미래 지향적인 혁신 R&D 지출을 위한 ITC: 당해 연도의 법인세에 대해 미래 예측 혁신 R&D 지출의 최대 25%를 공제
 - 첨단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구매를 위한 ITC: 당해 연도 법인세에 대해 장비 지출의 최대 5%를 공제

<표 III-18> 대만 산업혁신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관련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제10조 2항 (신설)	적용 대상	○ 대만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는 기업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산업 제한 없음)
	자격 요건	○ 일정 수준의 당해 연도 R&D 투자 비용 ○ 일정 수준의 당해 연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 ○ 일정 수준의 유효세율

108) 經濟部產業發展署, 「產業創新條例第十條之二, 第七十二條修正總說明」, <https://www.ida.gov.tw/ctrl?PRO=news.rwdNewsView&id=42164>, 검색일자: 2024. 2. 27.

<표 III-18>의 계속

관련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제10조 2항 (신설)	자격 요건	- 2023년에 12%, 2024년부터 15%의 유효세율 - 단, 2024년에는 국내 산업에 완충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12%로 조정 요청 예정
	제공 혜택	○ 당해 연도 미래 혁신 R&D 투자액의 25% 공제 ○ 당해 연도 첨단 공정용 설비 구입 투자액의 5% 공제 ○ 위의 두 가지 공제 세액은 기업의 당해 연도 영업소득세의 50% 초과 불가
제72조(개정)	시행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자료: 中華民國經濟部, 「立法院三讀通過產創條例第10條之2及第72條修正案」, 2023;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49098&mid=a20200000000&board_id=21, 검색일자: 2024. 2. 27.

2) 스마트 머신 및 5G 시스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¹⁰⁹⁾

- 동 제도는 「산업혁신규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직접 이용할 용도로 새로운 스마트 머신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5G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를 말함
- (적용 대상 요건 및 자산)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여 스마트 업그레이드 전환을 달성하고 다양한 혁신의 적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봄
 - 지난 3년 동안 환경 보호, 노동 또는 식품 안전 또는 위생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스마트 머신과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기술 서비스에 투자하거나 5세대 모바일 네트워크를 도입해야 함
- (지원 내용) 스마트 머신·5G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간 동안 100만NTD 이상 10억 NTD 미만을 투자한 기업은 당해 연도 영업소득세액을 지출액의 5% 한도로 공제 또는 3년에 걸쳐 지출금액의 3%씩 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하며, 공제액은 당해 연도 납부 영업소득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스마트 머신 및 5G 투자의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사이버 보안 제품 또는 서비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09) <https://taxsummaries.pwc.com/taiwan/corporate/tax-credits-and-incentives>

6. 중국

가. 개요

- 중국의 「기업 소득세법」 제4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즉시 상각 또는 가속 상각 등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세액공제의 경우 특정 목적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즉시 상각 또는 가속상각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저수익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형태임

나. 조세지원제도

1) 첨단기술산업(HNTE) 투자공제

- 첨단 신기술 기업(high-new technology enterprise, HNTE)의 경우 장비 또는 도구에 대한 투자 금액을 일회성으로 공제 가능하며, 해당 장비 또는 도구를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경우 100% 추가 공제도 가능함¹¹⁰⁾
 - 법인 설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생산 과정(또는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은 정부 주요 지원 대상인 신첨단기술 분야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이 외에도 과학기술직 종사자 비율이 전체 종사자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R&D 비용 비율 등의 일정 조건이 있음

2) 즉시 상각 또는 가속상각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2022년에 취득한 기계 및 장치가 50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 내용 연수에 따라 즉시 상각 또는 가속상각이 가능함¹¹¹⁾
 - (중소기업 요건) ① 정보통신업, 건축업, 임대업,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 중 연 매출액이 10억위안 이하이거나 자산총액 12억위안 이하, 직원 수 2,000명 이하인

110)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cn_s_1.&refresh=1711330673833%23cta_cn_s_1.9.4.5.4., 검색일자: 2024. 3. 25.

1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센터 조세동향팀,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2.

경우 ②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 20억위안 이하이거나 자산총액 1억위안 이하인 경우 ③ 위 ①과 ② 업종 외 종사하는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4억위안 이하이거나 직원 수가 1,000명 이하인 경우

- 기준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취득가액 즉시 상각이 가능하며, 그 외 내용 연수의 경우 취득가액의 50%를 첫째 가속상각 후 나머지는 내용 연수에 따라 정액법 및 정률법을 적용
- 또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5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함

□ (가속 감가상각)

- 2027년 12월 31일까지 500만위안 이하 신규 취득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의 경우
- 제조업 고정 자산의 경우 6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
- 중소기업 및 저수익 기업의 경우 다음의 특정 6개 업종에 한해 구입한 고정자산을 매입연도에 일괄적으로 100만위안 미만 한도로 공제 가능¹¹²⁾
 - 의약품 제조
 - 특수 장비 제조
 - 철도, 해운, 항공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
 -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 제품 제조
 - 계측 제조(instrumentation manufacturing)
 - 데이터 전송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 기술 서비스 등 R&D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3) 반도체 생산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지원¹¹³⁾

가) 개요

- 중국은 2020년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파운드리(foundry)¹¹⁴⁾ 업체를 위한 세금 감면 방안 등 부칙을 포함하여 총 9가지 정책¹¹⁵⁾을 발표함¹¹⁶⁾

11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cta_cn_s_1.11.4.%23cta_cn_s_1.9.4.6.1., 검색일자: 2024. 3. 25.

11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cn_s_1.7.%23gtha_cn_s_1.7., 검색일자: 2024. 6. 25.

114) 반도체 산업에서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 및 공급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를 지칭함

115) 재정 및 조세정책, 투자 및 자금조달정책, R&D 정책, 수출입 정책, 인재 정책, 지적재산권 정책,

- 2020년 8월 4일, 반도체 제조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國務院關於印發新時期促進集成電路產業和軟件產業高質量發展若干政策的的通知國發[2020] 8號)을 고시함¹¹⁷⁾
 - 2020년 12월 11일 기존 재무부 공고 중 집적회로 라인 폭 제조 단위를 0.8 μm 이하에서 28nm 이하 제조기업으로 일부 개정함
- 2021년 3월 직접회로 생산 설비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반도체 산업 세금우대 적용 요건을 구체화 함¹¹⁸⁾
 - (수입 관세 면제 대상)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시행
 - 직접회로 선폭 65nm 이하 논리 회로 및 메모리 제조업체, 선폭 0.25 μm 이하 특정 공정 집적회로 생산기업이 수입 자재 및 특수 건축 자재, 생산 설비 부품 등 중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원자재 및 부품을 수입한 경우
 - 집적회로 선폭이 0.5 μm 이하인 집적회로 생산기업과 첨단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자체용 생산성 원재료와 소모품을 수입한 경우
 - 집적회로 산업의 핵심 원재료 및 예비 부품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원재료와 소모품을 수입한 경우
 - 집적회로용 포토레지스트(光刻膠), 레티클(掩模版), 8인치 이상 웨이퍼 생산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클린룸 전용 건축재료, 관련 시스템 및 생산설비 부품을 수입한 경우
 - 중점집적회로 설계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생산기업이 자체용 수입 설비 또는 설비 수입에 따른 기술(소프트웨어 포함) 및 부품, 예비품을 수입한 경우
- 2023년 9월, 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회로 산업 및 산업용 공작 기계 산업의 연구개발 비용의 120% 세액공제를 5년 동안 확대함¹¹⁹⁾

시장 적용 정책, 극제협력방침, 부칙으로 구성됨

116) 중국 재무부,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0-08/04/content_5532370.htm, 검색일자: 2024. 6. 25.

117) 중국 재무부, https://www.gov.cn/xinwen/2020-08/04/content_5532393.htm, 검색일자: 2024. 6. 25.

118) 財政部 海關總署 稅務總局關於支持集成電路產業和軟件產業發展進口稅收政策的通知 財關稅 [2021] 4號,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3/29/content_5596564.htm

119) 중국 재무부 및 국가세무총국, 關於提高集成電路和工業母機企業研發費用加計扣除比例的公告,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9/content_6905802.htm

나) 지원 대상 및 내용

- 소프트웨어 기업 및 집적회로 기업을 위한 조세특혜정책 가이드라인(軟件企業和集成電路企業稅費优惠政策指引匯編)에 따르면 유형별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1) 집적회로 생산기업

- (지원 대상 요건) 집적회로 생산기업은 인력구성, 연구개발비 비중, 소득 비중, 지식재산권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국 내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 근로자 중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30% 이상, 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영업수익 총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2% 이상이어야 함
 - 총 수입에서 연간 집적회로 제조 판매 영업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 품질 인증(ISO 포함)을 받고 심각한 환경 위반이 없어야 함
- (지원 내용) 공정 수준 등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함
 -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서 선폭 28nm 또는 고도화한 공정을 적용한 집적회로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함
 -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선폭 28nm 초과 65nm 이하 공정을 적용한 집적회로 생산기업 또는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규 투자액이 150억위안 이상인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법정세율(25%)의 절반으로 과세함
 - 1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선폭 130nm 이하 공정을 적용한 집적회로 생산기업의 경우 최초 2년간 법인세를 면제, 이후 3년간 법정세율(25%)의 절반으로 과세함

(2) 집적회로 설계, 조립, 재료, 포장 관련 종사 기업

- (지원 대상 요건) 집적회로 설계, 조립, 재료, 포장 관련 종사 기업은 인력구성, 연구개발비 비중, 소득 비중, 지식재산권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국 내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우(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 영업수입 총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3%, 5% 또는 6%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영업수입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금액 대비 각 분야 관련 영업수입의 비중은 30% 또는 60% 이상이어야 함
- 각 분야별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보유 건수를 충족해야 함

□ (지원 내용) 법인세를 최초 2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법정세율(25%)의 절반인 12.5%의 세율로 과세함

(3) 중점 집적회로 생산 기업¹²⁰⁾

- (지원 대상 요건) 중점 집적회로 설계 분야의 영업수입 규모 및 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이 적용됨
 - 근로자 중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50% 이상,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은 40% 이상이어야 함
 - 영업수입 총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6% 이상이어야 함
 - 총수입 대비 집적회로 설계 영업수입 비중이 70% 이상, 자체 설계 영업수입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함
 - 각 분야별 핵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보유 건수를 충족해야 함
 - 집적회로 설계 영업수입 금액 및 과세소득 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집적회로 설계 영업수입이 5억위안 이상이고, 과세소득액이 3천만위안 이상인 경우
 - 집적회로 설계 영업수입이 50억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수입 총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8% 이상이어야 함
 - 중점집적회로 설계 분야에서 집적회로 설계 영업수입이 3천만위안 이상, 과세 소득이 350만위안 이상인 경우

□ (지원 내용) 법인세를 최초 5년간 면제하고 이후 10%의 세율로 과세함

120) 고성능 프로세서 및 FPGA칩, 메모리칩, 스마트센서, 산업·통신·자동차 및 보안칩, EDA, IP 및 디자인서비스 분야가 이에 해당함(중국 국가세무총국, 『重点集成电路设计领域和重点软件领域』)

(4) 소프트웨어 기업

- (지원 대상 요건) 인력구성 요건, 지식재산권 보유요건, 총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요건, 총매출 대비 소프트웨어 제품·정보기술 서비스 수입 비중 요건 등을 갖춘 기업을 의미
 -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관련 정보기술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독립적 법인
 - 근로자 중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40% 이상을 차지, 연구 개발 인력 비중이 25% 이상이어야 함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연간 연구개발비 총액이 해당 연도의 총 영업수입 대비 7% 이상이어야 함
 -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판매, 관련 정보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사업) 수입 비중이 전체 기업 소득의 55% 이상을 차지해야 함
 - 이 중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제품 및 관련 정보 기술서비스 수입 비중은 45% 이상이어야 함
 - 특허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야 함

- (지원 내용) 2년간 법인세 면제 후 3년간 12.5% 세율로 과세함

(5) 중점 소프트웨어 기업

- (지원 대상 요건)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 요건에 추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기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관련 정보기술서비스 수입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신기술 소프트웨어,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관련 정보기술서비스 수입이 1억원 이상, 과세소득금액이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 총 근로자 수 대비 연구개발 관련 인력이 30% 이상이어야 함
 - 연간 총 연구개발비용이 총 영업수입의 8% 이상이어야 함
 - 핵심 분야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경영 관리용 소프트웨어, 공용클라우드 서비스

및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

- 연간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관련 정보기술서비스 수입이 5억위안 이상, 과세소득금액이 2,500만위안 이상이어야 함
- 총 근로자 수 대비 연구개발 관련 인력이 30% 이상이어야 함

□ (지원 내용) 5년간 법인세 면제 후 이후 10% 세율로 과세함

<표 III-19> 반도체 생산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 내용

기업 또는 프로젝트 유형		법인세 면제 ²⁾	면제 후 세율 감면	최소 사업 운영 기간
직접회로 생산 기업 또는 프로젝트	선폭 28nm 이하	처음 10년	없음 (법정세율 25% 적용)	15년 이상
	선폭 65nm 이하	처음 5년	5년간 12.5%	15년 이상
	선폭 130nm 이하 ¹⁾	처음 2년	3년간 12.5%	10년 이상
직접회로 설계, 조립, 재료, 포장 관련 종사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처음 2년	3년간 12.5%	없음
중점 직접회로 설계 기업 및 소프트웨어 기업		처음 5년	10%	없음

주: 1) 결손금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이월 가능

2) 수익이 발생하는 첫 해부터 시작

자료: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gtha_cn_s_1.7.%23gtha_cn_s_1.7.

<표 III-20> 국가별 주요 투자 관련 지원제도 비교

구분		적용 자산	적용 대상 및 조건	공제율	비고	
미국	일반 자산 공제	특정 소규모 투자에 대한 비용공제 ○ 유형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일반 사업용 자산	○ 적용 대상 자산에 투자한 모든 납세자로 비용 처리 한도 존재	○ 연 10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 ○ 연간 투자금액이 250만달러 초과 시 비용처리한도 감소, 투자금액 350만달러 초과 시 비용처리 불가능		
	특정 자산 공제	CHIPS and Science Act	○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 적격투자액: 건물 재건축 비용 미포함, 특정 증축 비용만 포함 ○ 적격 제조시설: ① 상각 가능한 자산 ② 납세자가 취득, 건축 및 증축한 자산 ③ 반도체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 적격 투자액의 25%	○ 2027년 1월 1일 이전 착공이 시작되는 시설 중 2022년 12월 3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2022)	○ 친환경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를 대상으로 제도별 적용 조건을 충족한 설비 또는 시설	○ 비영리단체, 주 및 지방정부, 정부 기관, 원주민 부족 및 기업, 에너지 회사 관련 기술개발자 및 제조업체 대상	○ 12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상이 - 에너지자산투자세액공제,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6% 또는 30% -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세액공제,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세액공제, 청정 전기 생산세액공제: 0.3센트/kWh	○ 적정 임금 및 등록전습생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율의 5배 적용 ○ 청정수소세액공제의 경우 60일 이전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하면 해당 시설은 사용 가능한 세액공제의 5배를 적용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핵심광물분야를 제외하고 2030~2032년까지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예정

<표 III-20>의 계속

구분		적용 자산	적용 대상 및 조건	공제율	비고
미국	특정 자산 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 이산화탄소 종류에 따라 12달러 또는 17달러, 직접대기포집 시설의 경우 26달러 또는 36달러 - 청정수소생산세액공제: 적용 비율에 kg당 0.6달러 곱한 값을 공제, 적용 비율은 수명주기 온실가스에 따라 20~100% 적용 - 상업용차량세액공제: 차량 구매가의 15%(비내연기관 차량은 30%)와 비교 가능한 내연기관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구매 가격 차액 중 더 작은 금액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각 단위당 0.0025달러~45달러, 핵심 광물은 생산비용의 10% - 청정연료생산세액공제: 갤런당 0.20달러 또는 0.35달러에 이산화탄소배출계수를 곱한 값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철강 및 제조 제품에 대한 미국산 제품 비율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p 증가,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에도 최대 10%p 증가 ○ 과세대상 기업의 경우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 선택 가능(신청 기간 5년) ○ 양도의 경우에는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만 제외
	첨단 석탄 설비 및 특정 석탄 가스화 설비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석탄 설비 및 특정 석탄 가스화 설비에 대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유형에 따라 요건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유형에 따라 15%,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석탄 설비 투자세액공제와 특정 석탄 가스화 설비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

<표 III-20>의 계속

구분		적용 자산	적용 대상 및 조건	공제율	비고	
미국	특정 자산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자산, 첨단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 제조 목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관련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 투자액의 25% 		
일본	일반 자산 공제	<p>중소기업 경영개선설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및 장비, 도구, 기구 및 비품, 건축 보조 장비 및 생산 설비 등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 등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색신고 법인인면서 관리능력향상계획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7% (법인세액 20% 한도) ○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경영강화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경영능력향상 계획에 규정된 자산은 제외 ○ 세액공제의 경우 자본금 3,000만엔 이하 특정 중소기업의 경우 취득가액의 10% 세액 공제 ○ 특별상각과 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 초과 한도 금액의 경우 1년간 이월 공제 가능
		<p>중소기업 기계 취득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후 사업용으로 제공된 적 없는 신제품으로 지정 기간 내 취득 또는 제작하여 지정 사업용으로 제공한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전기업, 물 산업, 오락산업(영화업은 포함), 성 산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대상으로 대상 설비의 취득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취득가액의 7% (법인세액 20% 한도) ○ (특별상각) 취득가액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3,000만엔 초과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상각만 있고 세액공제는 없음

<표 III-20>의 계속

구분		적용 자산	적용 대상 및 조건	공제율	비고	
일본	특정 자산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DX 투자촉진세제 소프트웨어, 이연자산, 적용 요건을 갖춘 기계장치 및 기구 비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 사업적용계획 요건을 충족하고 디지털 및 기업변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세율 3%, 타 데이터 연계 설비투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비투자 금액) 국내 매출액의 0.1% 이상 (설비투자총액상한) 1개사당 300억엔 (공제 한도금액) 대상설비 취득가액 합계액이 500억엔 이하인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와 합산하여 당기 법인세액 20% 한도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EV·FCV·PHEV)·이차전지, 그린철강, 그린화학, 지속가능한 항공기 연료(SAF),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지정한 5개 전략분야의 생산 및 판매량 비례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간 법인세의 최대 40% 공제 반도체 분야 최대 20% 공제 		
영국	일반 자산 공제	연간투자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운반구 제외한 사업목적용 플랜트 및 기계장치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 규모나 형태 상관없이 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액의 100% 공제(단, 공제 한도는 2019년 이후 100만 파운드) 	
	표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설비 및 기계, 건물 내장시설, 태양 전지판, 건물에 추가한 단열재, 장기 내용연수 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공제법상 모든 자산그룹별 공제 항목에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율 18% 투자 특성에 따라 6% 또는 10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경우 당해 지출액의 100% 공제 	

<표 III-20>의 계속

구분		적용 자산	적용 대상 및 조건	공제율	비고	
영국	특정 자산 공제	초년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차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없는 자동차, 친환경 플랜트 및 기계 장비, 바이오 가스 및 수소 충전 장비, 친환경 물품 차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을 영위하는 법 적형태와 관계없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100% 세전 수익에서 공제 	
캐나다	일반 자산 공제	가속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기계 설비,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액화천연가스장치, 채굴장비, 선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기간별 상각률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상각률 30%, 가속상각률 50% 	
	특정 자산 공제	청정전기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풍력, 집중 태양광, 수력, 파도, 원자력, 전기 전송을 위한 장비,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고정식 전기 저장 시스템 배터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및 지자체 유틸리티, 원주민 공동체 등이 에너지 저장시스템, 송전장비 등에 투자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한 자본비용의 15% 세액공제 	
	특정 자산 공제	청정기술제조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정기술공급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 체인, 재생 가능 또는 원자력 에너지 장비 제조, 전기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친환경 차량 제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 청정 기술을 제조하거나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새로운 기계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액의 30% 세액공제 	

<표 III-20>의 계속

구분		적용 자산	적용 대상 및 조건	공제율	비고
대만	일반 자산 공제	감가상각 ○ 일반 기계 설비자산 및 장비	○ 일반적인 설비 관련 감가상각은 1종~3종으로 구분	○ 내용연수 2년 미만 기계설비 및 소액자산: 취득연도 전액 손금 계상	
	특정 자산 공제	대만 반도체법 ○ 첨단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및 미래 예측 혁신 R&D 관련 투자	○ 국내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는 기업 대상	○ R&D 투자액의 25%, 설비 투자액의 5%	○ 2023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예정

주: 각 국가별 자산공제제도 중 일부 제도만 추려서 기술함
 자료: 제III장 해외사례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21> 국가별 현금지급 관련 주요 내용 비교

구분	미국	프랑스	캐나다
근거 법 또는 예산안	IRA 2022	녹색산업 법안	2022년 가을 경제 보고서
적용 대상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를 대상으로 제도별 적용 조건을 충족한 설비 또는 시설 ○ 비영리단체, 주 및 지방정부, 정부 기관, 원주민 부족 및 기업, 에너지 회사 관련 기술개발자 및 제조업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부터 에너지 부문의 투자 지출 (풍력 터빈, 배터리, 태양 전지판 및 히트 펌프 등) ○ (전기차 구매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수소투자세액공제(클린수소투자세액공제)) 청정수소에너지 생산에 투자한 경우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항목별로 공제율과 한도가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자산투자세액공제,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6% 또는 30% - 재생에너지전기 생산세액공제,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세액공제, 청정전기 생산세액공제: 0.3센트/kWh -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 이산화탄소 종류에 따라 12달러 또는 17달러, 직접대기포집시설의 경우 26달러 또는 36달러 - 청정수소생산세액공제: 적용비율에 kg당 0.6달러 곱한 값을 공제, 적용비율은 수명주기 온실가스에 따라 20~100% 적용 - 상업용차량세액공제: 차량 구매가의 15%(비내연기관 차량은 30%)와 비교 가능한 내연기관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구매가격 차액 중 더 작은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산업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액의 20~45% ·(전기차 구매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비용이 47,000유로 이하: 친환경 보조금 4,000유로 지원 - 연소득이 15,400유로 이하인 경우 3,000유로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집약도에 따라 15~4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5kg 미만: 40% - 0.75kg 초과 2.0kg 미만: 25% - 2.0kg 초과 4.0kg 미만: 15% - 4.0kg 초과: 해당 없음

<표 III-21>의 계속

구분	미국	프랑스	캐나다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각 단위당 0.0025달러~45달러, 핵심광물은 생산비용의 10% - 청정연료생산세액공제: 갤런당 0.20달러 또는 0.35달러에 이산화탄소배출계수를 곱한 값을 공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임금 및 등록견습생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율의 5배 적용 ○ 청정수소세액공제의 경우 60일 이전에 생산시설 공사를 시작하면 해당 시설은 사용 가능한 세액 공제의 5배를 적용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핵심광물분야를 제외하고 2030~2032년까지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예정 ○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철강 및 제조 제품에 대한 미국산 제품 비율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p 증가,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한 시설의 경우에도 최대 10%p 증가 ○ 과세대상 기업의 경우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직접 지급 선택 가능(신청기간 5년) ○ 양도의 경우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및 열 재생에너지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구매 가격(세금포함)의 27% 한도 내에서 지급 	

자료: 제III장 해외사례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IV. 타당성 평가



IV. 타당성 평가

1. 개요

- 이번 장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해 분석함
 - 타당성의 평가기준은 정부 역할의 적정성 및 제도설계·운영의 적정성으로 구분됨

- 먼저, 정부 역할의 적정성에 관련하여 정부개입의 타당성 및 정책수단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평가함
 - 구체적으로, 정부개입의 타당성은 사업용 자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영역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함
 - 정책수단의 적절성은 해당 자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제적 근거를 고찰함
 -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충분한 효과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함

- 다음으로, 제도설계·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해 정책목표의 적절성, 정책대상의 적절성, 제도 운영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 중복성 관점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평가함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의 적절성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이 전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의미있고 적절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함
 - 정책대상의 적절성은 사업용 자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영역의 경제 활동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함
 - 외부효과 창출을 통한 효율성의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필요성과 함께 국가 전체의 성장기반 확대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함
 - 제도운영의 적절성은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적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조세지원의 대상,

방식 및 수준의 조정 등과 같은 제도운영상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타 제도와 중복성은 사업용 자산의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적용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과 별도로 정부가 조세지원 및 예산지원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다른 지원제도를 고려해서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및 그 적절성에 대해 분석함

- 이와 같은 타당성 분석은 사업용 자산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관련 제도 등의 분석과 함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기로 함

- 즉, 문헌분석을 통해 제도적 측면의 정책적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자들의 인식 정도와 함께 제도 설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

2. 정부 역할의 적절성

가. 정부개입의 적절성

- 정부의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4조에서 규정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목적은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임

- 사업용 자산의 기업투자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설비자산의 확충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장기적인 총공급의 증가) 정책목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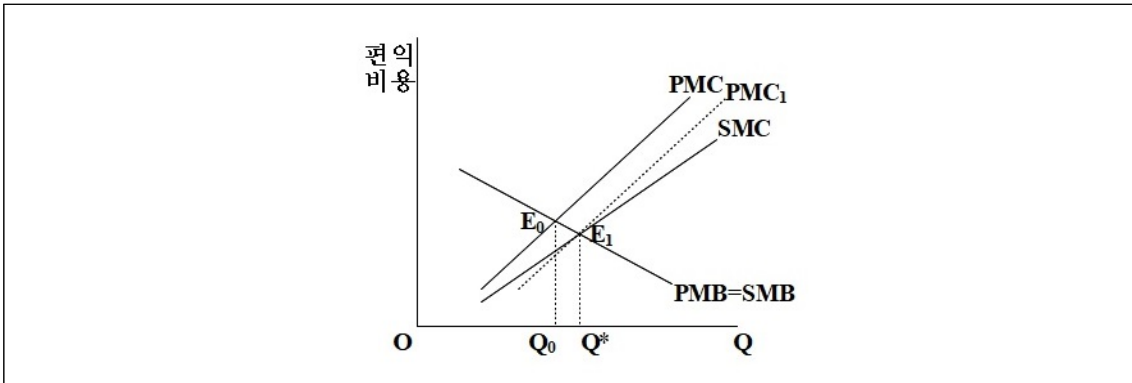
- 기업투자 활성화는 설비자산의 취득·운영을 통한 생산·고용의 유발과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직접적 효과와 함께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¹²¹⁾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있음

121)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종전의 인적·물적 자본과 구분해서 “사회구성원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조건 또는 특성”이나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조정 과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조직의 특성”으로 정의된다.

-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은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를 바탕으로 도출됨
 -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는 설비자산의 취득·운영을 통한 생산·고용의 유발과 함께 세수를 증대시키는 기본적 성과와 함께 설비자산의 확충 및 혁신적 기술의 발전에 의한 경제적 활력의 제고 등의 부가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민간의 시장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의 투자수준에 더해 추가적인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것은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기업투자의 과정에서 외부경제가 유발되어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그 비용부담자인 투자기업의 사적 한계편익(PMB)보다 더 커지게 됨($PMB < SMB$)
 - 외부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의 생산자인 투자기업의 사적인 한계편익(PMB)과 사적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PMB = PMC$) 수준까지만 기업투자가 이루어지게 됨
 - 이와 같은 투자수준에서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SMC)보다 큰 $SMB > SMC$ 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는 사회적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잔존한다는 것을 의미함

- [그림 IV-1]에서 이러한 효과의 생산자인 사업용 자산의 투자기업이 외부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PMB = PMC$)사적 투자의 수준은 Q_0 인데, 이것은 외부경제까지 고려하였을 때 결정되는($SMB = SMC$) 사회적 최적 투자 규모인 Q^* 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업투자의 수준을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Q_0 \rightarrow Q^*$) 사업용 자산의 투자기업들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사적 한계비용을 감소시켜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도록($PMC \rightarrow PMC_1$, 균형점은 $E_0 \rightarrow E_1$) 유도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임

[그림 IV-1] 외부경제를 고려한 적정 기업투자 수준



자료: 저자 작성.

- 따라서, 이와 같이 기업투자 과정에서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의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한 정부개입의 적절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음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 앞선 절의 분석을 통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기업들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원 대신 조세지원이 타당한 것인지에 여부에 대한 추가적 분석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류덕현과 박기백(2012)이¹²²⁾ 정리한 <표 IV-1>의 기준을 적용해서 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중 어떤 방식이 더욱 타당한지 분석함

<표 IV-1>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간의 선택기준

구분	재정지출	조세지출
수혜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 - 취약계층 중심인 경우 - 수혜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 특정 수혜자만 혜택을 주고 싶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 - 일반 계층 중심(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는 없는지 판단) - 시장이 존재하여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필요한 경우 -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다수 지원 목적)

122) 류덕현·박기백, 「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표 IV-1>의 계속

구분	재정지출	조세지출
보조대상	- 보조대상이 다양하여 보조수준이 달라야 하는 경우 -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필수 비용인 경우 등)	-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적 용이 가능한 경우 -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저축, 건강 보험 등)
보조수준	- 보조수준이 높은 경우 -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 보조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
지원기간	- 일시적, 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지속여부 불투명한 사업 등)	-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예측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지원시점	- 초기, 사전적 지원에 적합	-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
행정집행	- 집행점검, 결과확인 등이 필요하여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에 순응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적은 경우	- 재정지출 시 관여기관, 인원, 선정 절차 등이 매우 어려울 경우 - 적합한 대상자 선정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집행부서와의 밀착성으로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경우
부작용 가능성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지원한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사후적으로 수혜가 아닌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

자료: 류덕현·박기백(2012)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사이의 정책수단 선택기준에 대한 <표 IV-1>의 적용기준에 의거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먼저 수혜자의 측면에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수혜자들(투자기업)의 일련의 경제활동에서 명시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고, 지원대상으로 별도의 취약 기업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
 - 보조대상 및 보조수준의 측면에서 투자기업들이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공통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경제활동으로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투자기업에 대하여 더욱 큰 조세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지원기간 및 지원시점의 측면에서, 투자기업 및 투자대상 자산의 요건을 만족

할 경우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중장기적 지원의 성격과 함께 지원 대상이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행정집행의 측면에서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출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의 활성화와 관련한 기업 내 개별적 사정의 파악이 매우 어렵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부정사용 가능성이 큰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부작용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후적 검증을 통해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낮고, 일반적인 재정지원과 다르게 세법 규정을 통해 지원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출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이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조세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재정지원의 제공과 비교하여 정책수단의 적절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현실적으로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지만 성장·혁신지향적 경영활동의 유인 제공, 핵심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및 경쟁 국가들과의 조세혜택 격차의 축소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들 지원과 별도로 조세지원을 시행하는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에 의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함
 -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와 고용 증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기업투자 활성화의 지원은 전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목표로 평가할 수 있음

- 이것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을 대다수의 비교대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음
 - 먼저, 미국은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의 투자세액공제와¹²³⁾ 함께 전략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반도체 및 과학법(CHIPS¹²⁴⁾ and Science Act)과¹²⁵⁾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의¹²⁶⁾ 별도의 세액공제로 시행함
 - 다음으로, 영국은 자본공제법(The Capital Allowances Act)에 따라 설비투자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하는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¹²⁷⁾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¹²⁸⁾ 및 표준공제(write-down allowance)를¹²⁹⁾ 시행함
 - 다음으로, 캐나다는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을¹³⁰⁾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자산 및 지출에 대해 조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SR&ED에 대한 손금산입(deduction)과 세액공제를¹³¹⁾ 시행함

123) 구체적으로, IRC section 46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특정시설 관련 투자세액공제는 ① 건물재건비용 세액공제(rehabilitation credit) ② 에너지 투자세액공제(energy credit) ③ 첨단 석탄설비 투자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coal project credit) 및 특정 석탄가스화 설비투자 세액공제(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 ④ 첨단 에너지 설비투자 세액공제(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⑤ 첨단 제조 투자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⑥ 청정 전기 투자 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이다.

124) The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125)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 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CHIPS and Science Act Section 48D).

126)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보급, 취약계층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보호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IRA 2022를 제정했는데, 동법률은 에너지 비용 감소, 청정에너지경제 구축 및 환경오염 감소 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였다.

127) 사업자의 법적 형태와 관계없이 전기차, CO₂ 무배출 자동차, 친환경 플랜트·기계장비, 바이오 가스·수소 충전 장비 및 친환경 물품 차량 등에 대해 자본적 지출액의 100%를 소득공제한다.

128) 차량운반구를 제외한 사업용 플랜트 및 기계장치를 대상으로 사업의 규모 및 형태와 상관없이 법정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0%를 소득공제한다.

129) 연간투자공제를 적용한 후의 미상각잔액에 대해 자본공제법상 모든 자산그룹의 품목별로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해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하는데, 일반적 사업용 자산인 설비 및 기계장치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18%이고,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자본적 지출의 공제율은 100%이다.

130) SR&ED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연구개발로 구분하는데, 기초연구(basic research) 및 응용연구(applied research)는 구체적 실행 가능 이전에 과학적 지식의 진보를 위해 수행되는 활동이고, 연구개발(experimental development)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의 재료, 제품, 장치 및 공정 과정을 개선하고자 기술적으로 진보하기 위한 활동이다.

131) SR&ED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본적 지출은 SR&ED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부동산, 설비 및 기계장치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일정한 기준(traditional method)에 따라 판단한다. 연방 정부의 SR&ED 투자세액공제는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적격지출에 대한 15%의 일반 공제율과 전년도 자본금이 1,000만달러 이하인 적격 소규모 민간기업(CCPC)의 매년 300만달러의 적격지출에 대한 35%의 공제율로 구분한다.

- 또한, 대만은 국내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R&D 투자액의 25%(미래 지향적인 혁신 R&D 지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액의 5%(첨단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구매를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직접 이용할 용도로 새로운 스마트머신에 투자하거나 5G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스마트머신 및 5G 시스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대만 산업 혁신규정』 제10조)

나. 정책대상의 적절성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일부 배제업종·지역·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무형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표 IV-2>와 같이 이를 다시 일반자산 및 신성장사업화·국가전략기술 사업화자산으로 구분해서 지원수준을 차등화한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공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 대상의 설정은 기업투자 활성화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구체적 사례로,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공급업의 업종과 함께 중고품 및 운용리스한 자산을 동 제도의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들 자산이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강화에 공헌하는 생산적 설비투자와 비교적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동 제도는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임대·공급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표 IV-3>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투자하는(중고품 및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금융리스 외의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 경우에는 <표 IV-2>의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

<표 IV-2>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금액

① 기본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기본공제율

기본공제율 ¹³²⁾	2021년 ¹³³⁾ ·2022년			2023년·2024년(예정)		
	일반	중견	중소	일반	중견	중소
기업규모						
일반적 자산	1%	3%	10%	3%	7%	12%
신성장 사업화시설 ¹³⁴⁾	3%	5%	12%	6%	10%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¹³⁵⁾	6%	8%	16%	15%	15%	25%

② 추가공제 금액 = 해당 과세연도 초과 투자금액¹³⁶⁾×추가공제율

추가공제율	2021년·2022년	2023년·2024년(예정)
일반적 자산·신성장 사업화시설	3%	1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4%	10% ¹³⁷⁾

132) 기본공제율이 우대되는 세액공제를 공제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공제대상 투자시설이 ①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②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33) 2021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종전에 시행된 10개의 개별 투자세액공제 중에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한다.

134)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

- ①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별표 7)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②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 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135)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이고(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021년 7월 이후의 투자분이 대상자산이다.

136)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137) 정부는 2023년에 “투자 활성화 및 세제추진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추가공제율을 아래와 같이 1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한(이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후에 2024년에는 2022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시 인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24.1.8.에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2023년에 적용한 높은 기본·추가공제율(임시투자세액공제)을 <표 IV-2>와 같이 2024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해 「조특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금액(당초 계획)>

기본공제율	2022년			2023년			2024년(당초 예정)		
	일반	중견	중소	일반	중견	중소	일반	중견	중소
기업규모									
일반적 자산	1%	3%	10%	3%	7%	12%	1%	5%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3%	5%	12%	6%	10%	18%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6%	8%	16%	15%	15%	25%	15%	15%	25%

추가공제율	2022년	2023년	2024년(예정)
일반적 자산·신성장 사업화시설	3%	10%	3%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4%	10%	4%

<표 IV-3>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¹³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자산
(1)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시행규칙 별표 1)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 ① 연구시험 ② 직업훈련 ③ 에너지 절약 ④ 환경보전 또는 ⑤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① 특허권 ② 실용신안권 ③ 디자인권에 해당하는 자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 ¹³⁹⁾	

□ <표 IV-2>와 같이 일반적인 세액공제에 비해 높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 세액공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됨으로써 정책대상이 “사후적으로” 제한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최저한세의 적용배제·완화를 통해 동(同) 세액공제의 불충분한 효과성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그러나,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논리상 감면이 필요한 부분”(김학수, 2018)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동(同) 세액공제의 조세지원 규모가 과도한¹⁴⁰⁾ 현실적인 조세수입 측면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이를 조세제도의 개편에 반영하기는 어려움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가들과 비교해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

138) <표 IV-2>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산의 구체적 항목은 아래와 같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구분〉	
구분	항목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신성장 사업화시설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일반적 자산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139)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것에 한정한다.

140) 2022년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적(2조 1,997억원)은 개별 조세지출 항목들 중 7번째로 큰 것이고, 이들 중 7,853개 법인의 세액공제 실적(2조 1,187억원)은 법인세의 전체 세액공제액(13조 4,662억원) 중에서 15.7%를 차지한다.

자산의 범위 및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큰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최저 한세의 적용배제·완화를 통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나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다. 제도운영의 적절성

□ 「조특법」상 제한(기간감면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¹⁴¹⁾ 국가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경우의 제한,¹⁴²⁾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는 경우의 제한¹⁴³⁾ 및 세액공제 상호 간의 중복적용 배제¹⁴⁴⁾ 및 사후관리의¹⁴⁵⁾ 범위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 141) 동일한 과세연도에 각종 기간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또는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의 규정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142) 내국인이 「조특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투자금액(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국가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제한〉

구분	차감할 금액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 중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 등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국가 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국가 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 143)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고용증대기업 기본세액공제 포함)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또한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주식(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 144) 내국인이 「조특법」에 따라 ①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② 동일한 과세연도에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제19조①)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4)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145)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건물·건축물은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처분(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이자상당가산액 = 공제받은 세액×기간×0.022%으로 계산하고, “기간”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익일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일수이다.

대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즉, 동 제도를 통한 사업용 자산의 세후 투자금액 인하와 이를 통한 위험부담 완화는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직접적인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구체적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하 “환급·양도 방안”)이^{146), 147)} 제21·22대 국회에서 발의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방안은 조세지원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가능성에도¹⁴⁸⁾ 불구하고 세법상 조세지원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먼저, 환급·양도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세지출의 증가로 인해 조세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공제율을¹⁴⁹⁾

146) 의안번호 2122393(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자: 2023.5.31.), 의안번호 2201457(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발의일자: 2024. 7. 8.3)

147) 구체적으로 「조특법」에 아래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액 환급·양도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2(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2) 및 나목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때에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신청
2.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거나 양도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8) 환급·양도방안의 대표적 편익은 세액공제 방식에 비해 투자 이후의 조세혜택이 조기에 실현되어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에 장기간에 걸리는 기업들은 세액공제 방식에서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제액을 장기간 이연하거나 조세혜택을 최종적으로 얻지 못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본조달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149)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해 광범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사례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일본을 제외하면 드물고,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고려하면 동(同) 방안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음

- 즉, 현행 통합세액공제는 조세혜택의 환급·양도 대신 이월공제만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절세효과가 <표 IV-2>의 공제율에 비해 낮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공제율을 비교적 높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환급·양도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상 배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을 크게 감소시키는 과도한 조세지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환급·양도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 IV-2>의 현행 공제율을 “적절하게” 인하해야 하지만, 개별 기업의 장기적 사업 전망과 함께 이월공제를 통한 장래의 전체 조세혜택과 환급·양도를 통한 현재의 일부 조세혜택 간의 주관적 선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해당 적정 공제율을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고, 동(同) 공제율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상하지 않은 경제적 왜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위험도 있는 것임

□ 특히, 제3자 양도방안은 조세혜택에 대한 시장을 형성해서 사업용 자산의 투자와 무관한 기업들에게 세액공제가 이전됨으로써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당초 취지인 기업투자의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조세지원이 제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즉,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조세혜택을 불완전하게 얻는 반면 이를 취득한 기업들은 기업투자 활성화에 대한 추가적 공헌 없이 당초 투자기업에 대한 환급방안과 같이 이러한 조세혜택을 사실상 완전하게 얻게 되는데, 이로 인해 조세지원의 시행 취지와 무관하게 조세수입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임
- 또한, 이러한 조세혜택의 양도가 제3자 간에 경쟁시장의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신 특수관계인 기업들 간의 영향력에 따라 시장가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음성적인 이익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양도방안의 구체적 설계와 함께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법령의 세부적 정비에 매우 큰 행정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임

가속상각 또는 소득공제가 보다 일반적이다. 단, 일본의 중소기업은 대다수 업종에서 자본금 3억엔 이하 등과 같이 엄격한 조건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범위가 협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행 과세체계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경제적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¹⁵⁰⁾
- 주요 국가들의 사례에서도 환급·양도방안은 일부 국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정부 기관 및 비영리법인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공제세액의 직접 환급(elective pay 또는 direct-pay)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를 내국세입법(IRC)에서 일부 적격법인에 제한적으로 허용함¹⁵¹⁾
 - 여기서 적격법인은 비영리단체, 주 또는 지방정부, 정부 기관, 원주민 부족 또는 기업, 에너지 회사 관련 기술개발자 및 제조업체임¹⁵²⁾
 - 구체적으로, 이들 적격법인에 대해 <표 IV-4>의 환급가능한 12개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일반 과세대상 기업에 대한 환급은 이들 중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 및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연번 3·5·7)에 대해서만 5년의 신청기간 내에 허용함
 - 세액공제의 양도는 이들 중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연번 6)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허용함

150) 환급·양도방안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불완전한 효과성은 해당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유리한 대출조건의 적용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장기적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장래의 이익과 이월공제를 통해 얻는 동(同) 세액공제의 조세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리한 대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환급·양도방안과 동일하게 기업의 장래 조세혜택을 현재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개별 기업의 특성 및 대외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출조건을 결정함에 따라 일률적인 공제율의 세액공제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선별적 자금공급을 통해 금융부문의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IRA에서 제한적인 제3자 양도방안(transferability)을 허용하기 전에 미사용 세액공제액을 현금화하는 Tax Equity Financing(TEF)을 통해 환경 관련 투자를 위한 초기자본을 모집한 미국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1) IRA Section 13801(Elective Payment for Energy Property and Electricity Produced from Certain Renewable Resources, etc.), IRC Section 6417(Elective Payment of Applicable Credits) 및 Section 6418(Transfer of Certain Credits)

152) tax-exempt organizations; states; political subdivisions; the Tennessee Valley Authority; Indian Tribal governments; Alaska Native Corporations; and rural electricity co-ops.

<표 IV-4> 환급가능한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IRC)

연번	항목	IRC Section
1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Alternative fuel vehicle refueling property credit)	30C
2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for electricity from renewables)	45
3	탄소산화물 격리 세액공제(Credit for carbon oxide sequestration)	45Q
4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 세액공제(Zero-emission nuclear power production credit)	45U
5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Clean hydrogen production tax credit)	45V
6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Credit for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45W
7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45X
8	청정전기 생산 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45Y
9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Clean fuel production credit)	45Z
10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for energy property)	48
11	대체에너지 투자 세액공제(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48C
12	청정전기 투자 세액공제(Clean electricity investment tax credit)	48E

□ 캐나다는 청정수소 에너지 생산을 위해 노동 요건 및 수소운송 요건 등과 같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의 투자금액에 대해 <표 IV-5>와 같이 탄소집약도에 따른 15~40%의 공제율의 환급가능한 클린수소 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해서 매우 제한적인 환급방안을 채택하고 있음¹⁵³⁾

○ 이상과 같이 도입 시의 편익 및 비용과 함께 주요 국가들의 시행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방안을 평가해야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매우 제한적 분야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 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동(同) 방안을 채택해서 반대급부의 의무 부과 없이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적 지원에 해당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153) 프랑스는 미국의 IRA 발효 이후에 유럽산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발의한 프랑스 녹색산업 법안에서 2024년부터 에너지 부문(풍력 터빈, 배터리, 태양 전지판 및 히트 펌프)의 투자 지출에 대한 20~4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환경 규제와의 연계를 통해 유럽 제조업체를 우대하는 한편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승용차의 취득가액 및 연소등을 고려해서 3,000~7,000유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동(同) 세액공제와 보조금은 별개의 대상에 대해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절의 환급·양도방안과는 무관한 것이다.

〈표 IV-5〉 클린수소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탄소집약도	공제율
0.75kg 이하	40%
0.75kg-2kg	25%
2kg-4kg	15%
4kg 초과	없음

주: “탄소집약도”는 프로젝트의 탄소집약도를 기준으로 예상수명주기 배출량을 반영한 수치임(생산된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환산량).

라. 여타 제도와의 중복성

- 일반적인 사업용 자산의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첨단 기술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일부 확인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¹⁵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컴퓨팅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¹⁵⁵⁾ 및 기술보증기금의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¹⁵⁶⁾ 등이 이와 같은 재정지원 사업에 해당함
- 그러나, 이들 재정지원은 산업적 중요성이 큰 제한적 분야에 대해 매우 선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과도한 중복지원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세지원 내에서는 전술한 「조특법」상 제한(기간감면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 국가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경우의 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는 경우의 제한 및 세액공제 상호 간의 중복적용 배제) 및 사후관리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154)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따라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에 대해 223억원의 예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155)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지능화·융합 SW기술 확보를 통한 SW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빅데이터 핵심기술, 응용기반SW 핵심기술 및 컴퓨팅 핵심기술의 지원대상에 대해 제공하는 2024년 제2차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예산지원 규모는 117억원이다.

156) 기술보증기금은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 견인에 앞장서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5대 분야(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 통신, 자동차 및 바이오)의 14대 산업을 영위하는 “초격차 미래전략” 관련 기업들에 대해 보증지원 산정한도 확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율 감면 등의 우대조치와 함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는데, 동(同) 프로그램의 2022년 12월까지의 지원실적은 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12.19.자 기술보증기금 보도자료(『기보,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지원하여 복합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우대지원 ‘AC-DC 프로그램’ 통해 3,800억원 지원』)에서 인용하였다).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소결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먼저, 정부 역할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출되는 외부경제에 대한 조세지원 제공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부개입의 적절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음
 -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재정지원과 조세지원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수혜자의 특성, 보조대상 및 수준, 행정비용 및 부작용의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조세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강화와 고용 증대를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인 기업투자 활성화의 지원은 전체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목표로 평가할 수 있고, 이것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을 대다수의 비교대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통해 뒷받침할 수 있음
 -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일부 배제업종·지역·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다시 일반자산 및 신성장사업화·국가전략 기술사업화자산으로 구분해서 지원수준을 차등화한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공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대상의 설정은 기업투자 활성화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조특법」상 제한 및 사후관리의 범위에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투자액의 일정 비율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규정한 것은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방안은 조세지원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조세지원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즉, 도입 시의 편익 및 비용과 함께 주요 국가들의 시행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방안을 평가해야 하는데, 일부 국가에서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매우 제한적 분야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경제적 환경이 상이한 우리나라에 동(同) 방안을 채택해서 반대급부의 의무 부과 없이 사실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정책적 지원에 해당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등과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일부 확 인할 수 있지만, 이들 재정지원은 산업적 중요성이 큰 제한적 분야에 대해 매우 선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과도한 중복지원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세지원 내에서도 「조특법」상 제한 및 사후관리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V. 효과성 평가



V. 효과성 평가

- 본 장에서는 동 제도가 기업의 투자 증진 및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두 가지의 각각 독립적으로 구축된 미시자료를 이용해 실증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 국세청 협조를 통해 수득한 기업의 미시납세자료를 활용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을 수행
 - 2021 신고연도에 동 제도가 처음으로 기업의 납세자료에 반영되었으나 가용 국세청 미시자료의 최신 신고연도가 2022년으로 데이터의 기간이 짧은 한계가 있음
 - 데이터 기간 동안 기업들이 동 제도와 기존 특정시설대상 투자세액공제 사이에서 선택하여 혜택을 수혜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요
 - 또한, 데이터 기간 동안 동 제도의 이용내역이 자산의 종류, 기본/추가공제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되어 보관되지 않아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함
 - 미시자료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제 이용현황 및 유인에 대한 이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을 수행함

1. 미시납세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

- 본 소절에서는 미시납세자료를 활용하여 동 조세특례가 정책목표인 ‘기업의 투자 증진’을 달성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는지 살펴보고자 함
 - 분석을 위해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구축한 기업들의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함
 - 먼저 동 제도의 활용이 기업의 투자증진으로 이어졌는지 분석함
 - 또한 동 제도의 활용이 투자의 증진 등을 통해 수익성 등 기업의 실제 경영성과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봄

가. 분석자료 및 이용현황

- 효과성 분석 및 제도 이용내역 현황 분석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기업의 미시납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 추출 방식 및 자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자료 제공기간은 신고연도 기준 2015~2022년이며, 각 연도별로 두 가지 그룹의 기업을 추출함
 - 사용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데이터 기간인 2021, 2022 신고연도 중 한 번이라도 동 제도의 이용을 신고한 기업 전수인 9,030개사(社)
 - 미사용기업: 2021, 2022 신고연도 중 한 번도 동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들 중 무작위추출된 13,102개사(社)
 - 데이터는 패널자료 형태로, 위의 두 그룹 모두 한 번 추출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데이터 기간인 신고연도 2015~2022년에 대해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를 전부 제공받음
 - 예를 들어 2022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한 기업 A의 경우 해당 기업의 2015~2022년에 대한 자료를 전부 추출하여 제공받음
 -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한 기록이 없는 기업 B의 경우에도 ‘미사용기업’으로 무작위 추출되었다면 해당 기업의 2015~2022년 모두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음
 - 해당 기업에 대해 납세자료와 재무자료, 기타 재무적 특성을 제공받았으며, 세부적인 변수는 다음의 내역을 포함함
 -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용내역 및 동 제도로 통합되기 전 기업들이 이용하였던 기존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이용내역
 - 수입금액, 당기순손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기타 법인세 납세관련자료
 - 자산·자본총계 등 재무관련 정보와 업태, 지역 등 기업의 기타 특성
- 다만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에 유의하여 결과 및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2년 신고연도까지 일반자산에 대한 투자와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데이터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함
 - 『국세통계연보』상에도 역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공제율이 서로 다른 이러한 자산의 분류에 따라 이용내역이 어떻게 다른지는 보고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전략에 대해서는 ‘효과성평가 전략 및 결과’ 소절에서 서술함
 - 2021년과 2022년 신고연도는 기존 제도가 완전히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되지 않은 시기로, 동 연도의 기업의 행태는 제도의 완전한 전환 이후의 행태와 다른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함
 - 동 신고연도에 해당하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기업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따라서 데이터 기간 중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한 기업들은 기존 제도보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기업들만이 선택된 표본(selected sample)임
 - 반면, 실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처치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는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업까지 포함하여 파악해야 함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제 이용기업의 이용현황을 보완하고, 동 제도의 이용유인 및 기업이 과거 제도와 비교하여 느끼는 차이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국세통계연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용 기업 수는 『국세통계연보』상 보고된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용기업 수와 일치하여, 실제 제도 이용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함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에 기재된 세액공제감면액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금액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계연보』는 최저한세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업이 최종적으로 수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제도별 세액공제 감면액에는 『국세통계연보』와 차이가 존재함
- 2015~2022년 신고연도에 해당하는 기업 단위 미시납세자료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출하였으며, 연도별 자료 수는 <표 V-1>을 통해 제시함

- 사용기업은 2021, 2022 신고연도 중 동 제도를 이용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른 데이터 기간으로 갈수록 관측치가 빠르게 하락함
 - 최근 설립된 기업 등의 영향과 더불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 중 상당수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수혜하기 힘든 업종에 분포했을 가능성이 있음
 - <표 V-1>은 사용기업과 미사용기업 간 평균적 업력을 비교하여 제공하며, 실제로 사용기업 중 상당수는 업력이 짧아 이것이 연도별 관측치의 경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임
 - 업종별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보기 힘들었는지 여부의 영향은 표 <표 V-2>에서 제공하고 있음
- 미사용기업은 2015~2020 신고연도 국세청이 보유한 기록 중 무작위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기간 중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관측치를 보임

<표 V-1>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 연도별 관측치

(단위: 개)

연도	전체 기업	사용기업	미사용기업
2015	4,151	1,017	3,134
2016	4,842	1,200	3,642
2017	5,466	1,441	4,025
2018	5,838	1,592	4,246
2019	6,503	2,088	4,415
2020	7,019	2,459	4,560
2021	8,733	4,981	3,752
2022	11,318	7,894	3,424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

- 동 제도의 사용 여부에 따른 주업종 구분 결과는 <표 V-2> 및 <표 V-3>에 제시되어 있음
 - 동 제도의 도입 전후로 투자 관련 세액공제의 활용도가 다른 대표적인 산업으로 도매 및 상품 중개업(산업분류코드 G46)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본 제도 도입 전후로 발생한 이러한 업종별 기업 분포의 차이는 기존 특정시설 대상 투자세액공제보다 본 제도의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가 넓어진 경향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특성은 다음 절에서 효과성 분석에 활용됨
- 원납세자료는 국세청 지정 업체자료와 업종코드로 업종을 구분하고 있었으며,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 및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공식 연계표를 이용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변환하여 결과를 제공함

<표 V-2> 동 제도 사용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 %)

제도 사용기업			
업종코드	관측치	비율	업종명
G46	749	8.2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C29	740	8.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5	651	7.1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2	608	6.66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30	563	6.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0	556	6.0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6	550	6.03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10	547	5.99	식료품 제조업
C24	329	3.61	1차 금속 제조업
F42	322	3.53	전문직별 공사업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 위 관측치는 기업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업 한 곳의 관측치는 1로 계산하였음.

<표 V-3> 동 제도 미사용기업의 업종별 분포

(단위: 개, %)

제도 미사용기업			
업종코드	관측치	비율	업종명
H49	1,246	9.22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D35	1,182	8.7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C29	1,049	7.7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885	6.5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5	869	6.43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G46	787	5.82	도매 및 상품 중개업
C26	715	5.29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2	615	4.5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10	613	4.53	식료품 제조업
C20	529	3.9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 위 관측치는 기업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업 한 곳의 관측치는 1로 계산하였음.

□ 지역별 관측치를 살펴보면 제도의 사용기업과 미사용기업 모두 경기·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지역별 분포가 제도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제도의 사용기업과 미사용기업 간 수도권지역 소재 법인의 비중을 비교

<표 V-4> 동 제도 사용기업 및 미사용기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제도 사용기업			제도 미사용기업		
지역	관측치	비율	지역	관측치	비율
경기	3,635	39.48	경기	4,261	30.94
서울	728	7.91	서울	1,372	9.96
경남	676	7.34	경남	1,133	8.23
경북	547	5.94	경북	935	6.79
충남	528	5.73	전남	788	5.72
인천	516	5.60	충남	721	5.23
충북	410	4.45	부산	682	4.95
부산	406	4.41	인천	624	4.53
전남	321	3.49	충북	619	4.49
대구	249	2.70	대구	503	3.65
광주	221	2.40	광주	421	3.06
강원	179	1.94	전북	285	2.07
전북	104	1.13	강원	256	1.86
제주	62	0.67	제주	113	0.82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 위 관측치는 기업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업 한 곳의 관측치는 1로 계산하였음.

□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총자산, 총자본 등에 대한 기초통계를 통해서도 사용기업의 규모가 미사용기업보다 유의미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5> 연도별 수입금액 기초통계

(단위: 억원, 개)

수입금액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192.9	8,048.8	55,398.3	5,031
2016	167.2	7,663.2	54,483.5	5,849
2017	165.7	6,172.0	44,687.4	6,656
2018	150.4	6,421.6	51,054.8	7,015
2019	177.4	5,739.0	50,029.5	7,990
2020	178.5	5,216.0	47,269.7	8,764
2021	123.2	3,677.7	45,658.3	9,998
2022	102.8	2,363.8	24,562.0	12,336
Total	147.4	5,168.9	45,620.5	63,639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708.4	18,819.0	98,644.9	1,445
2016	598.5	15,905.1	88,981.3	1,732
2017	548.3	13,536.3	75,850.7	2,078
2018	567.3	14,530.7	85,468.8	2,301
2019	550.5	11,782.1	79,490.1	2,978
2020	490.5	10,168.8	72,056.7	3,637
2021	195.8	4,511.9	55,850.3	5,845
2022	128.6	2,402.6	27,758.6	8,484
Total	286.3	8,250.2	64,834.7	28,500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114.1	3,708.9	17,914.0	3,586
2016	96.6	4,195.8	29,105.9	4,117
2017	79.6	2,829.3	16,031.2	4,578
2018	65.8	2,463.4	16,325.9	4,714
2019	68.7	2,148.3	14,211.4	5,012
2020	60.2	1,702.6	10,348.9	5,127
2021	51.7	2,503.8	25,032.8	4,153
2022	57.3	2,278.4	15,330.6	3,852
Total	69.7	2,669.7	18,601.6	35,13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6> 연도별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기초통계

(단위: 억원, 개)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6.9	512.4	5,626.1	5,031
2016	6.3	569.1	5,950.6	5,849
2017	6.4	433.6	3,834.9	6,656
2018	8.5	5,115.8	84,801.3	7,015
2019	5.7	506.6	8,993.5	7,990
2020	6.0	286.5	4,193.3	8,764
2021	4.0	235.7	4,015.7	9,998
2022	4.0	169.5	3,156.0	12,336
Total	5.3	875.0	28,622.1	63,639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33.9	1,403.9	10,188.3	1,445
2016	35.0	1,207.3	8,263.5	1,732
2017	33.7	1,024.3	6,527.0	2,078
2018	88.9	14,002.7	147,437.3	2,301
2019	26.5	1,201.5	14,671.0	2,978
2020	25.6	604.5	6,468.9	3,637
2021	8.5	326.7	5,165.9	5,845
2022	5.2	180.5	3,676.7	8,484
Total	14.9	1,673.2	42,635.1	28,500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3.5	153.1	1,464.3	3,586
2016	3.2	300.6	4,620.6	4,117
2017	2.8	165.4	1,349.2	4,578
2018	3.1	777.9	6,044.3	4,714
2019	2.2	93.6	785.7	5,012
2020	1.9	60.9	504.7	5,127
2021	1.7	107.8	1,112.3	4,153
2022	2.1	145.4	1,457.6	3,852
Total	2.4	227.7	2,900.5	35,13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7> 연도별 과세표준 기초통계

(단위: 억원, 개)

과세표준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10.9	850.7	9,522.6	5,031
2016	9.1	752.8	6,324.8	5,849
2017	8.9	574.4	4,656.4	6,656
2018	7.4	784.7	11,029.8	7,015
2019	8.9	703.2	12,219.4	7,990
2020	8.9	405.4	5,471.5	8,764
2021	5.7	297.1	5,080.2	9,998
2022	4.9	204.9	4,074.8	12,336
Total	7.3	513.5	7,530.9	63,639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54.7	2,196.1	17,449.6	1,445
2016	53.8	1,666.8	10,645.5	1,732
2017	48.6	1,328.9	7,861.8	2,078
2018	42.0	1,962.7	19,037.0	2,301
2019	40.9	1,654.3	19,932.8	2,978
2020	38.9	830.0	8,438.6	3,637
2021	11.8	431.7	6,605.1	5,845
2022	6.8	238.5	4,864.9	8,484
Total	20.3	906.3	11,095.3	28,500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5.0	308.5	1,887.2	3,586
2016	4.3	368.3	2,945.6	4,117
2017	3.7	231.9	1,761.5	4,578
2018	2.9	209.7	1,784.6	4,714
2019	3.0	138.1	1,072.1	5,012
2020	2.6	104.1	669.9	5,127
2021	2.1	107.8	819.7	4,153
2022	2.5	131.1	1,021.3	3,852
Total	3.1	195.0	1,625.5	35,13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8> 연도별 산출세액 기초통계

(단위: 억원, 개)

산출세액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2.0	185.9	2,094.7	5,031
2016	1.6	164.2	1,390.9	5,849
2017	1.6	124.3	1,021.8	6,656
2018	1.3	170.4	2,425.3	7,015
2019	1.6	168.2	3,049.4	7,990
2020	1.6	96.1	1,363.0	8,764
2021	1.0	70.6	1,266.2	9,998
2022	0.8	48.0	1,015.6	12,336
Total	1.3	116.3	1,777.5	63,639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10.7	481.1	3,838.6	1,445
2016	10.6	364.6	2,341.5	1,732
2017	9.6	288.8	1,726.2	2,078
2018	8.2	428.0	4,187.0	2,301
2019	7.9	400.0	4,976.4	2,978
2020	7.6	198.7	2,103.1	3,637
2021	2.2	103.4	1,646.7	5,845
2022	1.2	56.2	1,213.0	8,484
Total	3.9	207.3	2,622.9	28,500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0.8	66.9	414.7	3,586
2016	0.7	80.0	647.2	4,117
2017	0.5	49.7	384.7	4,578
2018	0.4	44.7	387.8	4,714
2019	0.4	30.5	248.5	5,012
2020	0.3	23.4	160.2	5,127
2021	0.2	24.5	198.9	4,153
2022	0.3	29.9	248.9	3,852
Total	0.4	42.6	361.2	35,13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9> 연도별 총자산 기초통계

(단위: 억원, 개)

총자산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166.0	20,657.2	178,442.5	5,031
2016	146.5	19,655.2	183,476.9	5,849
2017	147.9	15,947.3	171,360.6	6,656
2018	231.4	79,959.5	741,670.4	7,015
2019	166.8	9,518.8	95,726.6	7,990
2020	176.4	8,681.5	90,904.5	8,764
2021	114.9	6,729.1	88,893.3	9,998
2022	99.9	4,723.4	76,963.1	12,336
Total	138.2	18,286.4	272,937.9	63,639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720.6	27,725.1	154,650.7	1,445
2016	640.7	23,127.8	147,364.4	1,732
2017	588.1	21,127.4	137,893.4	2,078
2018	1,912.2	166,393.1	1,127,126.9	2,301
2019	575.8	17,300.5	133,964.1	2,978
2020	559.2	14,784.0	122,460.5	3,637
2021	189.0	7,309.2	91,483.4	5,845
2022	115.4	4,266.1	72,176.3	8,484
Total	304.1	24,252.1	339,625.4	28,500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95.9	17,808.4	187,123.7	3,586
2016	86.6	18,194.2	196,695.9	4,117
2017	81.7	13,596.0	184,525.9	4,578
2018	96.7	37,769.5	439,578.7	4,714
2019	75.5	4,895.1	62,371.9	5,012
2020	71.5	4,352.4	58,687.4	5,127
2021	66.2	5,912.7	85,119.3	4,153
2022	70.4	5,730.8	86,579.3	3,852
Total	79.3	13,448.1	203,260.7	35,13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0> 연도별 총자본 기초통계

(단위: 억원, 개)

수입금액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67.9	6,695.3	53,659.8	5,031
2016	62.1	6,796.9	55,081.0	5,849
2017	62.2	5,464.8	47,010.5	6,656
2018	91.1	44,866.7	492,219.8	7,015
2019	69.1	4,825.8	50,693.1	7,990
2020	79.4	4,911.1	54,058.0	8,764
2021	49.2	3,620.4	51,242.3	9,998
2022	44.9	2,165.4	43,104.7	12,336
Total	59.9	8,942.7	170,600.1	63,639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412.4	15,712.0	95,670.9	1,445
2016	335.2	13,518.3	90,009.8	1,732
2017	333.4	12,125.5	79,452.3	2,078
2018	977.1	111,301.6	840,178.2	2,301
2019	326.8	9,885.1	80,394.2	2,978
2020	306.4	9,191.0	81,189.8	3,637
2021	90.2	4,390.8	62,768.0	5,845
2022	56.6	2,091.2	49,695.6	8,484
Total	147.3	15,219.1	249,567.3	28,500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34.0	3,061.0	17,509.1	3,586
2016	30.7	3,969.2	29,603.2	4,117
2017	27.3	2,441.4	17,872.4	4,578
2018	32.3	12,438.5	113,461.3	4,714
2019	26.8	1,819.7	15,263.6	5,012
2020	24.8	1,874.9	17,255.3	5,127
2021	20.8	2,536.4	27,840.6	4,153
2022	21.7	2,328.6	22,608.5	3,852
Total	26.7	3,852.4	46,244.0	35,13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11> 연도별 업력 기초통계

(단위: 년, 개)

업력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16	20.8	15.1	5,031
2016	17	20.6	15.5	5,849
2017	17	20.5	15.6	6,656
2018	17	20.4	19.7	7,015
2019	18	20.6	15.2	7,990
2020	18	20.5	15.2	8,764
2021	16	18.8	14.4	9,998
2022	15	17.8	13.5	12,336
Total	16	19.8	15.4	63,639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20	24.2	15.4	1,445
2016	21	24.6	15.8	1,732
2017	20	24.4	15.7	2,078
2018	20	24.4	15.8	2,301
2019	21	24.2	15.1	2,978
2020	21	24.1	15.2	3,637
2021	18	20.0	14.4	5,845
2022	15	18.0	13.1	8,484
Total	19	21.5	14.8	28,500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15	19.5	14.7	3,586
2016	15	18.9	15.0	4,117
2017	15	18.8	15.2	4,578
2018	14	18.4	21.0	4,714
2019	15	18.5	14.9	5,012
2020	14	17.9	14.7	5,127
2021	13	17.2	14.3	4,153
2022	12	17.4	14.4	3,852
Total	14	18.3	15.8	35,139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액 평균은 1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기업의 숫자와 평균 이용금액이 데이터가 존재하는 2개 신고연도 동안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의 평균금액은 5천만원, 일반기업의 평균금액은 7억 4천만원으로 나타남
 - 국세청 미시자료는 기업이 기재한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최저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제도의 최종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국세통계연보 등 기타 통계수치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고려할 필요

<표 V-12>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액 기초통계

(단위: 백만원, 개)

수입금액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21	12.9	92.9	654.4	3,976
2022	12.4	199.2	8,945.4	7,853
Total	12.6	163.5	7,298.5	11,829
중소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21	10.4	51.4	145.8	3,316
2022	9.3	50.1	178.8	6,590
Total	9.6	50.5	168.5	9,906
일반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21	39.3	301.7	1,556.9	660
2022	48.3	976.9	22,293.3	1,263
Total	43.0	745.2	18,090.4	1,923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기업투자에 대한 효과성 평가

- (분석 목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의해 기업의 관련 투자행위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 (분석 모형) 추정 모형은 김빛마로 외(2023) 등을 참조하여 이중차분법 분석(difference-in-differences)을 활용

- (분석 전략)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산업별로 적용 가능한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달랐기 때문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은 기업이 속한 주된 산업에 따라 차등적인 공제율의 향상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함
 -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많이 사용해 온 산업의 경우 제도의 전환으로 인한 공제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김빛마로 외, 2023)
 - 데이터 기간인 2021~2022 신고연도 중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에 10%의 기본공제율을, 중견기업에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함
 -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일부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함
 - 투자 대상 자산의 대부분 혹은 상당부분이 이러한 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실질적 공제율 향상 효과가 크지 않음
 - 반면,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제도의 전환이 유의미한 실질적인 공제율 차이로 이어짐
 - <표 II-5>와 같이 다음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10%의 공제율과 중견기업에 5%의 공제율을 적용했음
 - 환경 보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또한 <표 II-5>와 같이 다음 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7%의 공제율과 중견기업에 3%의 공제율을 적용했음
 -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표 V-12>는 국세청 미시자료에서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수혜 상위산업을 연도별로 제공하여 기존 제도의 수혜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도에 따라 상위 산업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님을 보임
 - <표 V-12>는 데이터에 소재한 각 산업 소속 기업의 총 과세표준에 대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된 <표 II-1>상의 제도 수혜금액의 합이 큰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 상술된 바와 같이 환경 보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주 수혜 산업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산업분류코드 E38) 등이 상위에 자주 나타남을 볼 수 있음

□ 본고는 이와 같이 산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이 실질적으로 산업마다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함:

$$y_{it} = \alpha + \beta X_{it} + \delta_{high} I_{it}^{high} + \delta_{post} I_{it}^{post} + \gamma I_{it}^{high} \times I_{it}^{post} + \epsilon_{it}$$

○ 각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y_{it} : 결과변수로, 본 절에서는 기업 i 의 t 년도의 투자를 의미함
- X_{it} : 통제변수로 이용되는 기업 i 의 t 년도의 특성들을 의미함
- I_{it}^{high} : 기업 i 가 t 년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으로 인해 실질적 투자세액 공제율이 크게 변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 (indicator variable)로, 참일 경우 1의 값을, 아닐 경우 0의 값을 지님
- I_{it}^{post} : 기업 i 의 t 년도 관측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에 해당하는 2021, 2022 신고연도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로, 참일 경우 1의 값을, 아닐 경우 0의 값을 지님

○ 기업의 투자는 전년도 대비 총자산의 상승률을 이용함

- 극단값이 분석의 결과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율변수(전년도 대비 총자산의 상승률)는 양 극단 1%를 제거(trim)하고 분석에 이용함

○ 기타 통제변수로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들은 업력, 기업규모,¹⁵⁷⁾ 중소/일반기업 여부, 소속 지역을 이용함

<표 V-13>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사용자 상위 산업

2015년		
순위	산업코드	산업명
1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	H50	수상 운송업
3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J61	우편 및 통신업
5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57) 전년도 자산규모의 값을 이용

<표 V-13>의 계속

2016년		
순위	산업코드	산업명
1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	M70	연구개발업
3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	H50	수상 운송업
5	B06	금속 광업
2017년		
순위	산업코드	산업명
1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	H50	수상 운송업
3	B06	금속 광업
4	A02	임업
5	L68	부동산업
2018년		
순위	산업코드	산업명
1	M70	연구개발업
2	E36	수도업
3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19년		
순위	산업코드	산업명
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H50	수상 운송업
3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4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5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020년		
순위	산업코드	산업명
1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	H50	수상 운송업
3	J61	우편 및 통신업
4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	B06	금속 광업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14>는 동 제도의 도입 이후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실질적 투자세액공제율이 크게 높아진 산업에서 총자산 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음을 보임

○ 고정효과 등 모형의 설정에 따라 다르나, 약 7.1~7.8%p 더 높은 성장률을 보임

<표 V-14>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효과(2015~2022년)

	(1)	(2)	(3)	(4)
$I_{it}^{high} \times I_{it}^{post}$	0.073*** (0.014)	0.078*** (0.014)	0.071*** (0.014)	0.076*** (0.014)
I_{it}^{high}	-0.062*** (0.008)	-0.069*** (0.008)	-0.056*** (0.007)	-0.063*** (0.007)
I_{it}^{post}	0.062*** (0.007)	0.059*** (0.007)	0.062*** (0.006)	0.059*** (0.006)
업력	-0.001*** (0.000)	-0.002*** (0.000)	-0.001*** (0.000)	-0.002*** (0.000)
$\log(asset_{t-1})$	0.003 (0.001)	0.000 (0.001)	0.003* (0.001)	0.001 (0.001)
표본수	29,328	29,328	31,086	31,086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위와 같은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에서 파생된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동 제도는 일반자산에 대한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의 세 분류에 따라 크게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제도의 효과 역시 상이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위에서 추정된 제도의 효과는 서로 다른 세 공제율의 효과가 혼재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투자분 기준 기본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 일반자산: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일반기업 1%
- 신성장·원천기술: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5%, 일반기업 3%
-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16%, 중견기업 8%, 일반기업 6%

- 하지만, 본고에서 이용한 국세청 미시자료는 기업의 동 제도 사용내역을 자산의 분류에 따라 분리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본고는 직접적으로 상이한 공제율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함¹⁵⁸⁾
- 자산의 종류에 따른 상이한 공제율의 영향을 분리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효과를 추정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역시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세 분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제도의 경우 국세청에서 기업의 제도 이용내역을 기술분류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산업 단위에서 어떤 산업이 상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많이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식별에 이용함
 -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공제를 집중적으로 받은 산업에 속한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이용했다면 이러한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봄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산업의 기업들이 기타 분류의 기업들보다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는지 분석함
 - ‘상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산업에 속한 모든 기업들 중 각 기술분류의 공제를 사용한 기업 수의 비율이 산업들의 중간값보다 큰 경우를 이용하여 정의함¹⁵⁹⁾
- <표 V-15>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함
 - 분석 방법 및 사용한 회귀식은 <표 V-13>을 위해 사용한 방법과 유사함

$$y = \alpha + \beta X_{it} + \delta_{new} I_{it}^{new} + \delta_{post} I_{it}^{post} + \gamma I_{it}^{new} \times I_{it}^{post} + \epsilon_{it}$$

158) 국세청 측에서 신고연도 '23년부터 동 제도 신청서식 및 데이터의 보관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였다는 답변을 주었으나, 본 원고의 작성 시점이 데이터의 완성시점보다 이르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진들은 새로운 데이터가 제공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확인하지 못함

159) 동 데이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빛마로 외(20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참조.

○ 각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y_{it} : 결과변수로, 본 절에서는 기업 i 의 t 년도의 투자를 의미함
- X_{it} : 통제변수로 이용되는 기업 i 의 t 년도의 특성들을 의미함
- I_{it}^{new} : 기업 i 가 t 년도에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혜한 정도가 모든 산업의 중간값 이상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로, 참일 경우 1의 값을, 아닐 경우 0의 값을 지님
- I_{it}^{post} : 기업 i 의 t 년도 관측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에 해당하는 2021, 2022 신고연도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로, 참일 경우 1의 값을, 아닐 경우 0의 값을 지님

○ 기업의 투자는 전년도 대비 총자산의 상승률을 이용함

- 극단값이 분석의 결과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율변수(전년도 대비 총자산의 상승률)는 양 극단 1%를 제거(trim)하고 분석에 이용함

○ 기타 통제변수로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들은 업력, 기업규모¹⁶⁰⁾, 중소기업 여부, 소속 지역을 이용함

○ 단, <표 V-14>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표본을 2015~2022 신고연도에 대하여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1회 이상 수혜한 중분류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

- 이와 같이 표본을 조정하는 것은 처치군과 통제군이 조금 더 동질적인 기업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표 V-14>는 동 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 동 제도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들에서 총자산의 성장률이 3.3~3.4%p 더 높았던 것을 보임

160) 전년도 자산규모의 값을 이용

<표 V-15>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효과(2015~2022년)

	(1)	(2)	(3)	(4)
$I_{it}^{new} \times I_{it}^{post}$	0.034* (0.014)	0.033* (0.014)	0.034* (0.014)	0.033* (0.014)
I_{it}^{new}	-0.010 (0.010)	-0.010 (0.010)	-0.005 (0.009)	-0.004 (0.009)
I_{it}^{post}	0.097*** (0.012)	0.098*** (0.012)	0.096*** (0.011)	0.097*** (0.011)
업력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log(asset_{t-1})$	0.007*** (0.002)	0.006*** (0.002)	0.008*** (0.002)	0.006*** (0.002)
표본수	23,517	23,517	24,780	24,780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위 방법과 동일하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할 수 있으나, 현재는 축적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분석이 어려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7월 이후 투자분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2022 신고연도까지의 정보만이 포함된 현재 데이터를 이용하기에는 제도 도입 이후 기간이 너무 짧음
 -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용기업의 숫자가 작기 때문에, 동 정보에 근거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수혜기업을 추정하는 본고의 방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표 V-16>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함
 - 분석 방법 및 사용한 회귀식은 <표 V-14>를 위해 사용한 방법과 유사함

$$y = \alpha + \beta X_{it} + \delta_{strat} I_{it}^{strat} + \delta_{post} I_{it}^{post} + \gamma I_{it}^{strat} \times I_{it}^{post} + \epsilon_{it}$$

□ 각 변수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y_{it} : 결과변수로, 본 절에서는 기업 i 의 t 년도의 투자를 의미함
 - X_{it} : 통제변수로 이용되는 기업 i 의 t 년도의 특성들을 의미함
 - I_{it}^{strat} : 기업 i 가 t 년도에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혜한 정도가 모든 산업의 중간값 이상인지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로, 참일 경우 1의 값을, 아닐 경우 0의 값을 지님
 - I_{it}^{post} : 기업 i 의 t 년도 관측치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에 해당하는 2022 신고연도에 속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로, 참일 경우 1의 값을, 아닐 경우 0의 값을 지님
- 기업의 투자는 전년도 대비 총자산의 상승률을 이용함
- 극단값이 분석의 결과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율변수(전년도 대비 총자산의 상승률)는 양 극단 1%를 제거(trim)하고 분석에 이용함
- 기타 통제변수로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들은 업력, 기업규모¹⁶¹⁾, 중소/일반기업 여부, 소속 지역을 이용함
- 단, <표 V-16>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표본을 데이터 전 기간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1회 이상 수혜한 중분류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
- 이와 같이 표본을 조정하는 것은 처치군과 통제군이 조금 더 동질적인 기업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표 V-16>은 상술했던 것과 같이 동 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양(+)의 계수를 가지나, 이러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임
- 동 제도의 효과로 인해 총자산의 성장률이 2.6~3.1%p 더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161) 전년도 자산규모의 값을 이용

<표 V-16>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효과(2015~2022년)

	(1)	(2)	(3)	(4)
$I_{it}^{strat} \times I_{it}^{post}$	0.030 (0.046)	0.031 (0.046)	0.026 (0.045)	0.028 (0.045)
I_{it}^{strat}	-0.025 (0.024)	-0.029 (0.024)	-0.024 (0.023)	-0.020 (0.023)
I_{it}^{post}	0.156*** (0.028)	0.157*** (0.028)	0.157*** (0.027)	0.158*** (0.027)
업력	-0.004*** (0.001)	-0.005*** (0.001)	-0.004*** (0.001)	-0.005*** (0.001)
$\log(asset_{t-1})$	0.021*** (0.005)	0.018*** (0.005)	0.018*** (0.005)	0.015** (0.005)
표본수	4,605	4,605	4,828	4,828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표 V-15>와 <표 V-16>에서 사용된 이와 같은 방식은 직접적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한계점에 반드시 유의하여 그 효과를 해석해야 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특정 기술군으로 받은 기업들이 반드시 해당 기술군의 사업화시설에도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특정 기술군의 이용가능성을 구분하였으나, 같은 중분류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도 특정 기술에 해당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활용 가능성은 상이할 수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모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용기업 수가 많지 않아, 해당 기술군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대표성이 강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로 인해 추정치가 편의(bias)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현 원고에서의 추정치는 정책 수립에 사용할 수 있는 엄밀한 수치라기보다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접증거를 사용해 구축할 수 있는 효과성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해석해야 함

다.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

- <표 V-17>은 위의 기업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함
- 성과변수 y_{it} 를 기업의 투자로 이용하였던 전 소절과 달리, 본 소절에서는 기업의 수익률을 성과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음
 - 기업의 수익률 y_{it} 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당기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음
 - <표 V-17>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 이후 동 제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서 수익률이 0.6~0.7%p가량 높았던 것을 보여, 경영성과에 약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보임

<표 V-1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 효과(2015~2022년)

	(1)	(2)	(3)	(4)
$I_{it}^{high} \times I_{it}^{post}$	0.006*** (0.002)	0.007*** (0.002)	0.006*** (0.002)	0.007*** (0.002)
I_{it}^{high}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I_{it}^{post}	0.007*** (0.001)	0.007*** (0.001)	0.007*** (0.001)	0.007*** (0.001)
업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og(asset_{t-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표본수	29,320	29,320	31,086	31,086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표 V-18>은 전 소절에서 사용한 기업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함
- 성과변수 y_{it} 를 기업의 투자로 이용하였던 전 소절과 달리, 본 소절에서는 기

업의 수익률을 성과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음

- 기업의 수익률 y_{it} 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당기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음
- <표 V-18>은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에 대한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임

<표 V-18>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 효과(2015~2022년)

	(1)	(2)	(3)	(4)
$I_{it}^{new} \times I_{it}^{post}$	0.003 (0.002)	0.003 (0.002)	0.003 (0.002)	0.003 (0.002)
I_{it}^{new}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I_{it}^{post}	0.008*** (0.001)	0.009*** (0.001)	0.009*** (0.001)	0.009*** (0.001)
업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og(asset_{t-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표본수	23,509	23,509	24,782	24,782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표 V-19>는 전 소절에서 사용한 기업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함
 - 성과변수 y_{it} 를 기업의 투자로 이용하였던 전 소절과 달리, 본 소절에서는 기업의 수익률을 성과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음
 - 기업의 수익률 y_{it} 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당기 총자산으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음
 - <표 V-19>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에 대한 계수가 대체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임

- 기업의 투자수준에 대한 분석과 같이, 이 경우 동 제도의 효과에 기업이 노출된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해석 시 감안하여야 함

<표 V-19>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영성과 효과(2015~2022년)

	(1)	(2)	(3)	(4)
$I_{it}^{strat} \times I_{it}^{post}$	0.009 (0.006)	0.010 (0.006)	0.007 (0.005)	0.008 (0.005)
I_{it}^{strat}	-0.005 (0.003)	-0.005 (0.003)	-0.004 (0.003)	-0.004 (0.003)
I_{it}^{post}	0.018*** (0.003)	0.018*** (0.003)	0.019*** (0.003)	0.019*** (0.003)
업력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log(asset_{t-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표본수	4,606	4,606	4,829	4,829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라. 소결

- (기업투자 양적 증대효과) 기업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반응하여 관련 기업투자 활동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남
 - 통합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크게 증대시킨 산업에서 총자산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더 큰 값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자산의 분류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 일반자산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반응하여 기업이 유의미하게 투자를 증진시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미시자료를 활용해 간접적인 분석을 진행함
 -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실행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본고에서 활용 가능한 미시납세자료상에 기업들이 해당 제

도에 노출된 기간이 너무 짧아, 유의미한 분석을 진행할 수 없었음

-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효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이 기업의 수익성에 약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나, 대상자산분류에 따라 세부적 분석을 시행했을 때 이러한 경향이 강건하게 관측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자산분류를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제도의 효과를 추정했을 때 총자산 대비 당기순손익으로 추정된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 약한 긍정적 효과가 추정됨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했을 때에는 효과성에 대한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해석상의 유의사항) 본 절에서 활용한 국세청 미시자료와 주어진 미시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본고에서 사용한 연구방법론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분석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제도의 도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 미시자료는 제도의 도입 이후 2개 신고연도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및 경영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또한 해당 2개 신고연도 기간 중 기업들은 기존의 특정시설 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새로 도입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제도군(群)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시자료에는 제도의 전면적 전환 이후에 대한 정보가 없음
 - 본고는 이에 맞추어 ‘기존 제도와 비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실질적 공제율 향상을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함
 - 하지만 이는 제도의 완전한 전환 이후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전 이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론에 해당함
 - 본고의 작성 시점에서 국세청 보유 미시자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분리된 항목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아 이에 따른 세부적 효과를 관측할 수 없었음
 - 본고의 작성 시점에서 국세청 보유 미시자료에는 기업들이 동 제도의 자산분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현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동 제도가 일반자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

업화시설의 세 분류에 따라 크게 다른 공제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제율 차이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음

- 본고는 간접자료를 통해 각 자산분류를 중점적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을 이용하여 세부효과를 추정했으나, 직접적인 세부 정보가 보완되었을 경우 이러한 결과의 정확성이 검증·보완될 필요가 있음

2.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평가

가. 개요

- 설문조사의 목적은 현재 시행 중인 조세특례의 실질적 효과와 그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성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이상적으로는 정밀하고 객관적인 미시자료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국세청 미시자료의 제공 범위 및 활용에 있어 여러 제약이 존재함에 따라, 본 연구진은 대안적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를 시도함
 - 동 조세특례에 대한 법인 과세 정보와 더불어 기업 특성 및 기업투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조세·재정정책에 대한 세부자료가 통합 가능하다면 해당 제도 변화에 따른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주어진 연구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통합적인 세부자료 구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통합자료가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효과 식별에 대한 어려움은 존재함
 - 과세 정보와 관련된 모든 국세청 서식이 전산 자료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구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료 통합에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주어진 시간 내에 자료 활용이 불가능함
 - 모든 가용한 자료가 통합된다고 할지라도 동 제도의 변화가 다른 제도와 동시에 변화하고 다른 제도 역시 동일한 정책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면 동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따라, 본 조세특례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대안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함
-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염두에 두고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 표본 설정의 유연성
 - 대부분의 경우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목표로 설문조사 대상 표본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 특히 개인정보,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구축된 자료가 없을 경우에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을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하여 설문조사의 시행과 자료 수득을 할 수 있음
 - 자료 수득의 용이성
 -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자료의 경우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실증적 모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반면에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득은 연구자가 목적에 적합하게 질문을 설정하여 자료를 수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수혜기업 또는 수혜대상기업에 제도의 효과 여부와 그 정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응답을 하게 된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음
 - 응답자 특성 등으로 인한 편향
 - 연구자의 의도 또는 설문조사 시행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설정된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결과에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제 모집단과 연구자가 설문 대상에 접근 가능한 표본집단이 유사할 경우 확률표본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표본으로 인한 편향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¹⁶²⁾
 - 또한, 응답자의 이해력에 따라 본인의 상황과 다르게 설문조사에 응답할 가능성도 있어 편향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질문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은 설문조사 응답 시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응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

162) 확률표본추출법에는 단순무작위추출, 층화무작위추출, 계통적표본추출 등이 있음

- 이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선택하여 최대한 응답을 유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질문에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함
-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경제적 특성 등을 보이고 이것이 만약 응답과 관련되었다면 응답자만의 결과는 편향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유사 질문에 대한 응답률에 의거하여 응답률의 수준에 따라 최대한 고르게 설문조사를 진행 및 결과를 수득하려고 노력하였음

□ 설문조사의 대상(<표 V-20>)은 금융업을 제외한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총 300개 표본 수득을 목표로 실시함

○ 조사대상은 금융업을 제외한 영리법인으로 설정함

- 금융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영업활동의 개념과 영역이 매우 상이하고,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과 적용받는 규제 및 정책이 차이가 있음
- 추가적으로 금융업은 표준 회계 항목의 경우에도 비금융업 기업과 다르게 구분되어 있어 동일한 비교가 어려움
-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금융업을 제외하고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금융업에 대해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표본집단은 설문조사 대행업체인 ㈜리서치앤리서치의 기업 패널을 활용하였으며, 해당 패널은 과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등에서 활용하여 보편성이 인정된 표본집단임

- 내부 자료 확인 결과, 국세청의 표본 집단과 소득분위 및 기업규모상에서 유사한 분포를 따르고 있음

○ 표본구성은 수득 기준으로 총 300개 회사를 목표로 하였고, 국세통계연보의 기업 규모별 활용 기업 수의 비율과 혜택 금액 비율을 고려하였고, 추후 통계적인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규모별 최소 20개 이상의 표본 수득을 계획함

- 본 심층평가에 주어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대 수준으로 설정함

<표 V-20>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 대상	
조사대상	금융업을 제외한 영리법인
표본집단	(주)리서치앤리서치의 기업 패널 표본
표본구성	총 300개(기업 규모별 최소 20개 이상)
표본추출방법	임의추출

-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일정을 고려하여 설문작성 및 검토 2개월, 설문조사 진행 2.5개월 실시
 - 여러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어 비교적 설문의 길이가 긴 편에 속하였으며, 수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대면조사방식을 채택하여 표본 수에 비해 설문조사 기간이 많이 요구되었음

- 보다 정확한 자료 수득을 위하여 여러 설문조사 방식 중 대면조사방식을 채택함
 - 설문조사 방식에는 인터넷 링크를 통한 설문조사, ARS 전화조사, 전화설문조사, 대면조사 등이 많이 활용됨
 - 이 중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대면조사방식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택함
 - 앞서 설문조사의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응답자의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면조사방식이 적절함
 - 본 설문의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여러 경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응답자 입장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 여러 호에 대한 내용을 한 설문조사에 담았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 수득률이 낮을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가장 적합한 대면조사방식을 사용함

- 앞서 언급하였던 효과성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질문을 실시함
 - 기업 일반현황
 - 기업의 규모, 주식시장 상장유형, 산업분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조사함
 - 응답기업의 특성에 따른 제도 효과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항목을 포함함

- 이를 통하여 기업 규모와 같은 특정 요건의 정책대상자에 해당 제도가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음
- 기업 투자 요인
 - 본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투자 증대와 관련하여 기업이 투자활동을 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함
 - 조세지원 제도를 포함한 투자 결정 요인에 대해 중요도 또한 포함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별 요인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에 대한 수준을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음
-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본 조세특례 제도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투자 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지를 조사함
 -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 조세특례의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 정도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질문함
- 제도 개선 방안
 - 본 조세특례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을 수혜 대상기업에 직접 질문함
 - 수혜받지 못한 기업에 제도 미활용의 원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문함으로써 제도의 효과 저해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
 - 추가적으로 투자 증대를 위해 다양한 조세·재정지원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 설문함
 - 이를 통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이외에도 본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여러 질문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예시는 <표 V-21>에서 확인할 수 있음

<표 V-21> 설문 질문의 구성 예시

기업 일반현황
○ 귀사의 설립연도는?
○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 귀사의 산업분류는 어디에 속하십니까?

<표 V-21>의 계속

기업 투자요인

- 기업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합니다. 이러한 생산에 있어 투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사가 생각하는 기업 투자 결정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 귀사가 특정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투자의 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귀사가 특정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한다면, 투자의 위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귀사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투자 활성화에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22년~2023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통합 이전의 10개의 개별 투자세액공제도 없었다고 가정)하면 귀사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했을 금액은 해당 연도 유형자산 투자 대비 몇 배입니까? 연도별 및 사업용 유형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계획과 같이 조특법이 개정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1년간 연장될 경우에 귀사가 2024년에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은 당초에 계획했던 투자금액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업용 유형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 방안

- 귀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사가 세액공제의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귀사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사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유형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에 따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표본기업 일반 현황

□ 설문조사 표본 특징

- 설문조사 결과 수득 표본은 총 268개로 구성됨
 - 규모별 응답기업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은 58.2%(156개), 중견기업은 33.2%(89개), 대기업은 8.6%(23개)를 차지하고 있음

- 응답기업의 추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음
 - 주식시장 상장 유형을 보면, 대다수인 226개 기업(84.3%)이 비상장 기업이었고, KOSPI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8개(10.4%), KOSDAQ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10개(3.7%), KONEX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4개(1.5%)임
 - 산업 분류에서는 제조업이 140개 기업으로 52.2%를 차지했고, 비제조업이 128개 기업으로 47.8%를 차지해 비슷한 비율을 보임
 -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인 223개 기업(83.2%)이 동체도의 혜택을 받지 않았고, 45개 기업(16.8%)만이 해당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기업 분포를 살펴보면 31~100명 이하가 65개 기업으로 24.3%로 나타나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11~30명 이하에 해당하는 기업이 62개로 23.1%를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101~300명 이하(47개, 17.5%), 300명 초과(37개, 13.8%), 6~10명 이하(31개, 11.6%), 5명 이하(26개, 9.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결과적으로, 설문조사의 분포는 실제 분포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크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 2022년 귀속연도 기준 법인 982,456개 중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7,853개로 0.799% 수준이나, 본 설문조사의 표본에서는 16.8%로 높은 수준임
 - 이는 표본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장기업 비중 및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에서 추론할 수 있음

〈표 V-22〉 기업 유형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비중
전체		(268)	100.0
기업규모	중소기업	(156)	58.2
	중견기업	(89)	33.2
	대기업	(23)	8.6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8)	10.4
	KOSDAQ시장 상장	(10)	3.7
	KONEX시장 상장	(4)	1.5
	비상장	(226)	84.3

<표 V-22>의 계속

(단위: 개, %)

구 분		사 례 수	비 중
산업분류	제조업	(140)	52.2
	비제조업	(128)	47.8
통합투자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5)	16.8
	없음	(223)	83.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6)	9.7
	6~10명 이하	(31)	11.6
	11~30명 이하	(62)	23.1
	31~100명 이하	(65)	24.3
	101~300명 이하	(47)	17.5
	300명 초과	(37)	13.8

자료: 저자 작성

다. 기업 투자 요인

- 동 조세특례의 목표인 기업 투자 증대와 관련하여 기업 투자의 요인 파악과 조세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이해하기 위해 설문을 실시함
 - 기업 투자 요인과 관련하여 기업투자 결정요인, 투자시기 결정요인, 투자위치 결정요인을 나누어 질문하여 추후 정책적 시사점과 연계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득을 목표로 하였음
 - 기업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고려하는 주된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음
 - 투자시기 결정요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렸을 때 투자 시기에 대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투자위치 결정요인에 대한 질문으로부터는 기업이 투자 결정을 확정하였을 때 투자를 시행할 위치의 선정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음

-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1순위와 1~5순위를 합산한 결과 모두에서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

- 기업 규모나 세액공제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를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요인으로 고려
 -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음
 -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기업(39.1%), 중견기업(38.2%), 중소기업(34.0%) 순으로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높았음
 -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를 훨씬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수혜기업의 경우 48.9%, 비수혜기업의 경우 33.2%로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를 1순위로 선택하였음
-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다른 주요한 요인은 기업의 이익과 자본 조달에서의 재무적 제약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책적 지원은 핵심적인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됨
- 1순위 기준으로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기업의 현재 이익” 등을 주된 요인으로 고려하여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문항목인 “관련 산업 조세 지원”은 0.7%의 응답 기업이 1순위로 선택하였으며, “기타”를 제외한 총 11가지 요인 중 7번째 수준의 중요도로 파악됨
 - “관련 산업 조세 지원”과 동일한 순위 및 수준인 기업 투자 결정 요인은 “기업지배구조”와 “거시적 환경”이 있었음
 - “관련 산업 조세 지원”이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와 “관련 산업 재정 지원”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아서 통계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1~5순위를 통합하여 산출한 기준으로 살펴보면 1순위 기준과는 다르게 “기업의 현재 이익”이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관련 산업 조세 지원”은 11가지 요인 중 가장 낮은 11번째를 차지함

○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기업의 현재 이익”, “관련 산업 경쟁수준”이 투자 결정 요인의 90% 이상을 차지함

- 1순위를 기준으로 위의 주요 요인의 비중은 92.2%를 차지함

<표 V-23> 기업투자 결정요인(1순위)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 체	(268)	25.4	1.5	22.4	35.8	0.7	8.6	0.7	1.9	0.4	0.4	0.7	1.5
기업규모	중소기업	(156)	29.5	1.3	23.1	34.0	0.6	6.4	1.3	1.9	0.0	0.6	0.6
	중견기업	(89)	22.5	1.1	20.2	38.2	1.1	11.2	0.0	1.1	1.1	0.0	1.1
	대기업	(23)	8.7	4.3	26.1	39.1	0.0	13.0	0.0	4.3	0.0	0.0	4.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8)	7.1	0.0	17.9	42.9	0.0	21.4	0.0	3.6	3.6	3.6	0.0
	KOSDAQ시장 상장	(10)	20.0	0.0	10.0	60.0	0.0	10.0	0.0	0.0	0.0	0.0	0.0
	KONEX시장 상장	(4)	25.0	25.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비상장	(226)	27.9	1.3	23.9	33.6	0.9	7.1	0.9	1.8	0.0	0.0	0.9
산업분류	제조업	(140)	21.4	1.4	20.0	41.4	0.7	8.6	1.4	2.1	0.7	0.7	1.4
	비제조업	(128)	29.7	1.6	25.0	29.7	0.8	8.6	0.0	1.6	0.0	1.6	1.6
통합투자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5)	13.3	2.2	20.0	48.9	0.0	11.1	0.0	0.0	2.2	0.0	2.2
	없음	(223)	27.8	1.3	22.9	33.2	0.9	8.1	0.9	2.2	0.0	0.4	0.9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6)	19.2	0.0	26.9	19.2	3.8	7.7	3.8	7.7	0.0	3.8	3.8
	6~10명 이하	(31)	29.0	0.0	16.1	41.9	0.0	6.5	3.2	0.0	0.0	0.0	3.2
	11~30명 이하	(62)	24.2	1.6	27.4	38.7	0.0	6.5	0.0	0.0	0.0	0.0	1.6
	31~100명 이하	(65)	38.5	3.1	16.9	27.7	0.0	9.2	0.0	3.1	0.0	0.0	1.5
	101~300명 이하	(47)	19.1	0.0	31.9	36.2	0.0	10.6	0.0	0.0	0.0	0.0	2.1
	300명 초과	(37)	13.5	2.7	13.5	51.4	2.7	10.8	0.0	2.7	2.7	0.0	0.0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 ② 유희 설비 존재 여부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 ④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 ⑤ 기업지배구조
- ⑥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 ⑦ 거시적 환경
- ⑧ 관련 산업 경쟁수준
- ⑨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 ⑩ 관련 산업 재정 지원
- ⑪ 관련 산업 조세 지원
- ⑫ 기타

<표 V-24> 기업투자 결정요인(1~5순위)

(단위: 개, %)

구 분		사례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 체		(268)	67.9	19.4	71.3	80.2	19.0	44.4	11.9	30.6	6.7	10.4	5.6	2.6
기업규모	중소기업	(156)	67.3	17.9	69.9	79.5	14.7	39.7	6.4	33.3	5.1	11.5	6.4	1.3
	중견기업	(89)	70.8	18.0	70.8	83.1	23.6	49.4	18.0	27.0	9.0	10.1	4.5	4.5
	대기업	(23)	60.9	34.8	82.6	73.9	30.4	56.5	26.1	26.1	8.7	4.3	4.3	4.3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8)	71.4	3.6	71.4	92.9	28.6	64.3	25.0	32.1	14.3	10.7	7.1	0.0
	KOSDAQ시장 상장	(10)	60.0	40.0	60.0	90.0	20.0	40.0	0.0	20.0	0.0	10.0	0.0	0.0
	KONEX시장 상장	(4)	75.0	75.0	25.0	75.0	0.0	25.0	0.0	50.0	0.0	25.0	0.0	0.0
	비상장	(226)	67.7	19.5	72.6	78.3	18.1	42.5	11.1	30.5	6.2	10.2	5.8	3.1
산업분류	제조업	(140)	66.4	22.9	72.9	82.1	18.6	42.9	13.6	32.9	10.0	12.9	5.0	3.6
	비제조업	(128)	69.5	15.6	69.5	78.1	19.5	46.1	10.2	28.1	3.1	7.8	6.3	1.6
통합투자 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5)	62.2	20.0	77.8	84.4	15.6	46.7	17.8	35.6	8.9	17.8	11.1	4.4
	없음	(223)	69.1	19.3	70.0	79.4	19.7	43.9	10.8	29.6	6.3	9.0	4.5	2.2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6)	69.2	7.7	61.5	73.1	11.5	46.2	11.5	30.8	7.7	7.7	11.5	3.8
	6~10명 이하	(31)	54.8	12.9	74.2	80.6	9.7	38.7	6.5	19.4	6.5	9.7	3.2	3.2
	11~30명 이하	(62)	62.9	17.7	71.0	80.6	16.1	32.3	6.5	32.3	3.2	14.5	8.1	1.6
	31~100명 이하	(65)	70.8	27.7	69.2	76.9	26.2	49.2	12.3	38.5	7.7	7.7	3.1	3.1
	101~300명 이하	(47)	72.3	12.8	76.6	85.1	12.8	57.4	17.0	29.8	8.5	10.6	8.5	4.3
	300명 초과	(37)	75.7	29.7	73.0	83.8	32.4	43.2	18.9	24.3	8.1	10.8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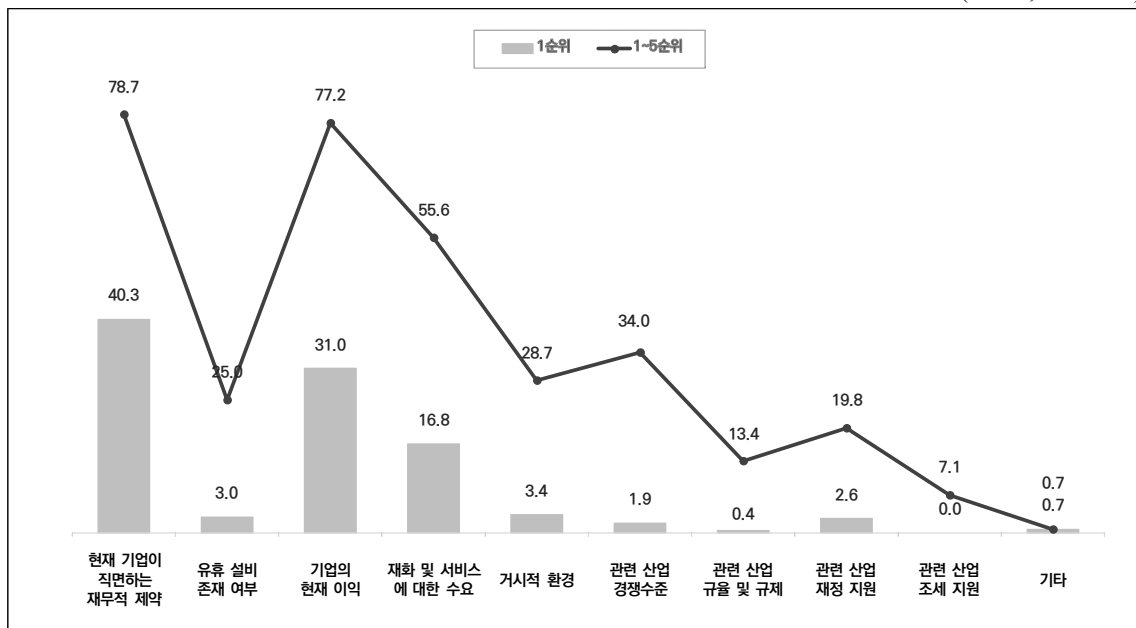
- ①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
- ② 유희 설비 존재 여부
- ③ 기업의 현재 이익
- ④ 투자로부터 기대 가능한 미래 성과
- ⑤ 기업지배구조
- ⑥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 ⑦ 거시적 환경
- ⑧ 관련 산업 경쟁수준
- ⑨ 관련 산업 규율 및 규제
- ⑩ 관련 산업 재정 지원
- ⑪ 관련 산업 조세 지원
- ⑫ 기타

-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 후에 투자시기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투자시기 결정 요인에 대해서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가 1순위와 1~5순위를 합산한 결과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짐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순위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의 비중이 각각 43.6%, 38.2%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은 “기업의 현재 이익”(3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1순위 기준으로 수혜기업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과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각 28.9%)를 가장 높게 선택하였고, 비수혜기업은 “현재 기업이 직면하는 재무적 제약”(4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V-1] 투자시기 결정요인

(n=268,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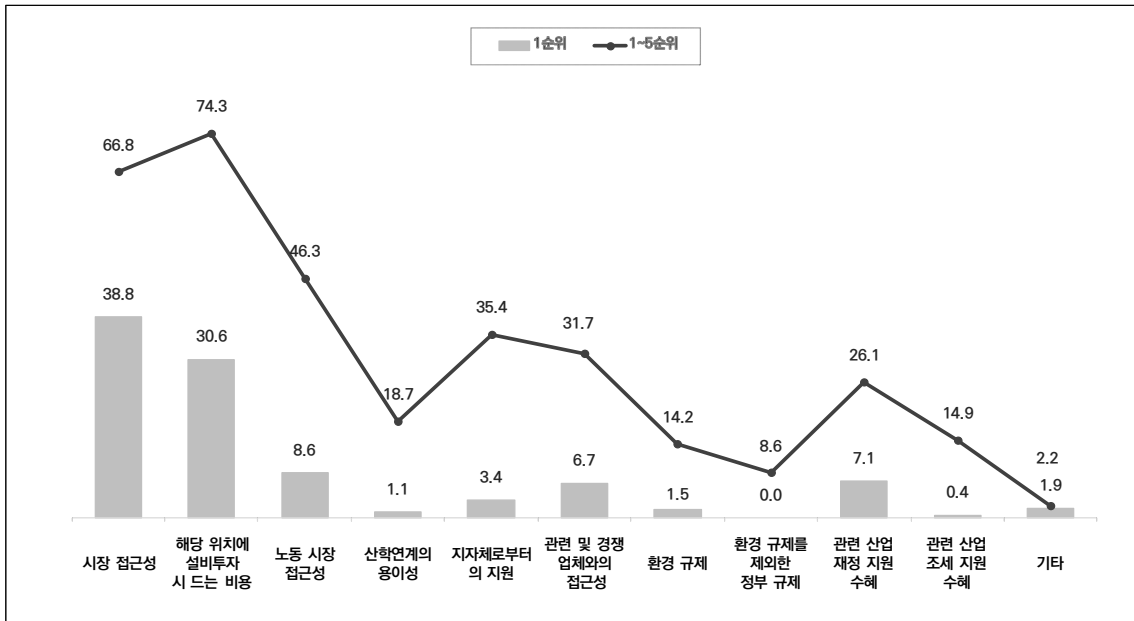
- 기업이 투자 위치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시장 접근성”과 “해당 위치에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1순위에서는 “시장 접근성”이 38.8%로 가장 높았고, 1~5순위에서는 해당 위치에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이 74.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투자 위치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는 “시장 접근성”, “해당 위치에 설비투자 시

드는 비용”, “노동시장 접근성”, “관련 산업 재정 지원 수혜”, “관련 및 경쟁 업체와의 접근성” 등이 있음

- 앞서 결과와는 다르게 정책적 지원 요소 중 하나인 “관련 산업 재정 지원 수혜”가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이 특징임

[그림 V-2] 투자위치 결정요인

(n=268,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라. 제도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를 설문한 결과, 과반수 이상인 77.8%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 기업규모가 클수록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비중이 증가함
 - 중소기업은 62.5%, 중견기업은 77.4%, 대기업은 100.0%로 투자 활성화가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주식시장 상장유형,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서도 나타남
- 산업분류상에서는 제조업(81.8%)이 비제조업(66.7%)보다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음

<표 V-25>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활성화 여부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체	(45)	77.8	22.2	
기업규모	중소기업	(8)	62.5	37.5
	중견기업	(31)	77.4	22.6
	대기업	(6)	10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7)	85.7	14.3
	KOSDAQ시장 상장	(4)	50.0	50.0
	KONEX시장 상장	(0)	0.0	0.0
	비상장	(34)	79.4	20.6
산업분류	제조업	(33)	81.8	18.2
	비제조업	(12)	66.7	33.3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0)	0.0	0.0
	6~10인 이하	(0)	0.0	0.0
	11~30명 이하	(2)	50.0	50.0
	31~100명 이하	(9)	77.8	22.2
	101~300명 이하	(20)	85.0	15.0
	300인 초과	(14)	71.4	28.6

자료: 저자 작성

- 2022년과 2023년의 제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함
 - 동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 자산에서 2022년에는 0.69배, 2023년에는 0.75배의 투자를 진행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함
 - 동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신성장 사업화시설에서는 2022년에는 0.53배, 2023년에는 0.56배로 나타남
 - 동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서는 2022년에는 0.51배, 2023년에는 0.54배로 나타남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적 자산 항목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

<표 V-26> 2022~2023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별 투자금액 변화배수

(단위: 개, 배)

구 분	사 례 수	2022년			2023년			
		일반적 자산	신성장 사업화 시설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일반적 자산	신성장 사업화 시설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시설	
전 체	(45)	0.69	0.53	0.51	0.75	0.56	0.54	
기업규모	중소기업	(8)	0.53	0.50	0.50	0.65	0.50	0.50
	중견기업	(31)	0.73	0.55	0.55	0.75	0.60	0.59
	대기업	(6)	0.71	0.47	0.30	0.88	0.46	0.3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7)	0.29	0.14	0.14	0.53	0.14	0.14
	KOSDAQ시장 상장	(4)	0.30	0.25	0.25	0.55	0.25	0.25
	KONEX시장 상장	(0)	-	-	-	-	-	-
	비상장	(34)	0.82	0.65	0.62	0.86	0.68	0.65
산업분류	제조업	(33)	0.70	0.55	0.55	0.78	0.54	0.54
	비제조업	(12)	0.66	0.50	0.42	0.77	0.60	0.53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0)	-	-	-	-	-	-
	6~10인 이하	(0)	-	-	-	-	-	-
	11~30명 이하	(2)	0.00	0.00	0.00	0.00	0.00	0.00
	31~100명 이하	(9)	0.79	0.58	0.47	0.78	0.55	0.44
	101~300명 이하	(20)	0.74	0.50	0.50	0.81	0.52	0.52
	300인 초과	(14)	0.66	0.63	0.63	0.85	0.71	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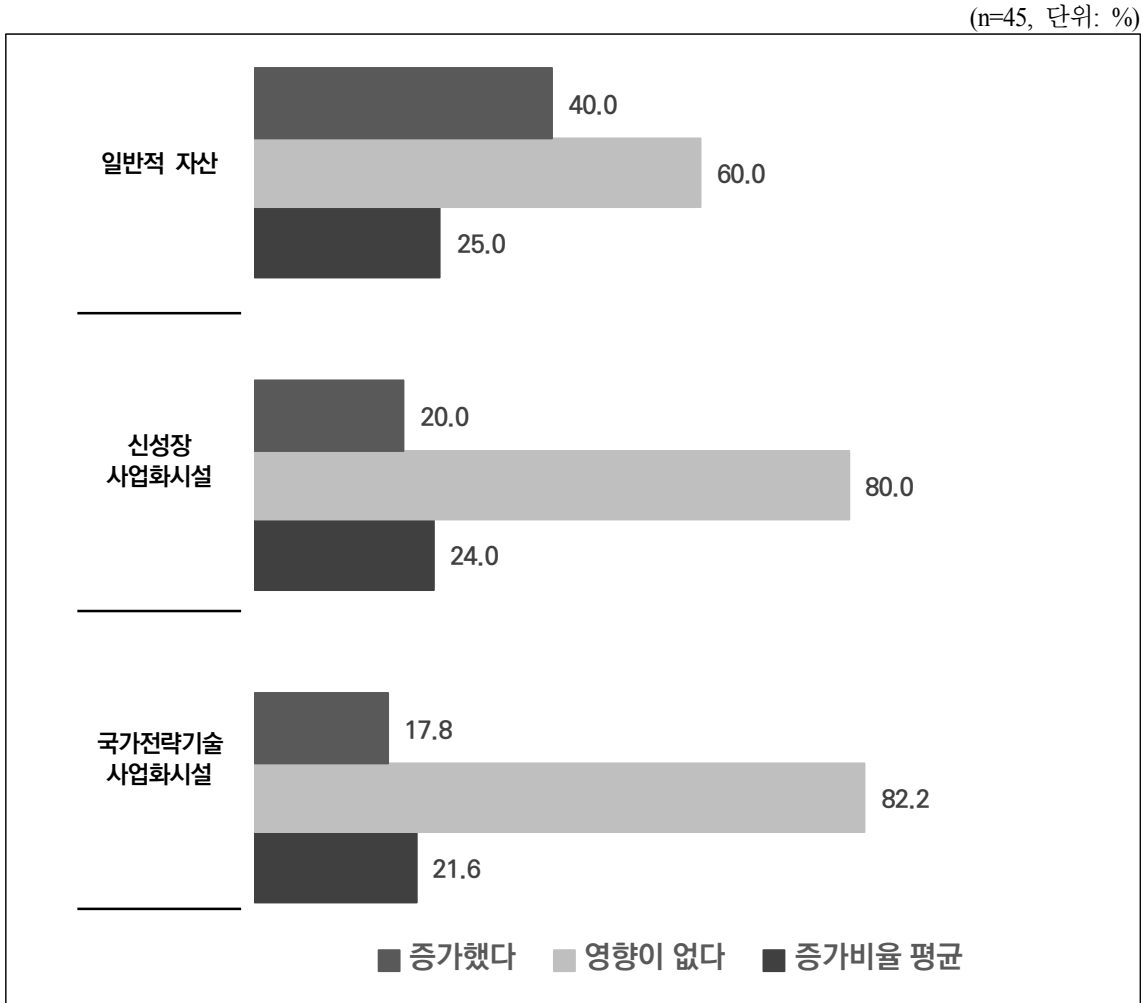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2023년의 일시적 공제율의 상향이 2024년에도 연장될 경우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적 자산, 신성장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순으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됨
 - 2023년의 공제율 상향이 2024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 자산에 대하여 40.0%가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증가 계획금액은 6억 5,222만원, 증가비율은 25.0%으로 나타남
 -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20%가 투자를 증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계획금액은 6억 9,122만원, 증가비율은 24.0%로 나타남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하여 17.8%가 투자를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

으며 평균 계획금액은 1억 5,175만원, 증가비율은 21.6%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사업용 유형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이 투자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낮았음

[그림 V-3] 2023년 공제율 상향이 2024년에도 유지될 경우의 사업용 유형자산별 투자금액 변동



자료: 저자 작성

마. 제도의 통합을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종전에 시행된 10개의 개별 투자세액공제 대신 2021년 이후에 동(同) 세액공제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나 투자의 계획·실행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이하 “납세협력비용 등”)이 절감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27>과 같이 26.7%가 납세협력비용 등의 감소를 나타냄

-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3.3%)의 비율이 비제조업(8.3%)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2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시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의 감소 여부

(단위: 개, %)

구분		표본수	감소	감소 없음
기업규모	중소기업	8	25.0	75.0
	중견기업	31	29.0	71.0
	대기업	6	16.7	83.3
업종분류	제조업	33	33.3	66.7
	비제조업	12	8.3	91.7
합계		45	26.7	73.3

자료: 저자 작성

- <표 V-27>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시행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등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 등의 감소비율을 질문한 결과 <표 V-28>과 같이 감소비율의 평균은 15.0%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표 V-27>의 감소 여부와 유사하게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감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종별로는 제조업(13.3%)의 감소비율이 비제조업(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28>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시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의 감소 비율

(단위: 개, %)

구분		표본수	감소비율(평균)
기업규모	중소기업	2	15.0
	중견기업	9	12.3
	대기업	1	10.0
업종분류	제조업	11	13.3
	비제조업	1	5.0
합계		12	12.0%

자료: 저자 작성

바. 제도 개선 방안

-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의 고려를 위해 최근 다른 국가에서 도입한 투자 세액공제의 환급·양도방안에 대한 의견, 투자 세액공제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2021년 제도 통합 효과, 조세 지원의 강화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설문함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환급·양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조세혜택의 ① 일시적 지급(환급)과 ② 이월공제를 통한 혜택 제공(현행)과의 경제적 인식 차이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이 큰 차이가 없다고 응답함
 - ①과 ②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느끼는 기업은 35.6% 수준으로 이는 현행 10년의 기간 내에서 이월공제하는 혜택을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충분한 혜택을 수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①과 ②가 동일하다고 응답하였음
 -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75.0%, 중견기업은 58.1%, 대기업은 83.3%가 동일하다고 인식함
 - ②가 ①보다 경제적 가치가 작다고 느끼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느껴지느냐에 대해 설문한 결과, 0~5% 이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11% 이상(37.5%), 6~10% 이하(18.8%) 순으로 응답함
 - 평균적으로 14.9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6~10% 이하와 11% 이상(각 50.0%)에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은 0~5% 이하(53.8%), 대기업은 ‘11% 이상’(10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V-29> 현행제도(이월공제)가 세액공제의 일시적 지급(환급)보다 얼마나 더 작은지에 대한 인식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0~5% 이하	6~10% 이하	11% 이상	평균	
전체	(16)	43.8	18.8	37.5	14.9	
기업규모	중소기업	(2)	0.0	50.0	50.0	30.0
	중견기업	(13)	53.8	15.4	30.8	12.6
	대기업	(1)	0.0	0.0	100.0	15.0
산업분류	제조업	(11)	36.4	18.2	45.5	18.1
	비제조업	(5)	60.0	20.0	20.0	7.8

자료: 저자 작성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환급·양도 가능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과반수(86.7%)인 반면에 제도 변경 시 투자를 증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과반수(87.2%)로 나타나 환급 및 양도 가능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파악됨

<표 V-30> 통합투자세액공제액 환급·양도가 시행될 경우 인식

(단위: 개, %)

구 분		사 례 수	증 가	영 향 없 다
전 체		(39)	12.8	87.2
기업규모	중소기업	(7)	14.3	85.7
	중견기업	(26)	15.4	84.6
	대기업	(6)	0.0	100.0
산업분류	제조업	(29)	3.4	96.6
	비제조업	(10)	40.0	60.0

자료: 저자 작성

- 수도권 지역제한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과반수의 기업이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요건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투자를 증대하지 않겠다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이었음
 - 수도권 지역제한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과반수의 기업이 필요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지역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 수도권세액공제 허용방안 필요성 인식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니오”가 53.3%로 “예”(46.7%)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예”가 50.0%, 중견기업 48.4%, 대기업 33.3%로 나타남
 - 수도권 세액공제 허용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별 투자금액 증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업용 유형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기대되는 투자 증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일반적 자산에서 “영향이 없다”가 81.0%로 나타났으며, 신성장 사업화시설에서는 “영향이 없다”가 95.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서는 “영향이 없다”가 90.5%로 나타남

<표 V-31> 수도권 지역요건 완화 필요성 인식

(단위: 개, %)

구 분		사 례 수	예	아니오
전 체		(45)	46.7	53.3
기업규모	중소기업	(8)	50.0	50.0
	중견기업	(31)	48.4	51.6
	대기업	(6)	33.3	66.7
산업분류	제조업	(33)	45.5	54.5
	비제조업	(12)	50.0	50.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0)	-	-
	6~10인 이하	(0)	-	-
	11~30명 이하	(2)	50.0	50.0
	31~100명 이하	(9)	44.4	55.6
	101~300명 이하	(20)	45.0	55.0
	300인 초과	(14)	50.0	50.0

자료: 저자 작성

-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으로 인한 투자금액 증가 여부와 관련하여 과반 수 이상이 투자금액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해당 응답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금액 증가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아니오”가 71.1%로 “예”(28.9%)보다 높게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예”가 37.5%, 중견기업 22.6%, 대기업 50.0%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경로로 세액공제 혜택이 많이 존재하였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여러 제도들의 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적고, 세액공제율 또한 낮았던 대기업에는 통합이 지원 혜택의 확대 효과를 가져왔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V-32> 2021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투자금액 증가 여부

(단위: 개, %)

구 분		사 례 수	예	아니오
전 체		(45)	28.9	71.1
기업규모	중소기업	(8)	37.5	62.5
	중견기업	(31)	22.6	77.4
	대기업	(6)	50.0	5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7)	28.6	71.4
	KOSDAQ시장 상장	(4)	75.0	25.0
	KONEX시장 상장	(0)	-	-
	비상장	(34)	23.5	76.5
산업분류	제조업	(33)	30.3	69.7
	비제조업	(12)	25.0	75.0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0)	-	-
	6~10인 이하	(0)	-	-
	11~30명 이하	(2)	0.0	100.0
	31~100명 이하	(9)	44.4	55.6
	101~300명 이하	(20)	25.0	75.0
	300인 초과	(14)	28.6	71.4

자료: 저자 작성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측면에서, 현재 적용대상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기업은 60.0% 수준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산업과 규모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측면에서, 현재의 공제대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1.1% 수준이었으며,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46.7%,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2.2%로 나타남¹⁶³⁾
 - 제조업에서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54.5%)이 제일 높은 반면에, 비제조업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75%)이 제일 높았음

163) 2024년 기준 공제대상은 중고품·운영리스 및 토지·건축물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원 수준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54.5%)이 제일 높았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였는데, 수혜기업은 66.7%가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에 비수혜기업은 52.0%가 적절하다고 평가함

<표 V-33> 통합투자세액공제 조세지원 수준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지나치게 부족한 수준이다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비교적 많은 수준이다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전 체		(268)	5.6	37.7	54.5	1.5	0.7
기업규모	중소기업	(156)	5.8	33.3	58.3	1.9	0.6
	중견기업	(89)	5.6	43.8	48.3	1.1	1.1
	대기업	(23)	4.3	43.5	52.2	0.0	0.0
주식시장 상장유형	KOSPI시장 상장	(28)	14.3	42.9	42.9	0.0	0.0
	KOSDAQ시장 상장	(10)	20.0	40.0	40.0	0.0	0.0
	KONEX시장 상장	(4)	0.0	50.0	50.0	0.0	0.0
	비상장	(226)	4.0	36.7	56.6	1.8	0.9
산업분류	제조업	(140)	2.1	39.3	56.4	0.7	1.4
	비제조업	(128)	9.4	35.9	52.3	2.3	0.0
통합투자세액공제 수혜여부	있음	(45)	2.2	28.9	66.7	2.2	0.0
	없음	(223)	6.3	39.5	52.0	1.3	0.9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	(26)	11.5	34.6	53.8	0.0	0.0
	6~10인 이하	(31)	6.5	25.8	64.5	3.2	0.0
	11~30명 이하	(62)	1.6	37.1	56.5	3.2	1.6
	31~100명 이하	(65)	6.2	40.0	52.3	0.0	1.5
	101~300명 이하	(47)	4.3	36.2	57.4	2.1	0.0
	300인 초과	(37)	8.1	48.6	43.2	0.0	0.0

자료: 저자 작성

-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 강화”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1순위를 기준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 강화”가 49.3%로 가장 높았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 “가속상각제도를 통한 조세지원의 강화” 등의 순으로 높았음
- 1~3순위 기준에서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 강화”가 87.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급”도 84.0%로 유사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선택하였음
- 이러한 결과는 투자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기업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사. 소결

-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결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성은 인정되나, 투자 세액공제의 환급·양도와 지역제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 비록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의 우선순위에서는 정책적 지원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러 지원 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음
 - 기타를 제외한 투자 요인의 중요도 측면에서 조세지원은 7순위 수준이며, 대략 0.7%의 기업이 1순위로 중요하다고 선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관련된 여러 조세·재정정책 중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지원 강화가 가장 중요한 지원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49.3%, 1순위)
 - 이는 동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투자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기존 대비 0.51~0.75배 수준의 투자)
-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들이 세액공제의 환급과 이월공제 혜택의 경제적 차이에 대해 인식하지만, 환급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제도 도입 시 효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현행 제도와 환급 및 양도가 가능할 때 세액공제 혜택의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느끼는 기업은 35.6% 수준으로 이는 현행 이월공제 기간 내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충분한 혜택을 수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경제적 차이에 대해 느끼는 수준도 0~5% 이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해

당 제도 변화 시 투자를 증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과반수(87.2%)로 나타나 환급 및 양도 가능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파악됨

- 지역제한 완화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기업이 요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해당 변화가 투자 증대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VI. 고용영향평가



VI. 고용영향평가

1. 분석자료 및 현황

- 본 조세특례 제도의 고용영향 평가를 위해 제V장의 효과성 분석에서 소개한 국세청 미시납세자료를 활용함
 - 고용영향 평가를 위해 앞서 활용된 기업의 재무자료 및 납세자료에 더하여 기업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 확보한 평균 근로자 수 정보를 이용
 - 먼저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기업들의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이 평균 근로자 수를 증가시켰는지 분석함
 - 또한 보조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고용영향을 파악

- <표 VI-1>, <표 VI-2>, <표 VI-3>은 기업의 규모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용 여부에 따라 고용에 대한 기초통계를 정리함
 -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용기업이 미이용기업에 비해 고용인원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이용기업은 2021, 2022 신고연도 중 한 번 이상 동 제도의 이용내역이 있는 기업을 의미함

<표 VI-1> 연도별 기업 고용인원 기초통계

(단위: 명)

전체 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51.6	324.6	2,142.5	4,151
2016	45.0	256.7	1,939.3	4,714
2017	43.3	265.0	1,837.5	5,466
2018	36.3	237.1	1,760.8	5,371
2019	39.2	224.7	1,629.5	6,503
2020	36.8	214.7	1,596.2	7,019
2021	28.0	187.5	1,676.2	5,797
2022	23.4	161.8	1,666.4	5,372
Total	36.7	229.9	1,765.1	44,393
제도 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92.3	649.5	3,724.3	1,017
2016	82.2	520.0	3,418.0	1,165
2017	83.1	500.9	3,104.1	1,441
2018	76.5	511.8	3,119.1	1,434
2019	77.9	423.1	2,687.6	2,088
2020	73.9	381.2	2,512.6	2,459
2021	54.8	309.6	2,571.4	2,045
2022	40.3	247.3	2,584.4	1,948
Total	69.6	416.1	2,880.3	13,597
제도 미사용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42.0	219.2	1,239.7	3,134
2016	35.5	170.2	1,064.5	3,549
2017	32.8	180.5	1,053.8	4,025
2018	26.1	137.0	806.6	3,937
2019	26.5	130.9	684.7	4,415
2020	23.0	125.0	703.6	4,560
2021	18.9	121.0	852.0	3,752
2022	16.5	113.2	742.7	3,424
Total	26.2	147.6	898.0	30,796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2> 연도별 기업 고용인원 기초통계(중소기업)

(단위: 명)

전체 중소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37.1	65.5	84.8	3,195
2016	34.8	65.2	98.2	3,872
2017	32.1	61.1	90.6	4,455
2018	28.0	56.2	82.9	4,560
2019	29.0	56.7	78.3	5,343
2020	26.8	53.3	76.1	5,748
2021	21.0	43.4	63.8	4,797
2022	18.3	36.6	56.4	4,504
Total	27.2	54.1	79.6	36,474
제도 사용 중소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55.0	90.4	92.7	643
2016	52.2	87.9	89.6	799
2017	53.8	88.2	96.3	999
2018	49.8	86.6	100.7	1,024
2019	52.6	84.2	92.8	1,455
2020	48.6	80.5	88.1	1,739
2021	39.2	66.4	79.1	1,514
2022	30.6	52.6	64.8	1,557
Total	45.7	77.1	87.9	9,730
제도 미사용 중소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32.9	59.2	81.5	2,552
2016	29.5	59.3	99.5	3,073
2017	26.0	53.3	87.4	3,456
2018	22.3	47.4	74.8	3,536
2019	22.3	46.5	69.3	3,888
2020	19.0	41.5	67.0	4,009
2021	15.5	32.8	52.1	3,283
2022	13.0	28.1	49.3	2,947
Total	21.4	45.7	74.6	26,744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3> 연도별 기업 고용인원 기초통계(일반기업)

(단위: 명)

전체 일반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284.2	1,190.5	4,352.9	956
2016	286.6	1,137.4	4,481.9	842
2017	310.1	1,163.1	4,152.5	1,011
2018	343.1	1,254.2	4,392.8	811
2019	275.0	998.5	3,760.1	1,160
2020	272.0	944.7	3,660.8	1,271
2021	236.7	879.1	3,962.7	1,000
2022	221.2	811.6	4,084.4	868
Total	274.8	1,039.5	4,079.3	7,919
제도 사용 일반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336.8	1,610.6	6,025.1	374
2016	365.7	1,463.3	5,994.8	366
2017	353.2	1,433.8	5,494.0	442
2018	374.9	1,573.7	5,698.8	410
2019	289.7	1,201.9	4,791.7	633
2020	286.8	1,107.4	4,562.6	720
2021	246.6	1,002.9	4,983.1	531
2022	230.5	1,022.7	5,707.3	391
Total	302.0	1,269.1	5,304.6	3,867
제도 미사용 일반기업				
	중간값	평균	표준편차	관측치
2015	251.6	920.5	2,766.4	582
2016	240.2	886.8	2,793.8	476
2017	271.7	952.8	2,669.2	569
2018	285.0	927.4	2,378.2	401
2019	236.9	754.2	1,859.1	527
2020	248.3	732.2	1,910.7	551
2021	227.0	738.9	2,315.6	469
2022	206.7	638.6	1,905.3	477
Total	246.7	820.3	2,360.6	4,052

자료: 국세청 제공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고용영향평가 분석전략 및 결과

- 본 소절에서는 효과성 평가에서의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동 제도가 기업의 고용 성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
 - 성과변수 y_{it} 를 기업의 투자로 이용하였던 전 소절과 달리, 본 소절에서는 기업의 고용 관련 변수를 성과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음
 - 고용 관련 변수는 고용성장률(전년도 대비 고용성장률)을 이용함
- <표 VI-4>는 효과성 평가에서 사용한 기업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한 분석의 결과,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이 기업의 고용성장률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음을 보임

<표 VI-4>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영향(2015~2022년)

	(1)	(2)	(3)	(4)
$I_{it}^{high} \times I_{it}^{post}$	-0.010 (0.006)	-0.012 (0.006)	-0.010 (0.006)	-0.011 (0.006)
I_{it}^{high}	0.008** (0.003)	0.010*** (0.003)	0.008** (0.003)	0.010*** (0.003)
I_{it}^{post}	-0.019*** (0.003)	-0.018*** (0.003)	-0.017*** (0.003)	-0.016*** (0.003)
업력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1*** (0.000)
$\log(asset_{t-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2*** (0.000)
표본수	23,137	23,137	24,441	24,441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표 VI-5>는 효과성 평가에서 사용한 기업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고용 성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이 기업의 고용 성장률에 미친 값은 약 -1.3%p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90% 신뢰수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지 않았음

<표 VI-5>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영향(2015~2022년)

	(1)	(2)	(3)	(4)
$I_{it}^{new} \times I_{it}^{post}$	-0.013* (0.006)	-0.013* (0.006)	-0.013* (0.006)	-0.013* (0.006)
I_{it}^{new}	0.011** (0.003)	0.011** (0.003)	0.011*** (0.003)	0.011*** (0.003)
I_{it}^{post}	-0.014** (0.005)	-0.014** (0.005)	-0.013** (0.005)	-0.013** (0.005)
업력	-0.002*** (0.000)	-0.001*** (0.000)	-0.002*** (0.000)	-0.001*** (0.000)
$\log(asset_{t-1})$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0.001 (0.001)
표본수	17,936	17,936	18,810	18,810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표 VI-6>은 효과성 평가에서 사용한 기업투자에 대한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고용 성장에 미친 영향을 평가함
 - <표 VI-6>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성장률에 대한 계수가 대체적으로 양(+)의 값을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임
 - 기업의 투자수준에 대한 분석과 같이, 이 경우 동 제도의 효과에 기업이 노출된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점을 해석에 감안하여야 함

<표 VI-6>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고용영향(2015~2022년)

	(1)	(2)	(3)	(4)
$I_{it}^{strat} \times I_{it}^{post}$	0.019 (0.018)	0.019 (0.018)	0.023 (0.018)	0.023 (0.018)
I_{it}^{strat}	-0.023*** (0.007)	-0.023*** (0.007)	-0.023*** (0.006)	-0.024*** (0.006)
I_{it}^{post}	-0.018 (0.011)	-0.018 (0.011)	-0.022* (0.011)	-0.022* (0.011)
업력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0.002*** (0.000)
$\log(asset_{t-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표본수	3537	3537	3710	3710
지역 고정효과	○	○		
기업규모 고정효과	○		○	

주: ***p<0.01, **p<0.05, *p<0.10
 자료: 저자 작성

- 본 소절에서의 고용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한계 및 연구방법론상의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그 결과를 해석해야 함
 - 먼저, 본 소절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효과성 평가 중 국세청 미시납세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언급된 데이터의 한계를 모두 공유함
 - 데이터 중 동 제도 도입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이 너무 짧음
 - 동 기간 동안 기업들이 동 제도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제도를 적용할 수 있었음
 - 동 기간 동안 기업이 어떤 자산분류에 해당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수혜하였는지 여부를 데이터를 통해 볼 수 없음

3. 설문조사를 활용한 고용영향평가

- 본 소절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의 문항 중 고용에 관련한 문항을 이용하여 동 제도의 고용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

- 적용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한 지출액을 추가적 고용 인원에 대한 지출액에 사용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VI-7>과 같이 31.1%가 추가적 고용지출 금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50.0%)의 비율이 중견기업(22.6%)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업종별로는 제조업(33.3%)의 비율이 비제조업(25.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VI-7>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절세액을 이용한 추가적 고용지출 여부

(단위: 개)

구분		표본수	추가적 고용지출	추가적 지출 없음
기업규모	중소기업	8	50.0%	50.0%
	중견기업	31	22.6%	77.4%
	대기업	6	50.0%	50.0%
업종분류	제조업	33	33.3%	66.7%
	비제조업	12	25.0%	75.0%
합계		45	31.1%	68.9%

- <표 VI-7>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절세액을 추가적 고용지출에 사용했다고 응답한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고용지출 금액이 절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질문한 결과 <표 VI-8>과 같이 고용지출비율의 평균은 17.6%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로 구분하면 <표 VI-7>의 고용지출 여부와 유사하게 대기업 및 중소기업(25.0%)의 고용지출비율이 중견기업(1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고용지출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VI-8>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절세액의 추가적 고용지출 비율

(단위: 개)

구분		표본수	고용지출비율(평균)
기업규모	중소기업	4	25.0%
	중견기업	7	10.2%
	대기업	3	25.0%
업종분류	제조업	11	17.8%
	비제조업	3	16.7%
합계		14	17.6%

4. 소결

- 국세청 미시납세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을 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해석이 가능함
 - 동 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발현되기에는 현재 데이터를 통해 이용 가능한 2년의 제도 도입 후 기간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음
 -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상당수는 설문조사를 통해 동 제도를 통해 절감한 액수 중 유의미한 부분을 고용을 위해 지출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 또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단기적인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동시에 고용을 늘릴 여력이 부족할 수 있음
 - 동 제도는 기업의 투자를 늘려 기업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K)을 늘리는데, 이러한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반드시 양(+)의 값을 갖지 않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투자를 통해 자본(K)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난 자본을 사용하는 노동(L)의 한계생산도 늘어나며, 이 경우 기업은 고용을 늘려 더 효율적인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
 - 반면, 투자가 노동대체적인 자본을 늘리는 경우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균형도 가능함

Ⅵ.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Ⅶ.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본 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 본 특례제도 도입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일몰연장을 제안함
 - 해외 주요국은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특정 첨단기술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조세지원제도를 최근 도입하고 운영해오고 있어, 현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은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 수준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조세지원 수준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됨
 - 단, 전체 사업용 자산에 대한 폭넓은 세액공제제도에 있어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수준은 그 대상 및 공제율에 있어 적극적인 편으로 나타나 해당 분야에서의 조세지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타당성 분석 결과,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원대상 및 방식의 적정성도 대체로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시자료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 결과, 본 제도에 의해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관측되었으며, 기업의 수익성 등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지만 일부 긍정적 효과가 추정됨
 - 단,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게 추정되지 않음
 - 설문조사를 활용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도 본 제도가 기업의 투자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2. 정책제언

- 동 제도는 자산분류(일반자산,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및 공제종류(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따라 공제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관련 서식에서는 2023년 사업연도분부터 구분이 가능하여 자료가 누적된 후 효과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본고에서의 세분화된 분석은 직접적인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간접자료를 통해서 수행하였으며, 본 제도의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성 분석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자료가 보완된 후 효과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기술분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제도의 세부 분류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는 점을 참조할 필요

○ 동 제도는 기업의 투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종전과 비교하여 투자를 늘렸을 경우 추가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의 미시납세자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분리하여 이용내역을 수집하고 있지 않음

- 추가공제의 제공이 기업에게 투자를 늘릴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통해 진행이 어려움

□ 앞서 언급된 자료의 한계와 더불어, 현재 제도의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한 자료만이 이용 가능하였고, 투자세액공제의 효과가 적용 후 지연기간을 가지고 나타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데이터의 추가적인 구축 이후 제도의 효과를 재평가할 필요

○ 본 연구는 미시자료와 설문조사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추정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제도 도입 이후 약 2~3년의 한정적인 자료만을 이용하여 효과를 추정하였음을 정책적 판단 시 감안할 필요

- 투자결정 및 투자가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경로는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결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가 기업의 행태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존재함

○ 특히 제도 도입 이후 2년간의 투자분에 대해 기업들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군(群)과 동 제도 사이에서 선택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가 혼재되어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해외 경쟁국가들에서 제공하는 조세지원 수준과 유사하게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유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이

- 러한 지원의 축소 필요성이 대두될 것을 준비할 필요
- 동 제도의 정책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및 지나치게 비대화되지 않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 현재의 높은 공제율을 고려할 때 특정 자산/기술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도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고기간과 제외방식을 미리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상 기술에 대한 엄밀한 선정과 수혜기업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일부 자산/기술에 대해서는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출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대상자산의 폭 및 공제율의 크기 면에서 강한 혜택을 제공하는 편임을 고려할 때, 조세지출액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할 필요
- 주요국 중 모든 사업용 유·무형자산에 준하는 대상자산에 대한 폭넓은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폭넓은 지원이 효율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
 - 짧은 기간의 자료를 통한 본고의 분석에서 기업의 경영성과 증진에 대해서는 약한 증거만을 도출함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연도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각 연도
_____,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국제금융센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주요 내용 및 평가」, 2022. 8. 11.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_____, 「세법개정안」, 각 연도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3. 11.
김동준·김동영·홍인기·임상수, 『2020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VI)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KDI, 2020. 9.
김빛마로·오유나·이형민·조승수, 『특정목적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김빛마로·우석진·이동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II)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9.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12.
김우철·구자은·송은주, 『주요국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김우현·윤성주·홍우형, 『2019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III)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9.
김준동·이성봉·김혁황,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 12.
김학수, 『법인세 최저한세제 운용기조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2.

류덕현·박기백, 『재정지출과 조세지출간의 최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산업기술정책단, 『일본의 DX 투자 촉진 조세 제도(개정) 현황』, 2023.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신재생에너지 -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 찾는 투자 기회』, 2022.
 10. 13.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I)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9.
 전병목·송은주·이서현, 『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연구』, 세법연구 21-07,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2021. 12.
 정훈·김동구,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전략과 국내
 대응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3. 12. 31.
 중소기업본부·한국세무사회,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

<외국 문헌>

일본 경제산업성, 『令和6年度(2024年度)經濟産業關係 稅制改正について』, 2023. 12.
 _____, 『産業競争力強化法における事業適応計画について』, 2023.
 _____,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2020.
 일본 재무성, 『租稅特別措置の適用實態調査の結果に関する報告書』, 2024. 2. 6.
 _____, 『令和6年度稅制改正(案)のポイント』, 2024. 2.
 _____, 『令和6年度稅制改正の大綱の概要』, 2023.
 經濟部産業發展署, 『産業創新條例第十條之二, 第七十二條修正總說明』, 2023.
 中華民國經濟部, 『立法院三讀通過產創條例第10條之2及第72條修正案』, 2023.
 CRS, “Energy Tax Credits and the Global Minimum Tax,” 2023. 7. 21.
 IBFD, “Canada’s Budget 2023: Business Tax Measures Support Green Economy,” 2023. 3. 31.
 PWC, “Samil Global Tax Update,” August 2022.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드스
 발표』, 2023. 12. 15.
 _____, 『올해 투자하는 기업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 4. 11.

<웹사이트>

- 국세청, <http://www.nts.go.kr>
- 국세청 국세통계, <https://stats.nts.go.kr>
-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 대만 경제부 산업진흥원, <https://www.ida.gov.tw/>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s://www.kotra.or.kr/>
- 미국 IRS, <https://www.irs.gov/>
- 코넬 법률정보연구소, <https://www.law.cornell.edu/>
- 미국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
- 미국 법전, <https://uscode.house.gov/>
- 영국 법령시스템, <https://www.legislation.gov.uk/>
- 영국 정부, <https://www.gov.uk/>
- 일본 법령시스템, <https://elaws.e-gov.go.jp/>
-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
-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 캐나다 정부, <https://www.canada.ca/>